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정연구기관, KINU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전략: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4/5년차)

KINU 연구총서 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 황수환 | 강혁민
김규남 | 이준형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연구책임자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수환(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혁민(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김규남(바르샤바국립대학교 연구교수)

이준형(울산대학교 연구교수)

연구지원

용혜민(통일연구원 연구원)



KINU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전략: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4/5년차)

KINU 연구총서 23-03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서보혁, 황수환, 강혁민, 김규남, 이준형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SBN	979-11-6589-143-5
가격	13,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11
----	----

Chapter I

문제 제기와 논의 범위	17
--------------	----

1. 문제의 제기 19
2. 논의 범위와 방법 23

Chapter II

이론적 배경	29
--------	----

1. 인권의 평화 효과 31
2. 인권의 발전 효과 43
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51

Chapter III

사례연구	59
------	----

1. 폴란드 61
2. 콜롬비아 114
3. 베트남 168

ChapterIV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231

- 1. 비교 평가 ————— 233
- 2.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249

ChapterV

결 론 ————— 259

- 1. 요약 ————— 261
- 2. 정책제언 ————— 270

참고문헌 ————— 2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89

〈표 III-1〉 카틴에서 학살된 전쟁 포로 및 체포자	66
〈표 III-2〉 소련의 강제 이주 대상자와 시기, 인원	67
〈표 III-3〉 신헌법에 나타난 자유와 권리 사항 전(前) 부분(1997)	90
〈표 III-4〉 동구권의 민주주의 공고화 지표(1989-2003)	91
〈표 III-5〉 동구권의 민주주의 공고화 지표(2010)	92
〈표 III-6〉 폴란드의 국제평화지수(GPI) 변화	95
〈표 III-7〉 폴란드 인권-평화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97
〈표 III-8〉 동구권 주요 국가들의 순 부채 증가 추이	98
〈표 III-9〉 중부유럽 국가들의 월간 실업률(1991)	99
〈표 III-10〉 폴란드 VNR에 따른 SDGs 중점 목표와 세부 내용(2023) ..	101
〈표 III-11〉 폴란드의 인간발전지수(HDI)	105
〈표 III-12〉 폴란드 인권-발전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107
〈표 III-13〉 폴란드 체제전환 전후 인권-평화-발전의 개방성과 폐쇄성 대비	108
〈표 III-14〉 폴란드 인권-평화-발전에 대한 도전과 과제	110
〈표 III-15〉 안데스 지역 코카인 재배(1995-2005)	122
〈표 III-16〉 주요 지역별 무력분쟁 현황(2005-2006)	125
〈표 III-17〉 정부군과 불법무장단체의 무력충돌 발생건수(2006-2007) ..	126
〈표 III-18〉 콜롬비아 평화협정의 주요내용	130
〈표 III-19〉 콜롬비아 인권-평화-발전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143
〈표 III-20〉 콜롬비아 세계평화지수(2014-2023)	146
〈표 III-21〉 콜롬비아 학살과 희생자 수(2020 이후)	147
〈표 III-22〉 콜롬비아 VNR SDGs 자체평가(2021)	151

〈표 Ⅲ-23〉 콜롬비아 인간발전지수 추세(1990-2020)	153
〈표 Ⅲ-24〉 콜롬비아 젠더불평등지수 추세(1990-2020)	154
〈표 Ⅲ-25〉 베트남 인권의 평화 효과 요약	199
〈표 Ⅲ-26〉 베트남 인권의 발전효과 요약	213
〈표 Ⅳ-1〉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241
〈표 Ⅳ-2〉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요인	247

〈그림 Ⅰ-1〉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개념도	22
〈그림 Ⅱ-1〉 인권의 발전·평화 선순환 구조도	52
〈그림 Ⅲ-1〉 폴란드 보편정례검토(UPR)에 따른 권고 수용 정도	94
〈그림 Ⅲ-2〉 폴란드와 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변화	100
〈그림 Ⅲ-3〉 체제전환 뒤 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04
〈그림 Ⅲ-4〉 폴란드 국내 주별 HDI(2021)	106
〈그림 Ⅲ-5〉 폴란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109
〈그림 Ⅲ-6〉 평화협정문 578개 규정 이행률(2016.12.-2021.10.)	136
〈그림 Ⅲ-7〉 부문별 이행률(2016.12.-2021.10.)	137
〈그림 Ⅲ-8〉 콜롬비아 SDGs 부문별 성취도	150
〈그림 Ⅲ-9〉 콜롬비아 Inequality-adjusted HDI	154
〈그림 Ⅲ-10〉 콜롬비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159
〈그림 Ⅲ-11〉 베트남의 보편정례검토에서 표현과 의견의 자유와 발전 권리의 수용 비율	191
〈그림 Ⅲ-12〉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	193
〈그림 Ⅲ-13〉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2023)	203
〈그림 Ⅲ-14〉 베트남의 인간발전지수와 순위	208
〈그림 Ⅲ-15〉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221

Text box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 5개년 연구주제 22

〈글상자 1-2〉 참고: 기존 연구 사례 25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본 연구는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비교 사례 연구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선정된 사례는 두 유형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베트남, 폴란드)과 장기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 콜롬비아이다.

폴란드는 급진적 체제변화를 거쳤는데,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생하였다. 또 폴란드는 제도에 기반한 지속적인 전환기 정의 노력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점진적인 체제 개혁을 거치고 있다. 베트남은 인권의 평화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발전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례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보다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장기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정착해가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둘 다 낮다. 다만, 평화협정에 인권 요소가 많이 담겨있어 인권의 잠재적 효과는 높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는 시사점은 첫째, 대북정책에 대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다. 대북 통일정책을 인권에 기반해 접근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균형

적이고 유연한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도 중요하다. 지역과 젠더에 기반한 접근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점도 놓칠 수 없다. 또 인권-평화-발전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안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하나는 국내외를 망라한 북한인권 통합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 시사점들을 반영한 북한인권법의 개정 및 시행이다.

주제어: 인권의 평화 효과, 인권의 발전 효과, 국제 규범,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북한, 북한인권법



Human Rights' Effect on Peace and Develop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Suh, Bo-hyuk et al.

This study, a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human rights' effect on peace and development, is intended to gain useful insights in designing a desirabl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ses selected for this study are: two types of countries that shifted from socialism (Vietnam and Poland) and Columbia which has gone through processes toward peace after ending its long-standing dispute.

Poland, a country that went through radical system transition, showed a strong effect of human rights on both peace and development. Factors of human rights' transparency, diversity of peace, and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were concurrent and interactive, rather than functioning individually. Poland also showed a solid outcome in its continued effort to define system-based transitional justice. Vietnam, meanwhile, is going through gradual system reform. In Vietnam, human rights' effect on peace was weak and in contrast, its effect on

development was strong. The case from Vietnam indicates limits in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maining one party system rul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yet human rights' effect in Vietnam is stronger than that of North Korea. Colombia has put its protracted conflict behind and now is in its infant stage toward peace, and thus human rights' effect is feeble on both peace and development. And yet, human rights' potential effect is high considering human rights factors reflected in the peace treaty.

Findings from this study include: first, the need to establish a master plan that would ensure approach to North Korea policies in a phased-in manner and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It would be also meaningful to approach individual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human rights. Wisdom to maximize policy effect through a balanced and flexible policy execution would be also critical. It can't be highlighted enough that local- and gender-based approach is useful in bolstering effect of human rights on peace and development. Also,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a vicious cycle impacting human rights-peace-development should be designed. Regarding this, this study proposes two main specific policies: first, build-up of a comprehensive North Korea's human rights policy network that encompasses both home and abroad, and second,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at reflects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Keywords: Human rights' effect on peace, human rights' effect on development, international norm, Poland, Columbia, Vietnam,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 . 문제 제기와 논의 범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문제 제기와 논의 범위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쟁은 물론 기후, 보건,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원인이 상호 교차하면서 소위 ‘글로벌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복합위기가 전통적인 안보위기로 이동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 전통적 안보위기와 신형 안보위기는 상호 대체의 관계가 아니라 맞물리고 얽힘으로써 지구촌의 위기를 실존적 차원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해 유엔(United Nations: UN, 이하 UN)의 각종 회의에서는 일련의 결의를 통해 복합위기에 따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전통적 안보 문제 외에도 기후·인권·보건 문제도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복합위기의 등장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천년 들어 그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 경제침체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지도력의 약화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복합 요인에 의한 복합위기는 이제 국경, 집단 등 여타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국가이익을 비롯하여 이념, 민족, 종교, 계층 등 기존의 대립적 요소들 앞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구촌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서도 구테레즈(A.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제1회 국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날’ 연설에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사라지게 하려면 보다 평화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 길”이라고 언급하였다.^{1/} 구테레즈 사무총장은 또 6월 19일, ‘제3차 UN 반테러리즘 주간이 시작하는 날 연설’에서,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소외가 테러를 양산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복합적이고 계속 진화하고 다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였다.^{2/} 그런가 하면 2015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새천년발전목표(SDGs) 2030’의 진전이 미흡해지면서 2023년 9월 UN 총회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고 국제협력을 재확인하였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분쟁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 양 측면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보건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식량위기, 공급망위기, 기후위기,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의 여파까지 모두 한반도를 비껴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개방, 무역,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사회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1/ “‘We must be more vigilant than ever,’ Guterres says on first International Day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UN NEWS*, 11 February 2023, <<https://news.un.org/en/story/2023/02/1133402>> (Accessed November 14, 2023).

2/ “Note to correspondents – press release on historic agreement adopted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n over two-thirds of the ocean,” *UN NEWS*, June 19, 2023, <<https://www.un.org/sg/en/content/sg/note-correspondents/2023-06-19/note-correspondents-press-release-historic-agreement-adopted-for-conservation-and-sustainable-use-of-biodiversity-over-two-thirds-of-the-ocean>> (Accessed November 14, 2023).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적고 고립주의적 발전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도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글로벌 복합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안보와 주민 생존 차원에서 선택적인 대외관계를 취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분단된 남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교차하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데 커다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은 남한과 북한 각각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나름의 대응을 취해나가야 함은 물론, 한반도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키아리(K. Khiari) UN 사무차장은 안보리에서 “북한이 대화에 즉각 복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UN과 관련국들이 외교를 통한 긴장완화와 인도주의적 관심사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3/}

한반도 미래 설계를 논의하는데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것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기존의 통일 담론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위에 한반도 미래를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구현의 방향에서 설계하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양대 축으로 삼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의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의 논의에서 보편가치는 조화롭게 추구하기보다는 취사선택 되어왔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역시 균형 있게 전개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국내적으로 논쟁, 심지어 정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연구가 한반도 미래상을 ‘적극적 평화체제’로 그리고, 그 주요 관심사 및 추진 방향을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으로 삼은 이 유가 여기에 있다.

3/ “Korean Peninsula ‘must be an area for cooperation’, Security Council hears,” *UN NEWS*, February 20, 2023, <<https://news.un.org/en/story/2023/02/1133712>> (Accessed November 14, 2023).

이 연구의 제목은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전략: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형 적극적 평화체제를 수립할 복합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① 평화-인권-발전이 선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②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단계, 조건, 차원, 행위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목적과 기본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개념도



글상자 1-1 5개년 연구주제

- 1년차: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
- 2년차: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3년차: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 4년차: 인권의 발전·평화 효과와 한반도(2023년)
- 5년차: 한반도형 적극적 평화체제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나 규범적 논의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각과 논의 범주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 인권, 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셋 사이의 선/악순환 사례들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사례연구의 경우에도 평화-인권-발전의 관계를 단선적으로만 논의하는 것에는 충분한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 가치영역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년 연구로서 이론 및 사례 연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2023년 연구는 4년차 연구로서 ‘인권의 발전·평화 효과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미래 설계에 갖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년차 연구는 인권(독립변인)이 평화와 발전(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인권의 평화 효과, ② 인권의 발전 효과, ③ 인권의 평화 및 발전 효과이다. 이러한 세 방향으로 세 사례를 연구하되 인권과 평화·발전 사이의 선순환만이 아니라 악순환 관계도 다루어, 현실 사례들로부터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다양하게 찾고자 한다.

2. 논의 범위와 방법

본 논의의 분석틀은 연구주제를 구성하는 개념과 그들 사이의 관계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말하더라도 인권의 범위와 평화의 범위, 그리고 인권의 평화 효과를 규명하는 방법 등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인권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둘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인권의 평화 효과 혹은 발전 효과를 실재는 물론 이론에서도 단순하거나 규범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인권과 평화·발전이 선순환하기보다는 악순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상과 같은 쟁점들은 이론적 검토 작업(제II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론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틀을 수립하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남겨두고, 연구목적에 반영한 개념화를 통해 사례연구를 전개하여 비교 평가 후, 결론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및 주제에 관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인과관계에서 다방면의 논의와 정책효과에서 긍·부정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 연구사례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논의도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다룰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공통된 분석 기준과 사례별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제IV장에서는 앞의 이론 틀을 적용해 세 사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V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3개국이다. 사례 선정은 연구 목적, 한반도와 관련성이 있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것, 세 가치 간 풍부한 순환관계를 보장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선정된 세 사례 중 둘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베트남, 폴란드)이고, 콜롬비아는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의 도상에 있다. 세 사례는 한반도의 오늘(분단·정전체제)을 지양하고 바람직한 내일(통일·평화체제)을 설계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로서 체제 내 개혁(reform within the system), 혹은 점진적 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베트남과도 거리가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가 온존해 있지만,

체제 내 개혁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그에 비해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reform of the system), 즉 급진 개혁을 달성한 국가이다. 두 사회주의 국가의 변신은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에 평화적으로 관여하고, 그 과정을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으로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콜롬비아는 70년여의 고질적 장기 분쟁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중에 있어 북한 평화체제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사례이다. 참고로 아래 상자는 기존 2-3년 차 연구주제와 사례들이다.

글상자 1-2 참고: 기존 연구 사례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2년차):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르완다, 콜롬비아
-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3년차):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쿠바

이상의 연구 목적과 범위를 다루는 방법은 주로 비교 사례연구이고, 보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각 사례별 비교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해 분석하고 그것을 시사점 도출과 연결하고자 한다. 주목할 바는 ① 인권의 발전, 평화 효과를 나타내는 조건, ② 인권과 발전·평화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조건, ③ 인권의 발전 효과와 평화 효과에 상대적인 차이가 큰 조건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인권→ 평화·발전 효과라는 인과논리로 진행할 것이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것이다.

- ▶ 독립변인(인권): UN 국가별 보편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와 인권이사회의 권고문, 역내 인권기구의 해당국 보고서, 관련 NGO 보고서 등

- ▶ 종속변인(평화): 호주 경제평화연구소의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GP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감 등
- ▶ 종속변인(발전): SDGs 국가별자발적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UNDP의 인간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

이상의 자료들은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관해 사례 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일종의 공통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공통 지표들만 활용해 비교 논의할 경우, 사례별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함의를 풍부하게 얻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례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가령, 베트남의 사례연구를 위하여 베트남의 정치, 경제, 역사, 대외관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1차 및 2차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 및 세부 정책, 역사적 배경, 경제 패러다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변수에 대한 맥락적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각 사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통된 지표 분석이 담고 있는 일반화된 가정에 특수한 맥락과 개별 성격을 부여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별 변수 분석과 함께 현지조사(폴란드)와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실시해 연구를 보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인권의 복합적 효과를 검증하고, 거기에 사례별 특수성을 포함해 한반도 사례와의 비교 준거 및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 이론적 기대 효과는 사례별 차이점과 공통점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 도출과 그를 통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가져올 전형적인 변인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올 정책 요인을 식별해 한반도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균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역기능의 순기능으로의 전환, 순기능의 지속·발전 조건을 포함한다. 특히, 목하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 인권정책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과 타 보편가치들의 상호관계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에서 인권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집필은 제 I 장은 서보혁, 제 II 장은 황수환, 제 III 장은 김규남, 강혁민, 이준형, 제 IV 장은 서보혁, 김규남, 강혁민, 이준형, 그리고 제 V 장은 모든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평화 효과

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변화

인권과 평화의 개념은 인류사회의 진화과정과 함께 발전하면서 그 내용과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를 달성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 모든 형태의 억압, 차별, 착취 및 기타 민족과 개인의 인권에 대한 대량적이고 명백한 침해에 대한 투쟁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4/}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 혹은 자유권으로 발전했다. 집단적 권리와 이행에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사회권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넘어 3세대 인권은 연대의 권리로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확장과 발전은 어느 특정 국가에서 한정시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인 담론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진화하고 있다. 특히 평화권은 일국차원의 문제가 아닌 초국경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여 세계평화와 인권

^{4/} Philip Alston, "Peace as a Human Right,"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p. 329.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확장했다. 초국경 연대의 권리에는 발전과 저발전 국가 간 격차 문제, 군비경쟁과 핵위협 문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연대적 대응 차원으로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국제인권제도의 토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인권침해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 세계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합의서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은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했다. 특히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며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침해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지만, 어떠한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인지 등 인권에 대한 개념적 접근방식에는 행위자들 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1세대 인권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주로 정부가 개인 혹은 집단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권리로 정부의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권리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1976년 3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약 서명국들이 여전히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2022년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세계자유지수’에서 북한,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등 17개 국가가 자유가 없는 가장 억압적인 사회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5/} 이들 국가 대부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2세대 인권은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등이 포함된 사회경제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기에 적극적 권리로 불린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1976년 1월 발효되었으나,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흐름과 공산주의와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3세대 인권은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연대와 관련된 권리로, 인권과 연대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81년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에서 발전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및 발전과 같은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규약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3세대 인권의 등장으로 인권과 평화를 연계하여 학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논의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평화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70-80년대 UN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다가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6/} 인권

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2, <file:///C:/Users/KINU/Desktop/FIW_2022_PDF_Booklet_Digital_Final_Web.pdf> (검색일: 2023.5.25.).

6/ 서보현,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012), p. 66.

과 평화를 통합하여 명시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한 노력은 UN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78년 33차 UN 총회에서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eparation of Societies for Life in Peace)’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국가와 민족 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함 모든 인류가 인종, 양심, 언어, 성별 등에 관계없이 평화적 생존을 위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평화를 인권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진행했다. 또한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등 냉전 시기 인류사회가 극한적인 대립을 줄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다.

1981년 11월 제36차 UN 총회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ace)’로 지정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24시간 단 하루만이라도 전세계에서 휴전과 비폭력을 실천하여 평화의 이념과 사상을 강화하는 날로 삼고 있다.^{7/} 이러한 노력의 흐름은 1984년 11월 UN 총회에서 ‘인류의 평화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을 채택하면서 최초로 평화권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8/} 이 선언 제1조에서는 평화권을 성스러운 권리로 규정하면서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이 모든 인권의 기초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선언은 1985년 10월 24일 UN이 창립된 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회의에서 19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선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 제거’, ‘국제관계에서의 무력 사용의 포기’,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이 인권을 위한 가장 기본

7/ UN은 2001년 9월 제56차 UN 총회에서 매년 9월 2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정하여 연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 홍석훈 외,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36.

적인 요구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평화와 인권이 UN의 성립에 대한 핵심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인류사회가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고 문명의 보존과 생존을 위한 것이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일차적 조건이라는 점을 명시했다.^{9/} 1988년과 1990년 UN 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권리’의 결의안 전문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문구를 그대로 원용한다. 당시에는 평화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니라 인권이 평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며, 평화권에 대한 개념은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를 표현했다.^{10/}

1990년대에는 인류의 평화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과 평화문화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9년 UN 총회를 통해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 및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평화문화의 확산과 인식개선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 등 강대국들은 평화권 개념이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인정된다면 전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평화가 인권의 범주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11/} 이러한 갈등은 2016년 UN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이 채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006년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가 발족하면서 인권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더욱 진화하며 성장하게 된다. UN 인권이사회는 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9/ UN OHCH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11(November 12, 1984),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declaration-right-peoples-peace>> (검색일: 2023.3.5.).

10/ 오시진,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인도협력연구실 편,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68.

11/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1호 (2011), p. 184.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설위원회로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UN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가 임시 기관에 불과한 점을 개편하여, UN 총회 산하기관으로 정례 모임과 긴급모임을 개최하는 상설이사회의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2006년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UN 인권이사회 발족으로 “인권 분야에서의 UN의 활동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기도 했다.^{12/} UN 인권이사회는 2009년 3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 채택, 2011년 12월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에 대한 비난 결의안 채택, 2014년 7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8년 UN 인권이사회는 ‘인민의 평화권 촉진’을 결의했다. 이 결의는 모든 인간은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그 권리를 보호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빈부격차 문제, 남북문제 등 불평등으로 인한 격차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했다.^{13/} 이 결의에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이 반대했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32개국이 찬성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문제는 UN

1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Secretary-General’s message on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livered by Mr. Mark Malloch Brown, Deputy Secretary-General),” December 13, 2006,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06-12-13/secretary-generals-message-adoption-convention-rights-persons>> (Accessed August 22, 2023).

13/ 정진성,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인권연구』, 제1권 1호 (2018), p. 14.

인권이사회가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의제라는 명분으로 반대했다.^{14/} 중요한 점은 UN 인권이사회에서 2009년, 2010년, 2012년 등 유사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평화권 촉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2012년 평화권 선언의 초안이 제출된 이후, 실무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UN 총회에서 찬성 131개국, 반대 34개국, 기권 19개국으로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이 채택됐다.^{15/} ‘평화권 선언’에서는 평화의 주체를 개인과 집단에서 개인으로 일정 정도 축소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향유할 권리(right to enjoy peace)’로 인권과 평화의 통합을 명시했다. 단순히 평화롭게 삶을 사는 권리, 인간(peoples) 등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하면서도 순수한 의미를 지닌 ‘평화권(right to pe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평화가 단순히 조건으로서의 인권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으로서 평화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개념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평화의 관계는 인권증진이 평화 형성과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인권침해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파악하는 반면, 갈등 및 분쟁의 양태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인권침해가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적 저발전, 정권의 형태, 인종, 자원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전

14/ 정진성,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p. 15;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개념과 역사, 분석과 적용』 (서울: 사회평론, 2014), p. 45.

15/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1/189, December 19, 201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55187>> (Accessed May 25, 2023).

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파악한다. 갈등해결 과정에서 인권 연구자는 인권보호를 전쟁범죄 기소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는 반면, 갈등 및 분쟁연구에서는 평화구축과정에서 협상대상자를 인권침해 가해자로 기소하는 것이 평화협상을 어렵게 하여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가 주로 발전도상국을 상대로 제기되는 의제의 편협성 문제,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외국의 개입 및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 침해문제 등을 제기함으로 인해 인권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연계를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평화를 어떻게 인권의 개념으로 통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적이다. 하지만, 인권을 평화적 생존의 권리로 규정하며 평화를 인권문제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연계 및 통합 시도는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두 용어가 과도기 정의(혹은 이행기 정의), 평화구축 연구 등에서 모순적인 목표를 나타내면서 연구자들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화는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평화는 인권의 영향 속에서 안정되고 지속될 수 있다. 평화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제3세대 인권의 개념 즉 연대권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16/} 인권을 중심으로 평화의 문제에 접근할 때 연대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이 본질적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실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6년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조건 없는 존중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17/} 결국

16/ Philip Alston, "Peace as a Human Right," p. 320.

인권이 평화라는 개념을 매개로 평화권으로 확장되었고, 평화는 인권을 매개로 인간안보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인권은 크게 자유와 평등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평화는 자유와 평등을 지탱하고 발현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권으로서의 자결권과 평화의 관계는 1960년 12월 14일 UN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식민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에서 명확히 나타난다.^{19/} 이 선언에서 “민족이 외세의 예속, 지배, 착취에 종속되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부정이며, UN 헌장에 위배되고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선언했다.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인 대량 학살과 인종차별 정책은 모두 국제 범죄이자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인권침해를 국제 무력분쟁의 원인으로 간주했다.^{20/}

과거 평화는 인권을 지향하는 가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10년대 이후 인권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인권을 중심으로 평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넘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변화하여 발전했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인

17/ *Ibid.*, p. 324.

18/ 서보혁,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pp. 67~68; Bo-hyuk Suh, “Resolving the Korean Conflict through a Combin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1 (2016), pp. 68~69.

19/ UN OHCHR,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declaration-granting-independence-colonial-countries-and-peoples>> (Accessed August 23, 2023).

20/ Stephen P. Marks, “The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Dialectic,”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p. 342.

권은 테러와 전쟁의 예방 관점에서 선순환적 인식을 정립하고, 인권이 평화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이다. 2016년 ‘평화권 선언’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반테러조치와 인권의 보호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명시한 점이 대표적이다. ‘평화권 선언’에서 평화의 실현 과정과 목표가 어렵지만, 개인과 집단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평화권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인권의 증진과 실현 속에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인권과 평화가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쟁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역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권과 평화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다.^{21/}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즉 인권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관계가 상이하게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다. 인권단체가 세속적인지 종교적인지의 여부, 단체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단체가 여성인권에 중점을 두거나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 인권단체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인권과 평화 간의 연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UN 인권이사회에 속한 비정부기구(NGO)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인권과 평화를 명시적으로 연계시키지

^{21/} Charity Butcher and Maia Carter Hallward,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Rights and Peace: An Analysis of NGOs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8, no. 1 (2017), p. 82.

않지만, 종교와 관련된 NGO는 세속적인 NGO보다 인권과 평화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고, 비서구권 NGO에서는 평화를 강조한다고 분석했다.^{22/}

평화권이라는 개념은 평화와 인권의 개념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통합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평화가 인권의 전제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으로 발전하고 있고, 전쟁과 분쟁 종식의 차원에서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나아가고 있다.^{23/} 이렇듯 인권과 평화의 관계를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작업은 1978년 12월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와 스트라스부르크 국제인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평화와 인권회의(Conference on Peace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and Peace)’에서 시작되었다. ‘평화와 인권회의’에서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평화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국가와 인간은 인종, 신념, 언어 및 성별에 따른 구별 없이 평화롭게 살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양도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이익에 속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했다. 기본적 인권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에 대한 위협은 다른 쪽에도 위협이 된다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명시했다.^{24/} ‘평화와 인권회의’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형성하고 조화시킬 방안을 6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인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비경쟁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완전

22/ *Ibid.*, pp. 81~82.

23/ 정진성,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pp. 2~3.

24/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Strasbourg, “Conference on Peace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and Peace,” *Bulletine of Peace Proposals*, vol. 10, no. 2 (1979), pp. 224~225.

한 군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모든 측면에서 인권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인권증진과 군축 간에는 긴밀한 연결 고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둘째, 모든 무기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발전 연구, 신무기 배치 등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는 평화와 인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용, 생산 및 발전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조약 등으로 문서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제 및 국내 분쟁의 주요 피해자인 어린이들은 유네스코가 ‘세계 아동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로 선포한 1979년 한 해 동안에는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세계 차원에서 군비경쟁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완전한 군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섯째, UN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협력하여 평시에도 전쟁과 분쟁으로 발생된 실종자를 찾는 국제적 협력에 관한 협약 준비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여섯째, 세계 사회에서 존재하는 빈부격차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기에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사회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비의 일정 비율을 발전과 연대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25/} 이와 같이 ‘평화와 인권의회의’의 제안들은 군축, 평화권, 인권, 사회경제권 등 간 연결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갈등의 재발 방지와 무력갈등 이후 화해 및 재건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980-90년대 스리랑카의 분쟁에 의한 대규모 학살과 2000년대 분쟁 이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갈등 사례를 보면 인권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며 인권 없는 평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26/} 스

^{25/} *Ibid.*, p. 225.

^{26/} Rajan Hoole, “Sri Lanka: Ethnic Strife, Fratricide, and the Peace vs. Human Rights Dilemma,”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1, no. 1

리랑카의 사례는 인권 증진에 실패한 평화 과정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찾는 인권 즉 자유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유권은 평화의 영역 속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평화의 실현과 함께 달성될 수 있다. 즉 인권의 신장과 실현 없이는 평화의 달성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권과 평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하다.

2. 인권의 발전 효과

가. 인권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변화

인권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발전’의 개념을 광의적인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경제성장, 경제발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교육, 복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의 개념 확장과 더불어 발전의 개념 역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성장과 개선의 개념으로 확장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UN 발전계획(UNDP)의 2000년 인간발전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통해 발전과 인권정책의 조화를 시도했다.²⁷⁾ 최근에는 발전에 대한 권리 즉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독립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하며 이를 기

(2009), pp. 120~138.

27) Brigitte I. Hamm, “A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23, no. 4. (2001), p. 1005.

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28/} 따라서 발전은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 등의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으로써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달성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발전권,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권 등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누려야 하는 새로운 범주의 권리가 제3세대 인권으로서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이 공존을 넘어 협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여 발전권은 모든 사람들이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29/}

국제사회는 인권과 발전의 개념에 대한 연계 및 통합적 이해를 통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81년 UN 총회에서 발전권을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 선언한 뒤, 1986년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발표하며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1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30/} ‘발전권 선언’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이뤄지기 전에, 인권의 개념 체계 안에서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다뤄 인권과 발전의 관계를 의미 있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31/} 당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8/ 백범석,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 인도협력연구실 편,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215.

29/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2017).

30/ UN OHCH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128, December 4, 1986,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declaration-right-development>> (Accessed May 25, 2023).

31/ 이주영, “자선을 넘어 지구적 정의의 추구—국제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배경과 의의,” 『국제발전협력연구』, 제5권 2호 (2013), p. 100.

남반구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인 주권 행사, 발전도상국에 불리한 교역조건과 국제통화제도의 개선,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 다국적 기업 규제 개도국에 대한 원조 증대, 개도국의 국제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요구했다. 물론 UN 총회에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1962)’^{32/}, ‘신국제경제질서 설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1974)’^{33/}, ‘국가간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1974~1975)’^{34/}, ‘발전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1975)’^{35/} 등이 채택되었지만, 선진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강제력이 없는 단순 결의와 계획에 머물게 된다.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UN의 인권논의 과정 속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케바 음바예(Keba M'Baye)는 1972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국제인권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의 공개 강연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서 ‘발전권’을 처음 제안했다.^{36/} 후안 안토니오 카릴로 살세도(Juan Antonia Carrillo Salcedo)는 1972년 “발전이라는 이념이 국제적인 차원이든 국내 차원이든 불평등을 정당

32/ UN General Assembl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03 (XVII), December 14, 1962,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general-assembly-resolution-1803-xvii-14-december-1962-permanent>> (검색일: 2023.5.30).

33/ UN General Assembly, A/RES/3201(S-VI) (6th special session: 1974),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18450>> (검색일: 2023.5.30).

34/ UN General Assembly, A/RES/29/3281,29 (29th session: 1974-1975),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90150>> (Accessed May 30, 2023).

35/ UN General Assembly, A/RES/3362(S-VII) (7th special session: 1975),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18608>> (Accessed May 30, 2023).

36/ Bonny Ibhawoh,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olitics and Polemics of Power and Resistance,” *Human Rights Quarterly*, vol. 33, no. 1 (2011), p. 83.

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발전권이 인권이며 모든 인민(people)의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이 인류의 공동기획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낸다”며 발전권 개념을 지지했다.^{37/} 이후 UN 인권위원회는 1977년 발전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인권 결의를 채택했고, 그 후 1986년 ‘발전권 선언’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이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권을 정의했다. ‘발전권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모든 인류사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의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38/}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 발전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인 인권의 통합된 부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발전권이 국제·지역·국가적 차원 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틀과 접근방식을 제공하기에 이론과 실행 모두에서 통합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코펜하겐 사회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의 행동 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인간의 복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행사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권과 발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권과 발전에 대한 개념화를 초월하여 인권의 총합적인 개념에 기반하여 상호 연계되고 불가분리인 인권과 발전의 통합적 접근에

37/ 이주영, “자신을 넘어 지구적 정의의 추구-국제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배경과 의의,” p. 101.

38/ UN OHCH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128,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December 4, 1986,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declaration-right-development>> (Accessed May 25, 2023).

대한 시도는 2000년 UN의 새천년발전계획(MDGs)과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인권과 발전의 통합을 명시하지 않지만, SDGs와 인권의 직간접적 연계를 통한 의제와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선언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환경, 평화, 인간의 안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021년 10월 8일 UN 인권이사회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건강한 환경을 기본 인권으로 공식 인정했다.^{39/} 깨끗한 환경을 갖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당할 특별 보고관을 임명할 것도 결의하며 기존 경제와 사회발전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관지어 확장하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나. 인권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인권이 발전을 매개로 발전권이 확장하였고, 발전은 인권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고 한다. 탈냉전 이후 UN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와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등을 통해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사회발전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을 확산했다.^{40/} 1986년 ‘발전권 선언’에서 인권은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기반으로 파악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39/ UN New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6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news.un.org/en/story/2021/10/1103082> (Accessed May 31, 2013).

40/ Brigitte I. Hamm, “A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p. 1007.

문제이고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모든 인간의 특별한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증진해야 하며, 인권에 대한 대규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인류 대다수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41/} 결국 자유권과 사회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면 발전권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권 개념의 진화와 성장이 발전권에 영향을 미쳐 함께 성장·발전하여 인권과 발전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경제 및 사회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비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류 인권 논의의 일부로 취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인권유린, 인종차별, 식민주의 및 외국점령 등을 발전의 장애물로 제시하며 인권문제의 해결을 통한 발전을 강조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인권과 발전의 연계와 상호의존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발전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권의 범주와 발전의 상관관계에서 양적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자국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사례를 다수 찾을 수 있다. 과거 1960-80년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권위주의 시기와 같이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인권문제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41/ UN OHCH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128," December 4, 1986, *Ibid*.

역으로 자유권의 탄압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정치적 권리와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42/} 인권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인권과 발전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43/} 이러한 관점은 인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통합되어서 파악되어야 하고,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개념화하는 것을 넘어 발전 자체를 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전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존재하며, 다른 영역의 권리가 동시에 실현되지 않으면 어느 한 영역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44/} 한편, 발전,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상호의존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45/} 이 연구는, 인권은 약자의 배제와 주변화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거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발전과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46/}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42/ Jack Donnelly,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 3 (1999), p. 628.

43/ Bonny Ibhawoh,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olitics and Polemics of Power and Resistance," pp. 76~104.

44/ *Ibid.*, pp. 84~85.

45/ Jack Donnelly,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 3 (1999), pp. 608~632.

46/ *Ibid.*, p. 627.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전을 저해하고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를 인류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는 모든 계층과 집단 즉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제48차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기본 인권’ 문제로 공식 인정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을 설치했다.^{47/} 2023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와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결정서를 발표했다.^{48/}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기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결국 인권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인류사회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불평등, 빈곤, 차별 등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집단적 권리와 이행에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2세대 인권 즉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인권과 발전의 개념이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인권의 실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인권의 신장을 통해 발전권이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47/ 서보혁 외, 『평화통일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p. 606.

4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2023.1.4.,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8707&menuid=001004002001>> (검색일: 2023.6.5.).

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가. 인권이 평화·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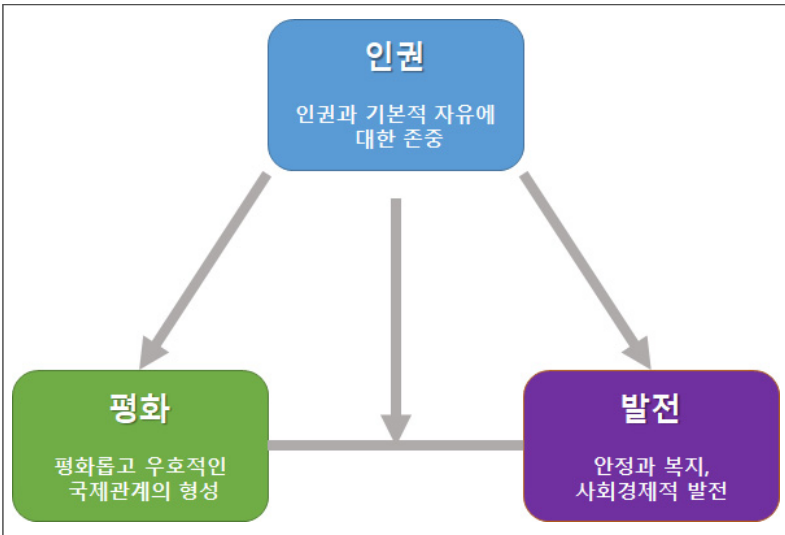
인권에 대한 평화와 발전의 관계를 보면 모든 평화의 문제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모든 발전의 문제가 인권에 의해 다뤄질 수 없지만,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의 가치에서 평화와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49/} 국제 인권제도의 토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뿌리를 두었고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침해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된 부분에서 시작된다. 1945년 UN은 인권, 평화, 발전이라는 기본 토대를 기초로 창립되면서 처음으로 해당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인권, 평화, 발전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각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영향을 끼치고 의존하며 발전했다. 196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세계 최초로 열린 테헤란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평화, 인권, 발전의 상호 관련성이 국제사회에 처음 제기되었다. 1976년 2월 UN 인권위원회 결의(5/X XVII), 1978년 6월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에 이어 같은 해 12월 15일 UN 총회에서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eparation of Societies for Life in Peace)’이 채택되면서, 평화, 인권 발전의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에 의한 인류사회의 생존과 번영이 주장되었다.^{50/}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 안정과 복지, 사회경제적 발전 →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

49/ Philip Alston and Asbjorn Eide,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Their Interrelationship,”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p. 318.

50/ 홍석훈 외,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p. 33.

관계의 형성”이라는 선순환 논리가 제시되면서 인권이 평화와 발전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자 시작점으로 인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은 민주주의, 발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발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진을 지원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영역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넘어 초국경적인 연대의 권리로 확대되는 3세대 인권의 양상과 연계된다.

그림 11-1 인권의 발전·평화 선순환 구조도



출처: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토대로 재구성

결국 인권, 발전, 평화의 문제는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인권의 증진이 평화 형성과 사회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서로 선순환 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권, 평화, 발전이라는 개념이 상호작용하여 선순환

할 때 인류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장에도 순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의 실현을 추진할 때 국가 간 불평등과 불공평이 지속해서는 안 되고, 자원의 분배와 소비의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해서도 안 되며,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착취가 지속해서도 안 된다.^{51/} 인권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발전권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등 다른 연대 권리의 증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 발전, 인권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행 과정에서 서로 불균형적 접근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화, 발전, 인권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문화를 달성한 것은 발전의 가치로 파악된다. 이는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모두가 국가조직 내 발전 전문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성립 등으로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생겼지만, 발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되며, 평화는 가장 제도화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52/} 세 개념의 성장과 전문성에서 각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 가치라는 측면에서 서로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평화, 발전, 인권 등이 지닌 각각의 본래 관심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생산적인 교차 수정 과정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005년 사회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 행동 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도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관계가 강조되었다. 2005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발전과 안보를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인권이 무시되고 소외된다면 발전, 평화

51/ Philip Alston, “Peace as a Human Right,” pp. 328~329.

52/ Philip Alston and Asbjorn Eide,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Their Interrelationship,” pp. 315~318.

및 안보 영역에서의 UN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권을 통한 발전, 평화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53/} 2012년 리오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는 인권, 자유, 평화와 함께 법치, 여성의 권능 강화가 상호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54/} 2016년 UN ‘평화권 선언’도 발전, 평화와 안보, 인권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상호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 발전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증진이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과 역으로 인권침해가 평화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다. 인권침해는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고 평화와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증진에 실패한 평화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환상이라는 것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스리랑카 분쟁 사례연구가 대표적이다.^{55/} 평화의 달성은 단순히 전쟁을 억제하는 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당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고 빈곤과 기아 등 저발전으로 고통받는다면 지속적인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56/}

인권과 발전, 인권과 평화, 인권과 발전·평화에 대한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상호관계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

53/ United Nations,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ddendum, Human Rights Council, Explanatory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A/59/2005)*, May 23, 2005, <file:///C:/Users/KINU/Downloads/A_59_2005_Add-1-EN.pdf> (Accessed August 29, 2023).

5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uture We Want – Outcome Docu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futurewewant.html>> (Accessed August 29, 2023).

55/ Rajan Hoole, “Sri Lanka: Ethnic Strife, Fratricide, and the Peace vs. Human Rights Dilemma,”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pp. 120~138.

56/ Stephen P. Marks, “The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Dialectic,” p. 341.

다.^{57/} 인권과 평화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인권과 발전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에 비해 덜 존재하며, 인권과 평화, 발전을 실증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권, 평화, 발전 중 어느 하나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이 변증법적 관점에서 상호 보완·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권, 평화, 발전을 각각 독자적으로 고립한 채로 고려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변증법적인 연계성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다.^{58/} 1980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군축교육 회의(World Congress on Disarmament Education)에서 평화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군축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및 발전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언문 기본원칙은 밝히고 있다.^{59/} 군축교육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인권과 발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다룰 때 평화, 인권, 발전이 서로 성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권, 평화, 발전은 각각 개별적인 개념 속에서 진화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받고 의존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인권과 이행기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0-90년대 세계적으로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을 타파하는 민주화

57/ 홍석훈 외,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p. 33; Paul Howe, "The Triple Nexus: A Potential Approach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vol. 124 (2019), pp. 1~13.

58/ Stephen P. Marks, "The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Dialectic," p. 346.

59/ *Ibid.*, p. 346.

의 정치적 전환 흐름 속에서 인권규범 중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산했다. 이행기 정의는 과거의 독재 및 권위주의의 억압적 정권 하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 및 침해 등 폭력적인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60/} 이행기 정의를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사면 및 복권 등의 사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확립, 정의와 진리 추구 등을 위한 진실위원회 같은 다른 제도화된 모든 조치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행기 정의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단순히 과거의 인권침해 사항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해, 공존, 용서, 치유를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행기 정의에 의한 과거 청산 문제는 인권의 증진과 발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립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평화, 정치 및 사회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행기 정의의 확산과 발전은 국제인권규범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은 인권에 대한 표준 설정, 인권침해 조사와 책임성 추구 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복합적인 과정에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에 적용되었다.^{61/} 인권침해의 조사와 책임성 추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 행위자에 대한 정책적 책임보다는 가해자와 정

60/ Ruti G. Teitel,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6 (2003), pp. 69~94.

61/ 김현준, "전환기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6집 1호 (2017), p. 106.

치지도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진실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1982년 아르헨티나에서 진실위원회가 설립된 뒤 이후 40여 개 국가에서 해당 위원회가 설립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권과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62/}

이행기 정의가 인권증진에 미친 영향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행기 정의가 실천될 때 인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면서 잠재적 가해자들도 그러한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의한 사회화는 궁극적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63/}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행기 정의는 과거 인권침해로 고통받았던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과거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과 평화적으로 공존을 추구할 수 있고, 복수라는 폭력적 해결방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만들 수 있다. 이행기 정의에 의한 사법적 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 진실위원회 등의 운영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64/} 물론 이행기 정의의 연구자들은 사법적 처리와 진실위원회 등에 대해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조치들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65/}

62/ 위의 글, p. 107.

63/ 이병재,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 분석을 위한 틀,”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 (2015), p. 91.

64/ 위의 글, p. 92.

인권탄압이 발생한 시간과 이행기 정의의 조치들이 이행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와 문제해결의 효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인권탄압의 정도, 사법적 조치의 시간 차이 등이 향후 진행되는 처벌적 조치의 강도와는 크게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5/} 하지만 인권탄압과 침해의 경과 시간이 짧을수록 이행기 정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적 조치 직후와 일정 시간이 지난 뒤는, 제도적 개혁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체감될 수 있다. 인권침해의 심각성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때 이행기 정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 또한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인권탄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65/ 위의 글, p. 98.

66/ Oskar N. T. Thoms, James Ron and Roland Paris, "State-Level Effects of Transitional Justice: What Do We Kno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3 (2010), pp. 329~354.

Ⅲ. 사례연구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의 순서로 각국의 인권정책을 살펴보고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찾는다. 각 사례별로 정치경제적 배경, 인권정책의 전개와 특징, 인권의 평화 효과, 인권의 발전 효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등의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 폴란드

가. 정치·경제적 배경

폴란드에서 인권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영역은 세 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의 전쟁범죄와 스탈린 정권의 납치문제, 전후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인권탄압 문제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독일과 소련의 전쟁범죄, 폴란드 공산당의 체제범죄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강제 집단수용소와 관련한 대량학살 문제가 주를 이루고 소련의 경우, 카틴(Katyń) 숲 학살 사건을 포함한 폴란드 지도층 인사의 납치, 살해 문제가 있다. 폴란드 공산당의 경우, 교회와 언론, 노동자, 학생을 망라한 인민의 인권

탄압 문제가 있다. 이는 20세기 폴란드 현대사의 뿌리 깊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해결이 폴란드 사회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전후에 설립한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반(反)나치정책을 펼치면서 히틀러 정권의 전쟁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는 소련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행태로서 다소 정치적 의도를 내재한다. 전쟁 당시에 벌어진 소련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금기시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무엇보다 동독과 서독의 분단으로 독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법적 대응을 보인다. 동독과는 동일한 공산체제로 전후 직후부터 기계적 화해를 이루지만 서독과의 관계는 데탕트에 이르러서야 개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전쟁범죄와 체제범죄에 대한 객관적 조사 노력은 냉전이 종식된 체제전환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교체 시기마다 체제청산에 대한 진정성과 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일방의 압도적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폴란드의 인권개선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는 국가적 안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범죄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의 상호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9월 1일,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한다. 한 달 만에 독일은 폴란드 서부지역을 점령하고, 동부지역에서는 조약체결에 따라 소련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독일군의 점령지는 총독령(Generalgouvernement: GG)이 되었고, 한스 프랑크(H. Frank)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독일 점령지에는 약 2,100만 명의 폴란드 시민이 살고 있었고, 소련의 점령

지에는 약 1,2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67/}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점령 명분은 독일인과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과 같은 폴란드 내 소수민족의 보호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강제수용소 정책을 보더라도 소수민족 보호보다는 경제적 착취와 인권탄압이 주를 이루면서 영토팽창의 야욕이 드러난다.

나치 정부는 독일인과 비독일인을 지배층과 노예층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점령지에서 독일인들에게는 독일 국적을 부여한 반면, 폴란드의 지도층은 살해하거나 추방하였다. 1941년 3월까지 바르테란트(Wartheland) 지역에서만 40만여 명의 폴란드인들이 살해 또는 추방을 당했다. 크라쿠프(Kraków)의 야기엘로인스키(Jagielloński) 대학 대부분의 교수진도 체포되어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수용소로 이송되었다.^{68/} 폴란드의 중등교육기관 이상이 폐쇄되었고, 언론가와 정치가, 학자들에 대한 탄압이 주를 이루었다. 폴란드에 대한 나치의 경제적 조치는 주로 전시에 사용할 도로에 대한 것이었고,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생산 역시 전쟁물자 증식을 위해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폴란드인들의 복지를 위한 차원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결과는 오히려 폴란드 지하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인권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이 벌어진 1939년 이후 폴란드 주요 도시들에 게토가 설치되었고, 대부분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대표적인 수용소로서 폴란드의 오시비엥침(Oświęcim)에 설치된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를 들 수 있다.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하루에 만여 명의 유대

67/ 정병권, 『폴란드사』 (서울: 대한교과서, 1997), p. 261.

68/ 위의 책, pp. 264~265.

인이 각지의 수용소로 보내져 살해되었고, 이는 1943년 4월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무장봉기에 영향을 주었다. 전쟁 이전에 폴란드 전역에는 약 335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 이 가운데 3백만여 명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다.

폴란드 시민들의 저항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의 저항보다 적극적이었다. 1944년 8월 1일 바르샤바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시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소련의 협력을 기대했던 폴란드 국내군의 의도와는 달리 소련은 개입을 지연했고, 봉기가 일어난 지 두 달여 만에 봉기군은 나치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초토화 작전에 따라 수도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에서 전후 소련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였다. 폴란드 국내군은 망명정부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켰지만, 망명정부와는 별도로 소련의 주도로 구성된 사회주의 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폴란드 통치를 위한 소련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는 폴란드 내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문제, 폴란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봉기가 진압된 뒤에 자행된 무차별 도시폭격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열린 전범재판과 폴란드를 포함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나치 청산 노력 등이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드러내거나 처리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동시대에 폴란드에서 벌어진 소련의 전쟁범죄는 상대적으로 전후에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이는 체제적 속성과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야 객관적 규명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소련의 납치 범죄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침공 뒤 약 보름 뒤인 9월 17일 폴란

드 서부에서는 소련군의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체결된 소련과 폴란드의 상호불가침조약이 1946년까지 유효했지만, 소련의 침공으로 이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소련의 침공 명분은 독일의 침공 뒤 폴란드 정부의 망명으로 폴란드 정부 기능이 사라졌고, 폴란드 내 소수민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 침공의 직접적 근거는 독일과 소련의 상호불가침조약이었다.

9월 3일에 이미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영국과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폴란드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결국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양분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1795년부터 123년 동안 주변 세 나라(프로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삼등분 분할지배를 받아왔던 폴란드로서는 다시 한번 주변국의 점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근대에 이루어진 분할지배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가 나치와 소련에 의한 지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영토와 인구의 축소는 물론이고, 국가재산의 손실, 지도층의 대량학살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소련에 의해 포로로 잡힌 폴란드 군인들은 24만 명에 달하였다. 대부분이 석방되었지만, 망명정부와 연계된 지도급 인사들 14,500명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다. 비밀리에 체포된 지도급 인사들(의사, 변호사, 교사, 기업경영인) 7,300여 명이 추가되어 약 2만 2천여 명의 폴란드 인사들이 소련에 의해 억류된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 대다수는 1940년 봄에 집단으로 학살되었다. 살해 장소는 카틴(Katyn)과 하르코프(Kharkov), 트베리(Tver), 비키브냐(Bykivnia), 민스크(Minsk) 등 다섯 지역이었다. 1943년 4월 이곳 가운데 카틴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들이 대량 발굴되면서 이러한 학살사건을 카틴 대학살 또는 카틴 범죄로 통칭하게 되었다.

표 III-1 카틴에서 학살된 전쟁 포로 및 체포자

분류	인원(명)
폴란드 국군 사령관/대령/중령	295
폴란드 국군 소령/대위	2,080
폴란드 국군/소위	6,049
경찰 경감/국경수비대/헌병대	1,030
일반 경찰공무원/교도관/정보장교	5,138
국가공무원/종교지도자	144
의사/변호사/교사/기업경영인	약 7,300
총계	약 2만 2천

출처: Wojciech Materski, *Memorandum on the Head of the USSR NKVD*, (Warszawa: IPN, 1992).

소련의 카틴 범죄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후 친소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 지도층의 선 제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핵심요인이거나 협력인사들로 판단된 인물들의 제거는 사회주의 정부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둘째는 1920년에 발생한 폴란드와 소련 간 전쟁 결과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쪽으로 전진하던 붉은 군대는 폴란드에서 패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스탈린의 보복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69/}

폴란드가 소련에 의해 겪은 인권침해 사례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소련이 점령한 폴란드 지역의 주민들을 소비에트 연방의 외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나타난 스탈린 정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폴란드인들의 강제 이주는 네 차례로 나눌 수 있다. 1940년 2월에 소련 당국은 삼림관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선별하여 모두 14만여 명을 중앙아시아 지역(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삼림

^{69/} Wojciech Materski i Tomasz Szarota, *Straty Osobowe i Ofiary Represji pod Dwoma Okupacjami* (Warszawa: IPN, 2009), pp. 215~221.

개간과 탄광 건설 노동에 동원되었다.^{70/}

1940년 4월 소련 당국은 전쟁 포로들의 가족 가운데 6천 명이 넘는 노인들과 여자, 어린이들 역시 농업 분야의 노동에 투입하기 위해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71/} 세 번째 강제 이주는 독일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폴란드 동부로 피신한 피난민들에 대한 관리(주택, 식량, 일자리)가 어려워진 소련 당국은 그 해결책으로 1940년 6월 약 7만 8천 명의 피난민을 소련 외곽지역으로 보냈다. 이들은 삼림 개간과 탄광 발전에 투입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72/}

소련 당국의 마지막 강제 이주는 1941년 5월에 이루어졌다. 주로 소련 공산주의의 적으로 간주한 인물들을 숙청하는 형태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특히 폴란드 지역뿐만 아니라 발트해 연안 지역들과 흑해 연안 지역에서도 강제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반혁명주의자로 낙인찍힌 경찰과 군인, 교도관, 지주들이 대상이었다. 약 4만 명이 외곽지역으로 강제 이송되었는데, 같은 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추가 이송은 중단되었다.^{73/}

표 III-2 소련의 강제 이주 대상자와 시기, 인원

대상자	시기	인원(명)
삼림관리자와 가족	1940년 2월	140,000
전쟁포로와 가족	1940년 4월	61,000
독일점령지로부터 피난민	1940년 6월	78,000
반혁명주의자(공무원, 지주)	1941년 5월	40,000
총계		319,000

70/ Albin Głowacki, *Sowieci wobec Polaków na Ziemiach Wschodnich II Rzeczypospolitej: 1939-1941* (Łódź: WUŁ, 1998), pp. 320~333.

71/ *Ibid.*, pp. 350~355.

72/ *Ibid.*, pp. 369~379.

73/ *Ibid.*, pp. 393~399.

소련 당국은 1945년 2월 알타회담을 통해 폴란드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폴란드 동부 영토를 획득하게 되었고, 모스크바에서 양성한 사회주의자들을 내각 구성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폴란드 2공화국^{74/}을 계승하고자 하는 망명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납치하여 구금,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국내군 사령관인 레오폴드 오쿨리츠키(L. Okulicki)를 비롯하여 국가통일위원회 위원 정치인 총 16명을 모스크바로 이송한 뒤, 루비얀카 감옥(Lubyanka prison)에 수감했다. 구금된 인사들은 소련에 대한 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최고 10년 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귀환 뒤 공산당국의 보안부에 의해 감시를 당했고, 일부는 감옥에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소련 당국은 이외에도 1945년 7월 스탈린이 포츠담 회담장으로 이동할 때, 폴란드 영토를 지난다는 명목으로 주요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경계지역의 아우구스투프(Augustów) 지역에서 6백여 명의 사람들을 체포, 구금한 사건이다. 체포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고, 가택을 침입하여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폴란드인들을 이 사건을 가리켜 ‘작은 카틴 범죄’라고 일컫기도 한다.^{75/}

(3) 폴란드 공산당의 체제문제

1945년 1월 바르샤바가 소련에 의해 해방되면서 폴란드의 지하 군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일부 부대가 소련에 대항하였지만,

^{74/}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수립된 폴란드 정부를 말한다. 1795년부터 1918년까지 삼국 분할지배에서 독립한 폴란드는 자체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지만, 1939년 9월 독일과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 루마니아와 파리를 거쳐 런던으로 망명한다.

^{75/} Nikita Pietrow, *Psy Stalina* (Warszawa: Demart, 2012), pp. 222~229.

소련군은 저항군 5만여 명을 체포하고 소련으로 강제 이송하였다. 같은 해 5월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6월에는 바르샤바에 민족통일폴란드정부(PRZN)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련에 의해 해방된 폴란드였고, 소련에 의해 구성된 사회주의 인사들이 대다수였던 정부는 폴란드인들이 원하던 자주적 체제가 아니었다.^{76/}

전후 초기에 폴란드에 거주하던 대다수 독일인이 강제로 추방당했고, 전쟁 중에 이루어진 영토 변경에 따라 민족 구성 역시 바뀌게 되었다. 전쟁 전에는 폴란드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이 전체의 1/3을 차지했지만, 영토와 민족구성의 변경 뒤에는 폴란드인들로 구성된 단일민족국가로 탈바꿈하였다. 단일민족화한 폴란드에서 정부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폴란드 노동당(PPR)과 폴란드 사회당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를 장악하였다.

이들은 산업을 신속하게 국유화하였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뒤 집단농장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폴란드 사회주의 정부 구성을 시도하였다. 폴란드 노동당이 주축이 되어 국민투표를 시도했는데, 상원의 폐지, 토지와 산업시설의 국유화, 독일과의 국경선 문제를 소련의 의견에 따르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1946년 6월에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폴란드 노동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민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시켰고, 농민당 후보자들이 자격을 상실하는가 하면 공개투표를 실시한 선거구도 나타나는 등 불법적 요소를 가진 선거라고 볼 수 있었다.^{77/}

결국 의회선거에서도 농민당 세력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노동당 세력은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949년 2월, 비

76/ Janusz Wrona, *System Partyjny w Polsce 1944-1950* (Lublin: WUMC, 1997), p. 36.

77/ 정병권, 『폴란드사』, p. 287.

에루트(B. Bierut)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수상으로는 치란키에 비치(J. Cyrankiewicz)가 선출되었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고, 통일노동자당(PZPR)이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심지어 민족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던 고무우카(W. Gomułka)를 반소련 체제 인사로 낙인찍어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친소련 세력의 정적 숙청이 이루어졌다. 결국 농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망명길에 올랐고, 폴란드 사회는 일당 독재체제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국방에서도 소련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1949년 11월에는 폴란드에 주둔하던 소련군 사령관 로코소프스키(K. Rokossowski)가 폴란드 국방장관 겸 폴란드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폴란드군을 50만 명으로 늘리고 병역 의무제를 도입하였다. 경제정책 역시 중공업을 위주로 발전하였고, 농업은 집단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52년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되고 나서 의회가 입법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통일노동자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은 소비재의 부족으로 귀결되었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하였다. 농장 집단화 정책도 농산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식량난을 불렀다. 모든 창작예술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교회의 재산도 공산당이 몰수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신부와 목회자들을 체포하였고, 1953년 2월부터는 교회의 인사권마저 정부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78/} 신부들이 당에 충성서약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대주교를 구속하였다. 당시 국민의 95% 이상이 가톨릭 교도였던 폴란드 사회에서 신부들의 1/4이 구금된 상황은 국민들에게 반발의 여지를 남긴 요소였다.

78/ 위의 책, p. 29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에서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된 뒤 스탈린이 사망하기까지는 불법적 감시와 체포, 감금, 억압이 난무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2월 소련의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독재체제를 비판하였고,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자유화 열망에 희망을 주었다. 폴란드에서도 비에루트 당 서기장이 같은 해 사망하였고, 후임으로 선출된 오합(E. Ochab) 서기장은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던 정치인들을 사면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는 고무우카도 포함되었고, 10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풀려났다. 또한 중공업 일변도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을 통해 경공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우나 공장 근로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고, 폴란드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이루던 청소년과 청년 계층은 물질적 빈곤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포즈난(Poznań)시에 있던 스탈린 공장의 과도한 노동량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은 정부의 작업 실적 향상 요구에 항의하기 시작했고, 1956년 5월에 파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함으로써 시위는 격화되었고, 당 사무소와 경찰서가 점령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위 진압으로 53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했다.^{79/}

사회 혼란을 경험한 폴란드 정부는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였고, 사회 개혁안을 내놓았다. 중앙통제 방식을 정부와 산업영역에서 다소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향상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주택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의회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경영에 대한 참여와 감독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폴란드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1956년 10월에 소련의 흐루쇼프와 당 간부들이

79/ 위의 책, p. 302.

바르샤바를 방문하였다. 일종의 교통정리가 목적이었던 방문이었기에 폴란드 정부는 소련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 개혁이 소련과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온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80/}

결국 흐루쇼프는 폴란드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을 허용하되 동구권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인했고, 폴란드 국방 장관이었던 로코소프스키를 해임하고 민족적 사회주의자였던 고무우카를 당서기장으로 뽑는 것을 추천하였다. 일종의 해빙기를 맞이한 폴란드는 고무우카를 신임 당서기장으로 선출하였다. 고무우카의 과제는 당내에 존재하는 스탈린주의자들과 개혁파들의 분열을 통합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생활수준 향상의 문제와 주권 회복 문제, 법치주의 확립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었다. 고무우카는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폴란드만의 고유성을 내세우며 소련식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 이루어졌던 고문과 감금, 살해 등의 인권탄압 문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당과 인민들에게 강조하기도 하였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개선하고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장 집단화 정책을 중지하고 농민들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우카의 개혁정책에 따라 폴란드 가톨릭의 대주교와 신부들이 대거 석방되었다. 1956년 12월에는 국가가 교회 인사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일반 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신부들의 사목활동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고무우카의 부분적 업적을 보자면, 폴란드에 주둔한

80/ 위의 책, p. 304.

소련군대를 치외법이 아닌 폴란드법 관할 아래에 묶어놓았고, 석탄의 공급을 공물의 성격이 아닌 무역협정에 따른 물물교환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7억 루블의 지원금을 받기까지 하였다.^{81/} 소련의 협조에 따른 보상책으로 폴란드 정부는 중·소 분쟁에서 소련의 입장을 지지했고, 유고슬라비아 문제에서도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고무우카의 개혁정책은 많은 인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당내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과 개혁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중간자적 입장이 사실상 고립을 낳은 셈이었다. 점진적 개혁에도 폴란드 경제수준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산업정책을 중공업으로 재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산업의 불균형을 다시 불러왔고, 물가인상 조치에 따른 인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고무우카는 초기의 개혁정책에서 뒤로 물러나 다시 강압적 정책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다시 시작했고, 잡지의 폐간, 1968년 바르샤바 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진압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정책 등을 보이며 폴란드 사회는 다시 경직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70년 물가인상 조치에 반발한 폴란드 노동자들이 발트해 연안 공장에서 집단 파업을 벌이며 정부정책에 항의했고, 고무우카 정부는 이에 무력으로 대응하여 48명이 사망하고 1,165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안고 고무우카는 그해 12월 사임했다.

고무우카의 후임인 기에렉(E. Gierek)은 집권 초기에 경제성장을 이끌며 폴란드 사회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고무우카 시절 서구와의 교역을 시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67년 관세협정(GATT)에 가입한 폴란드는 1970년 서독과 관계 개선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많은 외자가 폴란드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기에렉의 집권 첫해부터 폴란

81/ 위의 책, p. 316.

드의 산업은 33%, 농업은 19%, 임금은 37% 인상되었다.^{82/}

그러나 외자 유치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폴란드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76년 정부는 다시 100% 가까운 물가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라돔(Radom)과 우르수스(Ursus)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정부는 역시 수백 명을 검거, 해고, 투옥하며 파업을 진압했고, 1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은 단독 파업행위가 아닌 학계 인사들과 협력을 하며 조직적 자유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자보호위원회(KOR)다. 1978년에는 폴란드의 카롤 보이티와(K. Wojtiła) 추기경이 로마 바티칸의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진 그의 고국 방문은 폴란드 인민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에도 폴란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물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파업을 주도하되 공장 안에서 버티며 공산당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발트해 연안에서는 자유노조연대(NSZZ-Solidarność)가 결성되었고, 폴란드 인민들의 자유화 운동에 대한 자율적 요소가 증가하였다. 자유노조 지도자로 선출된 바웬사(L. Wałęsa)를 비롯한 노조 지도자들은 신문과 잡지들을 발간하며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결국 1980년 8월에 정부와 교섭한 끝에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보장되었다. 자유노조는 결성된지 3개월 만에 천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이는 국민의 1/3에 달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예렉은 사임하고 카니아(S. Kania)가 당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자유화의 열망이 한창 달아오를 때인 1981년 12월 국방부 장관이었던 야루젤스키(W. Jaruzelski)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5천 명에

82/ 위의 책, pp. 320~321.

달하는 노조원들을 감금하였다. 국경을 폐쇄하고 통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신검열이 가능했고, 가택은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했으며, 통금을 실시했다. 결국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서방 세계는 폴란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 지도자들은 지하에서 자유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통제와 폐쇄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일으켰고, 1982년 2월에는 400% 물가인상을 발표하기에 이른다.^{83/} 1983년에 폴란드 정부는 계엄을 해제했지만, 야루젤스키의 폐쇄적 정책으로 폴란드 사회는 고립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통일노동자당의 독재로 이루어진 체제였다. 스탈린 통치 시대에는 비에루트 당서기장의 철권통치로 인해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반체제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테러와 감금, 살해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스탈린 사후에는 다소 개혁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중공업 위주 산업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불러왔고, 이는 전국적 파업으로 이어졌다. 1956년과 1968년, 1970년, 1976년, 1980년으로 이어진 일련의 파업과 자유화 운동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인권을 희생하며 이루어 낸 폴란드의 자유화는 여타 동구권 국가들과 비슷하면서도 정도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 인권정책의 전개와 특징

폴란드의 인권문제는 과거청산 문제와도 직결된다. 전쟁범죄와 체제범죄를 규명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적 측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인권의식의 향상을 통해 민주적 시민을 양성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안정으로 귀결되어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83/} 위의 책, p. 336.

영향을 줄 수 있다.

폴란드의 인권문제에서는 1989년 체제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과 체제전환, 자율적 시민의식의 향상은 과거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식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체제청산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어려움을 맞기도 하였는데 정치적 입장이 대립 양상을 통해 과거청산 문제가 정치화한 면이 있다.

(1) 체제전환 과정과 원탁회의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시도하면서 동구권의 정치적 흐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정부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통제를 소련의 견제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서방으로부터 고립되면서 맞이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분열을 소련에 의지하면서 헤쳐 나가야 했다. 그런데 소련의 체제가 변화를 맞이하면서 소련의 동구권에 대한 개입이 약해지자, 폴란드 정부 역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1985년 12월의 여론조사를 보면 폴란드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46%를 차지했고, 매년 10%씩 부정적 응답이 늘어만 갔다.^{84/} 1986년 9월 폴란드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정치범 225명을 대거 석방하였다. 서방 세계에 폴란드 공산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어서 석방된 재야 민주인사 가운데 온건파를 권력에 참여시켜 경제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략도 있었다. 반면 바웬사를 중심으로 조직한 자유노조연대는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공산당 측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85/}

^{84/} Społeczeństwo i Władza lat 80-Tych w Badaniach CBOS (1994), p. 268.

이러한 요소들이 만나 양측의 대화 가능성이 열렸다. 1986년 9월의 사면 뒤 바웬사는 공산당 측과 협상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결성했고, 미국 측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는 등 공산당과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86/} 자유노조연대 측은 자유노조의 합법화와 상원 설치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을 공산당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산당 측은 자유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1988년 4월 비드고쉬취(Bydgoszcz)의 교통노동자들이 임금문제로 파업을 일으켰고, 이에 크라쿠프의 레닌 제철소와 그다인스크 레닌 조선소에서도 파업이 이어졌다. 공산당 측은 파업 중지를 조건으로 자유노조연대 측에 협상을 제안하였다.^{87/} 공산당 측은 자유노조의 합법화는 유보하되 정치개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계속되는 탄광파업과 조선소 파업에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파업중지를 조건으로 민주재야인사들, 자유노조세력들과 원탁회의를 제안하였다. 바웬사는 파업 중지를 호소하였고, 그해 8월과 9월에 폴란드 공산당 측과 자유노조 측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폴란드의 공산당 역시 실용주의자인 라코프스키(M. Rakowski)를 신임 총리로 선출하며 정부의 체질개선에 나섰다.^{88/} 외국화폐의 유통을 합법화하고 민간 기업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농약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보이면서 인민의 여론을 환기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85/} Jan Skorzyński, *Uгода i Rewolucja: Władza i Opozycja 1985-1989* (Warszawa: Rzeczpospolita, 1995), p. 24.

^{86/} 김철민 외,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한국에 주는 의미』 (서울: 한국외대지식출판원, 2014), p. 100.

^{87/} Tomasz Tabako, *Strajk 88* (Warszawa: Niezależna Oficyna Wydawnicza Nowa, 1992), pp. 80~81.

^{88/} Mieczysław Rakowski, *Jak to się stało* (Warszawa: BGW, 1991), p. 131.

1988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소집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점진적인 자유노조 합법화를 구상하고 재야민주 세력과 협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바웬사 측도 시민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는 1980년대 초 노동자보호위원회 출신들과 자유노조연대 지하 지도부를 합친 세력으로 구성되었다.^{89/} 이들은 주로 공산당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온건파로 구성되었다. 시민위원회에는 15개의 부속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복수노조위원회와 정치개혁위원회, 사법위원회, 경제개혁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졌다.^{90/} 이는 향후 정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위원회 구성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1989년 2월 6일 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총 56명이 참석하되, 공산당 측 인사 14석, 관영노조 6석, 재야민주진영 20석, 교회대표 2석, 무소속 14석(시민위원회 5석)으로 이루어졌다. 원탁회의에는 사회정책과 경제팀, 정치개혁팀, 노조다원화팀의 세 모임이 이루어졌고, 부속 팀들로는 농업과 광업, 사법개혁, 조직단체, 지방자치, 청소년, 대중매체, 학문, 교육 기술, 위생생태 분과가 구성되었다.^{91/} 원탁회의를 통해 정치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원을 신설하되 100명으로 이루어진 상원은 완전 자유선거로 치르고, 하원의 65%는 공산당 측에게 사전 부여하되 나머지 35%를 투표를 통해 뽑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원탁회의 과정에서 자유노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1989년 6월의 선거 결과 상원 100석 중 99석이 자유노조 측에서 당선되었고, 하원 35% 중 전원이 또한 자유노조 측에서 당선되었다. 8월에 마조비에츠키(T. Mazowiecki)를 총리로 선출하면서 동구권 최초로 민주인사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12월 29일 헌법

89/ 김철민 외,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한국에 주는 의미』, p. 118.

90/ 위의 책, p. 119.

91/ 위의 책, p. 121.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며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삭제되었고, 폴란드인민공화국은 폴란드공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체제청산 과정과 어려움

1989년 민주화 뒤 폴란드 정국은 과거에 대한 정리를 주요 사회국가적 과제로 상정했다. 공산당의 개혁과 세력과 자유노조연대의 온건파가 대거 의회로 진출한 상황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정리는 범위와 강도에서 한계를 맞게 되었다. 공산당의 과거 범죄에 대한 규명이 구 공산당 세력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자유노조의 온건파에게는 일정한 타협점이 모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1991년 2월 하원에서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인사에 대한 보상을 결의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92/} 이는 기존에 있던 히틀러 시대 범죄 조사위원회를 개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5년 전후부터 시작한 나치 독일에 대한 범죄 조사는 폴란드인민공화국 시대에도 가능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나치에 의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연대하여 반나치 구도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소련과 폴란드인민공화국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결국 체제전환 뒤 의회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스탈린 시대에 행해진 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1956년까지 폴란드인민공화국 내에서 벌어진 범죄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폴란드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체제청산을 시도하는 노력이 의회에서 있었다. 정보기관에 속했거나 이에 협력한 이들을 조사하는 법률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원 성격상 해당 법안은

^{92/} 김신규 외,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 (서울: 인문과교양, 2022), pp. 23~24.

거부되었다. 그러다 1992년 5월 폴란드인민공화국 당시 정보부와 협력한 이들을 처벌하지는 않되 정보만 공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하원의 과반 정족수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가결되었다. 1945년에서 1990년 사이 폴란드인민공화국에서 정보부와 협력한 이들을 추적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여기에는 주로 의원과 장관, 주지사, 판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이 포함되었다.^{93/}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구 공산당 세력과 자유노조의 온건파로부터 발화하였다. 특히 대통령이던 바웬사는 내각 해산을 명령하며 총리의 해임 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노조연대 세력 내에서도 급진적인 체제청산파와 이에 반해 온건한 입장을 가지는 중도파가 존재했는데 바웬사 대통령은 온건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원탁회의의 주요 세력들은 공산당과 타협하여 체제전환을 이뤘기에 주로 온건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안이 가결된 같은 달에 정부 해임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의회 주요 세력들에 의해 다음 달 해임이 가결되었다.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던 농민당의 선택이 중요했는데 농민당의 당수였던 파블락(W. Pawlak)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조건으로 정부 해임안에 찬성했다. 체제청산 과정이 정치적 타협이라기보다는 야합에 가까운 결과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특히 내무부 장관이 공산당 정보부에 협력한 명부를 하원에 제출한 당일에 총리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명부에는 공교롭게도 바웬사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과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직후 경험한 정치와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과거 공산당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한다. 1993년 의회 선거에서 과거 공산당 세력이 승리하면서 4년에 걸쳐 정부 구성을 이룬다. 특히

93/ 위의 책, p. 28.

1995년에는 과거 공산당에서 체육부 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A. Kwaśniewski)가 바웬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른다.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과거 공산당 세력들로 인해 과거와 체제 청산은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1994년에는 정부 관료에 대한 임용 조건으로서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1996년까지 세 차례에 더 걸쳐서 과거 정보부와 협력한 인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담은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 총선에 의해 의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체제청산에 관한 특별법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 공공기관의 수장, 판·검사와 변호사, 대학총장급 인사,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심사를 하되, 이들이 과거 정보기관에서 근무했거나 협력한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었다.^{94/} 그리고 체제청산 법정을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였다. 2001년 좌파동맹의 재집권으로 인해 다시 과거사 문제는 논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특히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도 2000년에 재선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에서 과거사 논의는 논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우파가 집권함으로써 2006년에 다시금 정보공개에 대한 명령이 구체화하였다. 공직을 임명할 때 반드시 과거 공산당과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는 법으로써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특히 집권에 성공한 법과정의당(PiS)은 군의 정보부를 폐쇄했는데 이는 공산주의 시절 인사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오늘에도 사법부의 공산당 시절 재직했던 법관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법과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일방적 의회주의 노선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마찰을 겪기도 한다.

^{94/} 위의 책, pp. 33~34.

폴란드의 체제청산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속성을 갖추기는 어려웠다. 체제전환이 있고 난 뒤 스탈린 시대 폴란드인민공화국의 범죄를 조사하는 법안은 가결되었으나, 폴란드인공화국 전반에 걸친 범죄조사는 의회의 구성원 특성상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공산당 세력의 존재와 자유노조의 온건파가 다수인 의회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범죄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는 내각 해임까지 경험해야 했고, 총선에서 여전히 재집권에 성공한 좌파동맹은 굳이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바웬사 대통령 자신이 과거 공산당 정보부와 협력했다는 의혹을 지니고 있었고, 바웬사의 후임 대통령인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은 공산당 간부로 재직했기에 폴란드의 과거청산 문제는 순탄치 않았다. 과거청산이 인권탄압을 규명하는 일이었고, 사회적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기에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웬사와 결별한 체제 청산파들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의회에서 집권한 결과 국가추념원(Institute for National Remembrance; Instytut Pamięci Narodowej: IPN) 설립을 포함한 체제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제청산 작업은 지속성과 연결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성과 지속성, 일관성이 인권과 정의에 관한 재정립 문제와 연결되고, 이것이 사회적 안정과 평화, 발전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있는 지 34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폴란드의 인권개선문제가 평화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인권에 대한 체제전환 초기와 오늘의 시각이 현저하게 다르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배경과 인권정책의 전개과정을 볼 때 폴란드는 인권문제 재정립과 체제청산에 대한 인식적 굴곡이 심했

던 편이다. 2016년 바웬사 전 대통령은 공산당 정보부 파일 원본이 발견됨으로써 협력자로 밝혀졌고,^{95/} 자유노조연대를 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던 아루젤스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폴란드의 인권개선 문제와 체제청산은 관련성을 갖되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IPN의 활동과 폴란드 체제청산의 특징

폴란드의 IPN은 폴란드 민족에 반하는 범죄추적위원회로 명칭을 갖고 조사,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다.^{96/} 1998년 12월 의회에서 기관에 대한 설립을 놓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듬해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바르샤바를 본부로 하여 11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하였다.^{97/}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폴란드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정의와 청산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실질적 처벌과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의 정보기관의 문서를 수집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나치정권과 소련, 폴란드인민공화국의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업무, 홍보와 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범죄추적위원회와 문서작업부서, 공공교육부서, 체제청산규명부서를 두었다. 범죄추적위원회는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추적하던 기관에서 발전하여 소련의 스탈린시대 범죄를 포함한 공산주의 정권의 포괄적 범죄를 추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서작업부서는 인권탄압 범죄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수집·열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교육부서는 대중에게 관련 연구와 자료들을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학술연구를 통한 규범적 연구를

95/ 위의 책, pp. 52~53.

96/ 위의 책, p. 41.

97/ 통일연구원, “국가기억원 전문가 간담회,” 해외(폴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2023. 4. 26., p. 10.

수행하고 있다. 체제청산 규명부서는 실질적 자료공개를 통한 공직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IPN은 폴란드의 민족 보존을 위해 힘쓴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폴란드 공산정권에 협력한 인물들을 추적하여 연금을 하향 조정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81년 계엄령과 관련하여 협력한 4만 천여 명의 인물들을 추적하여 연금을 낮추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98/} 2000년부터 2009년까지 9,218건의 범죄 관련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6,457건을 공산당 관련 범죄로 규정하였다.^{99/} 나치 범죄로는 2,404건을 발굴하였고, 128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100/}

IPN의 활동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인권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명예를 제공하며, 가해들을 심판하고, 공산당 정보부 협력자들의 공직자 취임을 방지하며, 대중에게 이들의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의 이행기 정의와 체제청산 과정은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특성과 의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변경되었고, 특히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이 타협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을 볼 때, 미온적 체제청산 과정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시민세력의 압도적 영향력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고, 헝가리의 경우에는 공산당 개혁세력의 노력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던바,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그 중간이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체제청산의 과정이 급진적이지는 않되 그 과정이 의회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굴곡이 있었던 사례라

98/ 김신규 외,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 p. 45.

99/ Antoni Kura, *Zbrodnie Przeszłość*, (Warszawa: IPN, 2012), p. 9.

100/ 김신규 외,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 p. 46.

할 수 있다. 인권의 탄압 문제가 체제청산의 과정을 통해 개념정립이 가능했고,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 또한 체제청산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인권문제는 체제청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체제 전환, 청산과 관련한 사회적 안정, 평화 문제와 경제적 발전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상등하다.

다.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1) 인권의 평화 효과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변화는 인권 개념의 변환을 가져왔고,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인권의 인식변화와 증진 노력이 평화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인권 개념이 어떠했고, 체제전환 뒤 나타난 폴란드공화국 헌법의 변화가 사회적 안정과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정치적 안정성과 평화, 국제정치적 안정성과 평화를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폴란드 역사에서 사회적 주체는 계속 변화해 왔다. 중세부터 시작된 왕정에서는 왕권이 주요한 세력이었고, 근세부터 시작한 귀족정에서는 귀족권이 상원을 통해 등장하였다. 근대의 식민기간을 거치며 독립한 폴란드 2공화국에서는 현대적 시민권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참정권과 아동의 보호권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소련의 개입으로 해방된 폴란드는 인민공화국을 거치며 노동당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그러다 1989년 이뤄진 체제전환 뒤에는 정당정치를 통한 시민권이 다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중세와 근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대의 폴란드는 노동자당이 집권

한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다당제를 보장한 폴란드공화국 시기로 나뉘 볼 수 있다. 정치의 안정성은 사회적 반동과 저항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인민공화국 집권 당시 폴란드 사회는 수차례의 노동자 봉기, 학생 봉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당연히 사회적 안정과 평화는 사회적 반동성과 저항성에 반비례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체제전환 뒤 등장한 폴란드공화국의 다당제는 의회와 내각의 주도세력이 수시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시민들의 권리향상과 참여의식으로 인해 체제적 방동성과 저항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하였고, 시민권의 향상과 사회적 평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 당시에도 인권의 개념은 존재하였다. 헌법을 통해 명시된 인민의 기본 권리는 당시 인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1952년 7월 22일에 공포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7장 부분이 인민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101/}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사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헌법으로 볼 수 있다. 57조부터 79조까지 인민의 권리에 대해 상술하는데, 노동에 대한 권리, 휴가에 대한 권리, 의료와 보건의에 대한 권리, 교육과 문화, 예술에 대한 권리, 양성 평등에 관한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표현에 관한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노동당의 관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로 표현되며 사회주의 이념과 인민공화국의 단결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한적 명시는 시장경제의 거부와 검열을 포함한 국가자본주의와 전체주의적 통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전술하였듯이, 통치 체제의 획일화와 경직은 종교계의 인사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이 대거 체포되거나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

101/ Konstytucja Polskiej Rzeczypospolitej Ludowej z dnia 22 lipca 1952 roku.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통치체제는 소비에트 연방에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소련의 사회체제와 통치체제와 맞물려 작용하였다. 실제로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 인권선언 의결에서 폴란드 정부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권과 함께 기권 의사를 표명하였다. 모두 8개의 국가들이 기권을 하였는데, 재산권 조항과 사회권 영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102/} 그러나 선택적으로 체제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한 협약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인다. 마약밀매와 성 착취에 대한 협약(1952), 노예제 폐지에 관한 협약(1962),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6)과 같은 사회권에는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면서도 개인권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특히 종교와 관련한 사항에서는 당의 노선과 어긋날 경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1차 이행기를 꼽으라면 1953년 스탈린 사후 이루어진 1956년 소련의 20차 공산당 전당대회라 할 수 있다. 대대적인 정치범들의 사면이 이루어졌고,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고무우카의 복권과 집권이 연이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1956년에는 포즈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봉기가 발생했고, 이는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반동과 저항성이 표출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68년에는 바르샤바 대학생들이 사상 자유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공산정권의 반응은 강압적이었으며, 이 시위는 유대인 지식인들을 차별하는 반유대주의 운동의 선봉이었다. 1970년과 1976년 노동자들의 봉기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위협할 정도의 성격을 지녔다. 노동자 보호 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지식인들의 협업이 이루어지며 반체제 운

^{102/} Agnieszka Bieńczyk-Missala, *Prawa Człowieka w Polskiej Polityce Zagranicznej po 1989 roku*, (Warszawa: PISM, 2006), p. 57.

동이 연대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 정권 운동 또한 인권의 자유를 외치는 성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 정부는 헬싱키 협정에 서명하면서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법상 양심과 종교, 노동, 결사, 파업, 표현, 교육의 자유에 동의한다. 결국 1980년에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보장되는 자유노조연대 형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듬해 이루어진 계엄령으로 폴란드 사회는 경색구도로 전환하였다. 폴란드 인권운동의 주체세력을 보자면, 교회와 노동자, 지식인으로 구성된 자유노조연대라 할 수 있고, 이들의 강령은 종교와 민주, 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9년 폴란드인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의 고국 방문 또한 폴란드 사회변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어지는 1984년 예쥬포피에우쉬코(Jerzy Popiełuszko) 신부의 암살 사건 또한 인권문제 변혁의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결국 1989년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은 자유노조연대(교회, 노동자, 지식인)의 공헌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도발적 시초를 제공하였다. 1989년 시작된 원탁회의에서는 정치적 다원화와 표현의 자유, 민주적 선거, 사법부의 독립, 자유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에 폴란드 인민들이 맛보지 못했던 의회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것이 사회의 다원화와 인권 향상에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결국 1989년 의회의 구성원이 자유노조연대 세력의 주축으로 바뀌면서 1952년 사회주의 헌법이 일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명칭이 폴란드공화국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폴란드 귀족정의 1공화국과 1918년 독립 뒤의 2공화국을 이은 3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폴란드 국가문장인 독수리의 머리에서 왕관이 복귀되었고, 폴란드통

일노동자당의 지도적 역할이 삭제되었다.

그러다 1997년에 와서야 폴란드공화국의 헌법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권리, 법치, 다원주의, 지방정부의 역할, 경제적 자유, 재산 보호, 무력의 제한 등이 명시되었다. 입법에 대한 권한이 다원적 정당에 의해 수행되도록 변경되었고, 양원제와 대통령, 내각, 독립된 사법부가 국가통치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시민들은 대통령과 의회 의원, 지방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체제전환 뒤 새로운 헌법을 개정할 때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폴란드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기회를 얻었다. 의회는 다수 정당으로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들이 허용되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가 허용되었다. 이는 하나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폴란드 인민공화국 체제를 넘어선 결과였다. 또한 시장경쟁체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했던 군경(Milicja)은 폐지되었고, 경찰과 사법부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구축되었다.

폴란드 3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은 폴란드의 국내적 상황만을 고려한 결과물이 아니었다. 1991년 폴란드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이 되었고, 1993년 유럽 인권협약에 동의하였다. 이는 기존 유럽연합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유럽의 일원으로서 인권의 문제를 구체화한 계기가 되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문제를 지역적 문제로 끌어온 것이다. 결국 1997년 개정된 새 헌법에서는 2조의 30항부터 81항까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다. 개인권의 보호, 차별 금지, 양성 평등,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이 명시되었다. 사회주의 헌법과 비교하면, 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신헌법에 나타난 자유와 권리 사항 전(前) 부분(1997)

권리와 자유	헌법 조항
존엄의 보호	30
자유에 대한 권리	31
법 앞에서 평등	32
차별 금지	32
양성 평등	33
시민의 권리	34
소수자 권리 보호	35
생명 보호	38
동의 없는 실험 금지	39
고문과 반인륜적 학대 금지	40
개인 정보 보호	41

출처: Agnieszka Bieńczyk-Missala, *Prawa człowieka w polskiej polityki zagranicznej po 1989 roku*, (Warszawa: PISM, 2006), p. 67.

폴란드의 새로운 헌법은 시민 개인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고 시민권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재산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표현이 정당정치로서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폴란드 사회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안녕과 평화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 우선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결과 지표로 확인해 본다면 폴란드 체제전환 초기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동구권의 민주주의 공고화 지표(1989-2003)^{103/}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P	C
벨라루스	-	-	-	-	4	4	4	3	5	4	4	4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불가리아	7	7	3	4	2	3	2	3	2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1	3	1	2	1	2
체코	-	-	-	-	-	-	3	-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에스토니아	-	-	-	-	2	3	6	3	3	2	3	2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헝가리	4	3	2	2	2	2	-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1	2
라트비아	-	-	-	-	2	3	3	3	3	3	3	3	2	2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리투아니아	-	-	-	-	2	3	3	3	1	3	1	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폴란드	4	3	2	2	2	2	3	2	2	2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루마니아	7	7	6	5	5	5	-	4	4	4	4	3	4	3	2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러시아	-	-	-	-	3	3	4	4	3	4	3	4	3	4	3	4	3	4	4	4	4	5	5	5	5	5	5	5	5	5
세르비아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2	3	2
슬로바키아	-	-	-	-	1	3	3	4	2	4	2	3	2	4	2	4	2	2	1	2	1	2	1	2	1	2	1	2	1	2
우크라이나	-	-	-	-	3	3	2	3	4	4	3	4	3	4	3	4	3	4	3	4	3	4	4	4	4	4	4	4	4	4

출처: Agnieszka Bieńczyk-Missala, *Prawa człowieka w polskiej polityce zagranicznej po 1989 roku*, (Warszawa: PISM, 2006), p. 91.

103/ P-political rights(정치적 권리), C-civic freedoms(시민자유), 최고점이 1, 최저점이 7.

폴란드의 체제전환 직후 1990년대 의회 다수정당 정치의 정착을 통해 폴란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척도는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1999년 NATO 가입과 2004년 EU 가입은 폴란드 정치의 세 번째 분기점으로 보인다. 첫 번째 분기점이 1989년 체제전환, 두 번째 분기점이 1997년 민주헌법개정, 세 번째 분기점이 바로 NATO와 EU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NATO와 EU 가입은 중부 유럽 10개 국가들의 동반가입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 성숙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10년 동구권 민주주의 공고화 상황을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표 III-5 동구권의 민주주의 공고화 지표(2010)

국가	정치적 권리	시민자유	자유도 평가
폴란드	1	1	free
헝가리	1	1	free
체코	1	1	free
슬로바키아	1	1	free
불가리아	2	2	free
루마니아	2	2	free
세르비아	2	2	free
알바니아	3	2	partly free
마케도니아	3	3	partly free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4	3	partly free

출처: 정홍모, 『동유럽국가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p. 167.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셰그라드(V-4)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향상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NATO와 EU 가입을 통한 국제화 향상도 민주주의 표준의 상향을 이끌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유럽연합 가입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라고 볼 때,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노력과 가입 뒤 표준화 작업 역시 민주주의 공고화

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에는 주변국과 관계 설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조약을 주변 나라들과 협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주의 공고화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5년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한 뒤, 과거체제 청산작업을 사법부에서도 시작하자, 법관임명 문제를 놓고 폴란드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2017년 민주주의 공고화 점수가 100점 가운데 89점을 기록했던 것이 2018년에는 85점, 2019년과 2020년에는 84점, 2021년에는 82점, 2022년과 2023년에는 81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사법성에서 민주주의 지표가 낮게 나오고 있고, 특히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에서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04/} 이러한 바탕에는 젠더 문제를 포함한 여성의 낙태권리와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 야당과 정부의 갈등심화도 한몫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유도 평가에서는 〈Free〉의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사회적 갈등 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에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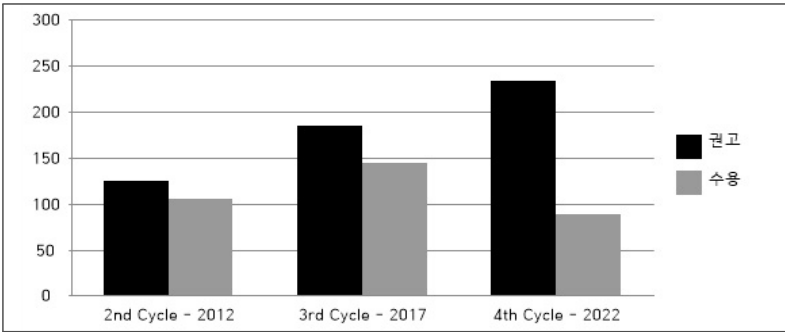
최근 들어 폴란드의 보편정례검토(UPR)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선 민주주의 공고화 평가와 연결할 수 있다. 2022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폴란드의 UN 인권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인도적 수용을 강조하며 인권 신장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명했다.^{105/} 그러나 UN 인권이사회는 권고를 통해 폴란드 정부의 노력에

^{104/}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country/poland/freedom-world/2017>〉 (Accessed September 3, 2023).

^{105/} Government of Republic of Poland, 〈<https://www.gov.pl/web/un/poland>〉.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야권과의 협조가 부족한 정부의 상황과 낙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젠더와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를 지난 세션에 이어 재차 강조하였다.

그림 Ⅲ-1 폴란드 보편정례검토(UPR)에 따른 권고 수용 정도



출처: UN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pl-index>> (검색일: 2023. 9. 3.).

실제로 UN 권고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2022년 보고서에서는 권고와 수용 건수가 233 대 8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다양성 척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폴란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폴란드 정부의 수용률이 낮다고는 하나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국내적으로 공개하며 사회적 토론을 유도하고 있고,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당시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사회문화라 할 수 있고, 개방성과 토론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점에서 권고에 대한 수용률과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화와

ds-human-rights-record-examined-in-universal-periodic-review-in-geneva》(Accessed September 3, 2023).

안정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의 국제평화지수(GPI)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평화에 대한 척도를 가늠할 수도 있다. 정치와 사회, 군사, 외교적 요소들을 망라한 평화지수라 할 수 있기에 종합적인 사회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I-6>을 보면, 폴란드는 주로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조사 대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위협 요소 증가가 변수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군비확장과 경제 규모 증대에 따른 정부의 사회자본 지출 증가 역시 위협에 대한 상쇄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표 III-6 폴란드의 국제평화지수(GPI) 변화

	점수	순위
2007년	1.683	27
2008년	1.687	31
2009년	1.599	32
2010년	1.618	29
2011년	1.545	22
2012년	1.524	24
2013년	1.530	25
2014년	1.532	23
2015년	1.430	19
2016년	1.557	22
2017년	1.676	33
2018년	1.727	32
2019년	1.654	29
2020년	1.657	29
2021년	1.524	24
2022년	1.552	25
2023년	1.634	29

출처: IEP, <<https://www.economicsandpeace.org/research/>> (검색일: 2023. 9. 3.).

폴란드는 1970년 서독과 관계를 개선하며 국경선 문제를 독일통일 이후에도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역사교과서 공동 집필, 양국 청소년들과 종교계의 상호교류와 화해재단 유지 등이 주변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NATO와의 안보협력관계는 양자동맹 수준의 강력한 안보질서 확립 요소로 볼 수도 있다. 비셰그라드 그룹을 통한 중부유럽 4개국의 협력질서, 바이마르 회의를 통한 독일, 프랑스와의 직접 협력 관계, 유럽연합을 통한 통합질서 소속 등은 체제전환 이후에 확립한 평화질서 수립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만,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도발이나 우크라이나 정세의 불안정성은 폴란드의 외부적 평화요소를 감퇴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정당정치와 다양성과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사회주의 집권 노동당의 일당 지도체제는 사라지고, 다당제를 통한 사회적 토론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군경의 폭력적 진압 문화는 사라지고, 비폭력 시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문화로 바뀌어 갔다. 1997년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인권개념이 확장되었다. 자유와 생명에 대한 존중 개념이 생겼고, 개인권과 사회권의 조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향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1999년 NATO 가입을 통해 안보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노력이 관철되었다. 대미관계 강화를 통해 국방력 증진을 실현하고 있고, 역내 세력 균형에서의 역할론을 중시하며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인권개선의 노력을 정진했고, EU 가입을 통해 유럽의 일반 또는 보편적 인권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UN을 통한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 여론과 함께 토론을 통해 수용 또는 거부되었다.

결국 폴란드의 인권과 평화 관계 과정에서는 모두 다섯 단계의 전환

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1989년 체제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 문화(원탁회의),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 개념의 확장, 1999년 NATO 가입을 통한 군사·안보적 환경의 안정성 강화, 2004년 EU 가입을 통한 유럽의 일반 또는 보편적 인권개념 도입, 2015년 법과정의당 집권 뒤 UN 인권이사회, EU 사법제도와 갈등을 보이며 나타난 사회적 토론과 갈등양상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 평화를 다소 안정적으로 이루어 가는 폴란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평화를 위협하는 변수를 꼽는다면, 폴란드 과거사 청산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내부적 요소라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러시아와의 갈등 문제가 외부적 위협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물리적 폭력 없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폴란드 사회의 정치와 외교, 평화에 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Ⅲ-7 폴란드 인권-평화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시점	내용	의미
1989년	원탁회의와 체제전환	사회적 대타협과 정당정치 다양화
1997년	헌법 개정	인권 개념의 확장
1999년	NATO 가입	안보 질서의 확립
2004년	EU 가입	유럽적 인권 개념의 도입
2015년	법과정의당 집권	사회적 다양성의 충돌과 갈등

(2) 인권의 발전 효과

본 연구에서는 폴란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1차 전환점을 체제 전환으로 두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로 불리는 폴란드통일노동자당(PZPR)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와 다당제로 바뀌는 폴란드 3공화국 체제의 변환이 인권문제 변화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권과 평화 문제에서는 체제전환이 인권과 사회적 평화

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인권과 발전의 문제를 놓고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총생산이나 실업률, 인플레이션 현상과 같은 재래식 지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별 자발적 보고서(VNR), 인간발전지수(HDI) 등을 토대로도 인권정책과 발전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1989년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변화를 맞이한 폴란드는 이듬해부터 대대적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충격요법’으로도 불린 마조비에츠키 내각의 급속한 시장경쟁제도 도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같은 작업을 수반하며 고도의 물가상승과 실업을 야기하였다. 1967년부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폴란드는 서방세계와 다소간 교류를 이어왔으나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폴란드 시민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운 면도 있었다. 이는 1995년 대선에서 바웬사의 낙선(재선 실패)으로까지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의 노동당 간부 출신이었던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표 III-8 동구권 주요 국가들의 순 부채 증가 추이

(단위: 10억 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불가리아	1.6	3.6	5.1	6.1	8.0	9.8
체코 슬로바키아	3.6	4.3	5.1	5.6	5.7	6.3
헝가리	11.5	14.7	18.1	18.2	19.4	20.3
폴란드	28.2	31.9	35.8	34.1	37.5	41.8
루마니아	6.5	6.3	5.1	2.0	-1.3	1.3
소련	15.8	16.6	25.1	27.7	39.3	43.4

출처: 크리스 하먼·마이크 헤인즈, 이원영 역,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서울: 갈무리, 1995), p. 185.

표 III-9 중부유럽 국가들의 월간 실업률(1991)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1990년	1월	0.3	0.1	0.1	-
1991년	1월	6.5	1.1	2.4	2.1
	2월	6.8	1.4	3.0	2.7
	3월	7.1	1.7	3.7	3.1
	4월	7.3	2.0	4.6	3.5
	5월	7.7	2.2	5.4	3.4
	6월	8.4	2.6	6.3	3.9
	7월	9.4	3.1	7.8	-
	8월	9.8	3.4	8.7	5.2
	9월	10.4	-	9.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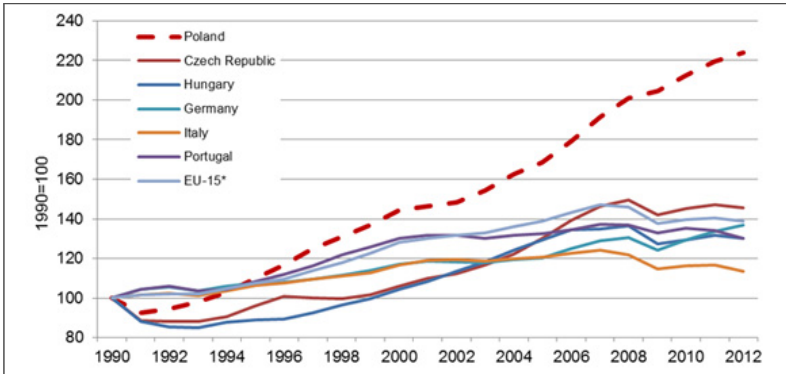
출처: 크리스 하먼·마이크 헤인즈, 이원영 역,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p. 250.

그런데 바웬사 정부를 이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크바시니에프스키 행정부와 내각은 폴란드 경제의 시장화와 국제화를 지속해갔다.^{106/} 1995년 WTO 가입과 1996년 OECD 가입을 통해 폴란드는 국제경제의 일반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EU 가입과 함께 2000년대 경제의 급속한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평가한다면, 체제전환 초기의 급속한 경제개혁이 일시적 부작용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폴란드 경제체질의 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개혁의 차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6/}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총선을 통한 폴란드 내각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권 시기	1991-1993	*1993-1997	1997-2001	2001-2005
정당 형태	우파연합	*좌파연합	우파연합	우파연합

그림 Ⅲ-2 폴란드와 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변화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graphs/2014-10-06_poland_success_story_en.htm> (검색일: 2023. 9. 4.).

체제전환 직후인 1991년 급속한 경제개혁에 따른 침체를 제외한다면, 폴란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갔고, 2000년대 들어서는 급성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타국의 경제 하락세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OECD 평가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구조의 강점은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임금수준과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다.^{107/}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 고학력 저임금의 특성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 요인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EU 가입 뒤 수여된 공적 자금과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15년 UN이 설정한 SDGs 목표에 따라 2018년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UN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 제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2030년으로 설정된 SDGs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적용하되, 경제와 사회, 환경 부분에 중점을 두기로 명시하였다. 외부적 위협 요소로는 우크라

^{107/} OEC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acdd4e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bacdd4ed-en>> (Accessed September 4, 2023).

이나 전쟁을 끝으며, 국제식량과 금융,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보건환경 개선의 노력하고 있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40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이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108/}

표 III-10 폴란드 VNR에 따른 SDGs 중점 목표와 세부 내용(2023)

목표	세부 내용
빈곤 종식	장애인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어린이와 노년의 공공 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 환경 개선
기아 종식	농업 생산 경쟁력 강화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고품질 먹거리 제공 농업 종사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
건강과 웰빙	질병과 사망률 감소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와 의료 환경 개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EU와 WHO 권고사항과 기준 충족
양질의 교육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직업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교육 기회의 평등과 확대 성인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발전
성평등	양성평등 확립 친 가정 정책 확립 산후와 육아 여성의 직장 복귀 원활화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수원 관리 친환경 수질발전 관리
적정한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강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국가의 에너지 안보 확립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취업률 향상과 안정적 고용

^{108/} UN, <<https://hlpf.un.org/countries/poland/voluntary-national-reviews-2023>> (Accessed September 4, 2023).

목표	세부 내용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자의 고용 확대 책임 있는 이민정책 발전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폴란드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지원 운송 인프라 발전
불평등 감소	지역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 해소 장애인 불편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교외 지역의 환경적 발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간 소통 교류 강화 지속 가능한 교통시설 체계 확립 공해 배출 감소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친환경 농업 발전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확보 수질자원 절약 홍보
해양 생태계	다음 세대를 위한 발트해 관리 해양 경제 활성화 해양 안보와 교통수단 확보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 공해 배출 시스템 현대화 토양의 친환경 관리
평화, 정의와 제도	입법 시스템의 능력 강화 ICT의 광범위한 활용 EU 자원의 공적 공유
SDGs를 위한 파트너십	폴란드 원조국가(벨라루스, 에티오피아, 조지아, 케냐, 레바논, 몰도바, 팔레스타인, 세네갈, 탄자니아,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강화

출처: Statistics Poland, <<https://sdg.gov.pl/en/>> (검색일: 2023. 9. 4.).

폴란드 정부의 SDGs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례로 다음과 같다.^{109/} 완수 사항으로는 빈곤 종식과 육상 생태계를 꼽을

수 있다. 반면, 기아 종식과 해양 생태계 문제는 남아있는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래도 달성 과정에서 진전이 있는 항목으로는 깨끗한 물과 위생,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수에서 100점 가운데 총 81.8점을 기록하여 세계 166개국 중 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폴란드의 SDGs 이행 과정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집권 여당의 독주 가운데 이루어진 발전 목표이자 계획이지만, 국제적 표준에서 멀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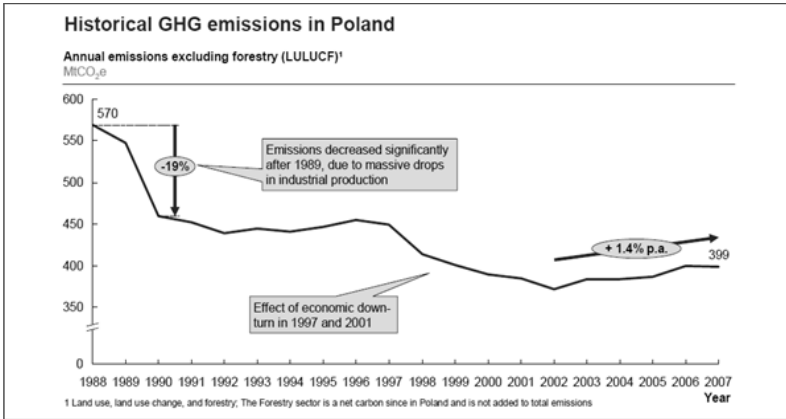
폴란드의 혁신적 발전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에너지 문제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발전의 지속성에도 연계되어 있고, UN과 EU가 추구하는 국제적 상생의 방향이기도 하다. 폴란드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40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다. 석탄산업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폴란드는 석탄 비중을 현재의 80%에서 203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축시키고, 2040년에는 10~20%대로 감축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10/}

폴란드의 신재생에너지 독려 사업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2004년 EU 가입 뒤부터 2020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업을 진행해 왔다. 풍력, 태양,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해왔고, 폴란드 내각은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해 왔다. 쓰레기 처리와 원전 사업을 위해 각국의 투자를 유치해 온 것도 사실이다.

10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oland>> (Accessed September 4, 2023).

110/ Industry News, “폴란드, ‘2040 에너지전략’ 개정안 발표 ... 석탄 단계적 감축 추진,” 2020.11.9.,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0>> (검색일: 2023. 9. 4.).

그림 Ⅲ-3 체제전환 뒤 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64570/poland-greenhouse-gas-ghg-emissions/>> (검색일: 2023. 9. 4.).

교육제도 역시 국제적 표준에 맞추고자 고등교육제도를 볼로냐 프로세스에 준하여 개혁하였다. 유럽연합 가입 뒤부터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석사 단일제도가 학사와 석사 제도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학사행정의 전산화와 학위, 학점제도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의 학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교육 시스템의 직접적 이해와 상호 비교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문제의 해결과정, 교육과 복지 시스템의 개혁과정은 인간발전지수(HDI)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과 건강, 소득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다루는 UNDP의 HDI 역시 폴란드의 발전과 관련한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체제전환 뒤부터 나타난 폴란드의 HDI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30위권을 기록하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21년에 나타난 HDI의 국내 지역 비교 그림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지수가 높게 배정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인 마조비에츠키주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체 지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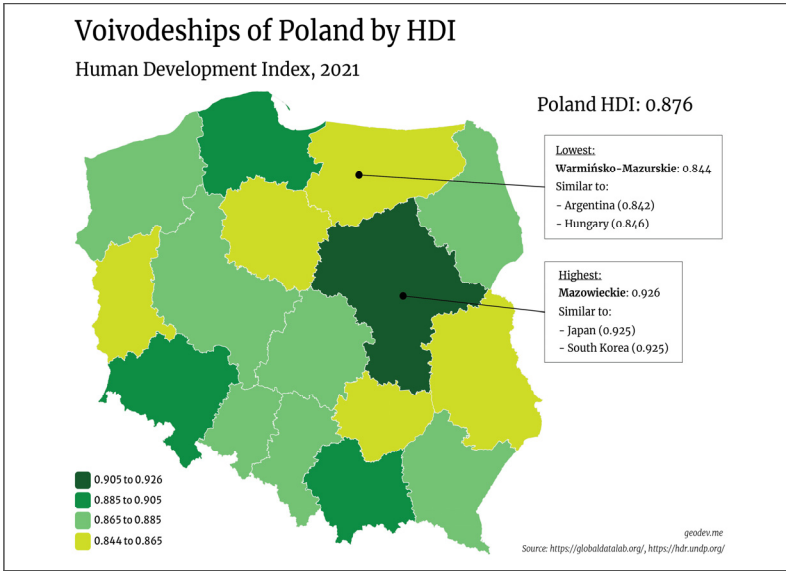
비슷한 반면, 그 위의 지방인 바르민스코 마주르스키 주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헝가리와 비슷하게 나온다(〈그림 II-5〉 참고).

표 III-11 폴란드의 인간발전지수(HDI)

연도	HDI	순위
2021	0.876	34
2020	0.876	36
2019	0.881	36
2018	0.877	36
2017	0.875	35
2016	0.872	33
2015	0.868	33
2014	0.865	33
2013	0.863	33
2012	0.852	34
2011	0.847	35
2010	0.841	35
2009	0.835	36
2008	0.831	37
2007	0.825	38
2006	0.820	38
2005	0.815	38
2004	0.809	37
2003	0.811	37
2002	0.806	35
2001	0.799	37
2000	0.793	37
1999	0.783	37
1998	0.776	37
1997	0.766	37
1996	0.755	38
1995	0.746	38
1994	0.741	37
1993	0.731	37
1992	0.718	41
1991	0.713	45
1990	0.716	44

출처: countryeconomy.com, <<https://countryeconomy.com/hdi/poland>> (검색일: 2023. 9. 4.).

그림 Ⅲ-4 폴란드 국내 주별 HDI(2021)



출처: Reddit,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137ls0c/oc_regional_hdi_in_poland_2021/?rdt=33426) (검색일: 2023. 9. 4.).

폴란드는 체제전환 뒤 국제사회로 적극적으로 편입하며 국제적 경제지표를 증시하는 가운데 발전 정책을 취해왔다. 체제전환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치적 안정과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원만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EU에 가입하기 전후 경제적 유럽표준화 작업이 폴란드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이에 적용한 것이 이어지는 경제성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 목표에 적극적으로 집권 여당들이 참여하였고, UN, EU, OECD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지수들은 폴란드의 경제상황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성장,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은 인간발전 지수의 안정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폴란드의 인권문제는 체제전환과 함께 이어진 정치적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 집권당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경제와 외

교정책이 큰 변화를 겪지 않았고, 다만 사법부 개혁문제와 사회윤리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이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다각화를 유발하고 사회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을 인권문제의 개선으로 상정한다면, 정당정치의 안정과 경제적 성장이 폴란드의 두 축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의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기를 나누자면, 첫째로 폴란드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들 수 있다. 둘째는 1995년과 1996년 WTO, OECD에의 일련의 가입을 들 수 있고, 셋째는 2004년의 EU 가입, 넷째는 2015년 법과정의당의 집권과 SDGs 설정, 다섯째는 2018년과 2020년의 2040 에너지 전략을 들 수 있다.

표 III-12 폴란드 인권-발전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시점	내용	의미
1990년	체제전환과 경제개혁	충격요법을 통한 급속한 개혁
1995/96년	WTO, OECD 가입	경제체도의 국제 표준화 설정
2004년	EU 가입	역내 경제협력구도 구축
2015년	법과정의당 집권과 SDGs	안보를 바탕으로 발전목표 설정
2018/20년	2040 에너지 전략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노력에 참여

출처: 저자 작성

(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폴란드는 체제전환 뒤 이행기 이행 작업을 통해 체제청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인권문제의 공론화와 투명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헌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는 정당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진행

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인권과 평화, 발전은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요소이기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동시성과 상호성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인권과 평화, 발전 문제를 개방성과 폐쇄성의 차원에서 논할 수도 있다. 인권문제에서는 체제전환 뒤 이행기 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개방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 이전에 보이던 폭력과 은폐의 폐쇄성과는 차이가 있다. 평화 문제에서는 체제전환 뒤 의회 정당정치와 다양성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과 토론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체제전환 이전에 보이던 일당 독재형태의 억압 정치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발전 문제에서는 체제전환 뒤 개인의 안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 이전에 나타나던 국가주도 발전주의에 집중하던 모습과 대비된다.

표 Ⅲ-13 폴란드 체제전환 전후 인권-평화-발전의 개방성과 폐쇄성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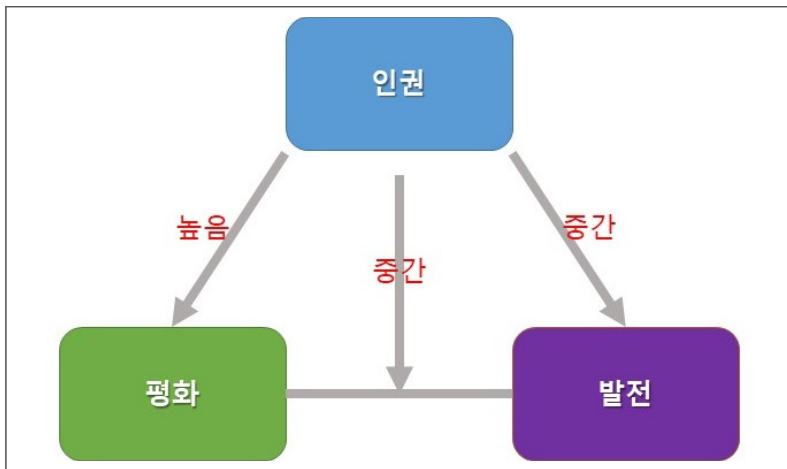
	개방성	폐쇄성
인권	이행기 정의 구축	체제 폭력과 은폐
평화	의회주의의 다양성	일당주도의 억압 정치
발전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가주도 발전계획

출처: 저자 작성

폴란드 인권과 평화, 발전 요소는 상호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개별적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갖추면서 상호적 연계작용을 하고 있다. 인권 요소는 투명성을 추구하고, 평화 요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발전 요소는 지속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상호성을 구축하고 있다. 인권의 투명성은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환경과 상생을 고려한 발전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성에 근거한 평화는 인간 존엄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

고, 지속적 발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꾀하게 만든다. 발전의 건강한 지속성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며 인권문제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고, 사회적 복지와 평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인권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만들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발전의 지속성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추구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체제전환 뒤에 나타난 인권개선과 평화의 효과는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인권의 지속적 발전의 정도는 과정 중에 있기에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평화와 발전 효과에 대해 보통의 특성을 나타낸다(〈그림 III-5〉 참고).

그림 III-5 폴란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출처: 저자 작성

정당의 특색에 따라 체제전환 뒤 폴란드 인민공화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 인민공화국을 역사적으로 무시하며 현재와 단절하려는 그룹이 있고, 인민공화국의 역사를 국가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연속성을 추구하려는 그룹이 있다. 단절성을 강

조하는 그룹의 의회와 내각 집권 시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갈등 요소가 드러나게 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집권할 때에는 체제청산 과정이 더디며 과거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폴란드 사회가 안고 있는 체제전환 뒤의 딜레마이다.

따라서 폴란드의 인권과 평화, 발전 문제에서도 숙제가 존재한다. 인권문제에서는 사회윤리 요소를 놓고 교회와 정당 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UN, EU와 폴란드 행정부 간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사회윤리의 개별 요소들을 놓고 인권 범위를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여지가 폴란드 사회가 향후 인권문제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평화 문제에서도 과제가 존재한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정당정치에서 의견의 충돌이 시위를 통한 물리적 폭력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적 요소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제기되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폴란드의 평화 문제에서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발전 문제에서도 과제가 있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 정당에 따라 속도 차이가 존재하기에 국제 협의에 따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폴란드가 원조하는 국가들이 주로 폴란드의 역내 세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보적 요인을 안고 있다. 안보와 연계하여 발전과 원조를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주변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표 III-14 폴란드 인권-평화-발전에 대한 도전과 과제

인권 과제	평화 과제	발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와 사회윤리요소에 대한 사회적 긴장 - UN, EU와 관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과 시민사회의 대립 - 주변국 전쟁과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 해결의 속도 - 주변국들에 대한 조건적 원조 (안보와 영향력 고려) - 전쟁난민 수용과 복지 문제

출처: 저자 작성

라. 요약과 함의

(1) 요약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효과는 인권과 평화, 발전의 선순환이다. 이행기 정의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강화는 인권의 신장과 성숙을 가져왔다. 정당정치의 다원화와 사회적 타협의 문화 정착은 평화의 구축과 증진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설정과 실현 과정은 환경 분야를 포함한 발전의 제 분야에서 인간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게 했다. 결국 인권의 신장과 성숙은 평화의 구축과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발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폴란드의 인권, 평화, 발전의 순환은 상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성을 가진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성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서 체제전환과 이행기 정의 실현, 경제개혁과 헌법 개정이 초기 사회적 토대를 만들었고, WTO와 OECD, EU 가입과 같은 국제화의 심화는 체제전환 뒤 폴란드 사회의 중반기를 형성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성장목표 설정과 에너지 전략 수립은 성숙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며 발전의 지속과 평화의 다양성, 인권의 투명성 제고에 힘을 더하여 주었다.

한편, 투명성과 다양성, 지속성에 대한 도전 역시 존재한다. 사회윤리권의 다원화는 인권의 범위 설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민사회의 확대와 외부적 전쟁 상황은 평화에 대한 도전 요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도전 요소와 맞물려 세계적 자원안보의 위협 역시 환경문제와 식량문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이는 발전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폴란드의 투명성과 다양성, 지속성의 원칙은 국가적 아젠다로서

가능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한반도의 미래에도 시사점을 준다. 폴란드의 체제전환 이전에도 폴란드 정부는 국제화를 통한 개방성을 시도하였고, 폴란드 인민은 사회저항 운동을 통한 자발성을 보였다. 북한 체제의 국제화와 북한 인민의 민주에 대한 자발성은 외부적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국제화와 자발성 촉진이 입장에 따라 상충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 기술, 민주정치의 다양성 존중, 환경과 인간 복지를 생각하는 발전은 인권과 평화, 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고, 이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요한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민족성을 넘어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상생번영의 가치를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정립,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한반도에 주는 함의

폴란드의 체제전환 사례를 연구할 때, 북한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역사적 배경에서의 차이이다. 스탈린 사후 폴란드는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벌였고, 데탕트의 시기에도 서방과 협력을 진행하였다. 물론 북한 역시 미국, 일본과 수교 노력을 벌인 경우가 있지만, 실현 여부에서는 폴란드와 차이가 있다. 폴란드는 1967년 GATT에 가입하고, 1973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특히 1970년에는 서독과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헬싱키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유럽의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즉, 개방성을 보이며 국제화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폴란드의 체제전환 원동력에는 자발성의 특징이 있다. 노동계와 학계, 종교계가 함께 사회저항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쳤기 때문

이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출은 종교계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의 교회는 내적 이주(inner emigr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운동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하늘나라로 이주한 영혼은 육체 역시 하늘나라 이주민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듯이, 자유세계로 사상적으로 이주한 인민들은 그 현실 역시 자유세계를 살아가며 세속적 세력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인권운동을 독려하는 요소가 되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개방성을 통한 국제화, 자발성을 통한 사회 저항운동의 경험을 지녔다. 따라서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 발전에서 중요한 예비 요소가 있다면, 북한의 국제화와 자유에 대한 자발적 열망이다. 또한 폴란드가 서독과 수교한 것을 계기로 서방에 대한 개방성을 보인 것처럼 북한 또한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적 상황이 있다면, 한반도에서 역사의 객관적 서술이 함께 이루어지고,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체제전환 수준의 변화 후, 역사의 객관화는 이행기 정의에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민주정치의 다양성은 사회적 대타협과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인과 사회의 복지과 안녕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북한 사회에 대한 연속성과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북한의 역사를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다. 북한 역사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인식이 통일 뒤 한반도 역사의 연속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성을 통한 통일 열망이 사그라지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 철학으로서 공동체성을 정립하고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동의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콜롬비아 분쟁(또는 분쟁)에 기인한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과 관계한다. 2016년 8월 25일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EP)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은 인권정책에 근간을 둔다. 평화협정은 폭력의 시대(1947-1960)와 분쟁(1964-2016)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을 종식하고 평화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하지만 70년 이상 지속된 고질적인 폭력의 문화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회지도자, 인권운동가들이 무장단체에 의해 테러, 살인, 구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계속되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2022년 6월 최초의 좌파 출신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가 당선되었다. 페트로 정부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23년 7월 기존의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게릴라 잔존 세력들과 양자 간 평화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111/}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콜롬비아 평화는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인권-평화-발전의 트라이앵글을 분석할 때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콜롬비아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분쟁과 평화협정의 담보 상황이 갖는 함의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쟁 중인 국가의 인권정책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절은 콜롬비아 평화협정에서 제안된 인권정책과 특징을 분석하여 그 이행과정에 나타나는 평화와 발전에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111/ “FARC Dissidents and Colombian Government Reach Agreement to Begin Peace Talks,” *Reuters*, July 9, 2023,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farc-dissidents-colombian-government-reach-agreement-begin-peace-talks-2023-07-09/>> (Accessed November 9, 2023).

위해서 2016년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전후의 콜롬비아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다루어 인권-평화-발전의 복합효과를 논한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적극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콜롬비아 분쟁의 배경과 전개

콜롬비아 분쟁은 1964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평화협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종식된 유혈갈등을 뜻한다. 분쟁의 주요 행위자는 콜롬비아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우파 게릴라 집단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좌파 게릴라 집단들이다. 분쟁의 행위자들이 출현하게 된 20세기 콜롬비아 역사는 자유당(Partido Liberal)과 보수당(Partido Conservador)이 구성하는 양당체제와 국민전선(Frente Nacional)의 출현, 그리고 폭력의 시대(1947-1960)로 요약할 수 있다. 폭력의 시대는 약 30만 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국민전선 체제의 실패와 1960년대 무장 게릴라 세력들의 등장, 그리고 1980년대 출현한 우익민병대는 콜롬비아의 20세기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112/} 설상가상으로 2000년에 미국의 지원으로 실시된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는 기존의 분쟁과 폭력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요컨대, 콜롬비아 분쟁은 정치, 경제 양측면의 실패와 일상적 폭력이 낳은 장기적 유혈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113/}

112/ 김달관, “19세기 콜롬비아의 정당체제와 정치문화,” 『중남미연구』, 제30권 2호 (2011), p. 130.

113/ Peter Waldmann, “Is There a Culture of Violence in Colombia?”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9, no. 4 (2007), pp. 593~609.

(1) 분쟁 이전의 역사

20세기 콜롬비아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당체제는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탈식민과정에서 나타난 반스페인과 친스페인 계열의 분열은 각각 자유당(1848)과 보수당(1849)을 구성했고 일정 기간 이행기의 콜롬비아를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양당체제를 형성했으나, 머지않아 두 정당 사이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지역주의와 분파주의는 엄청난 유혈갈등을 촉발했다.^{114/} 두 당 사이의 대립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 발생한 폭력의 시기(*la Violencia*)로 발전됐고,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115/}

이 시기에 발생한 폭력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먼저, 1929년 경제대공황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개혁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했고,^{116/} 이에 따라 자유당이 1930년 선거를 통해 콜롬비아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유당 초기를 집권한 올라야 에레라(Olaya Herrera)와 알폰소 로페즈(Alfonso López) 정권은 수입대체산업화, 노동법, 세제개혁, 토지법을 실행함으로써 적잖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후 산토스(Eduardo Santos)와 2차 로페즈 정권은 다시 사회적 불안을 가져와 결국 자유당 내분을 막을 수 없었다. 또한 16년 동안의 자유당 정권은 보수당에 대한 폭력과 구조적 억압을 자행하여 두 당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자유당의 양분은 결국 1946년 보수당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했다.

114/ 김달관, “19세기 콜롬비아의 정당체제와 정치문화,” p. 138.

115/ Norman A. Bailey, “La Violencia in Colombi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vol. 9, no. 4, (1967). pp. 561~575.

116/ 조성권, “콜로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양당주의, 후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14권 (1995), p. 54.

1946년 보수당의 정권 장악은 자유당에 대한 보수당의 보복적 정치로 발전했다. 양당의 적대관계는 노골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당 내 민중지도자로 추앙받던 가이탄(Jorge Eliécer Gaitán)이 1948년 보고타에서 암살당하자, 보고타와 칼리 두 도시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났다.^{117/} 보고타에서 일어난 폭동은 보고파조(bogotazo)라고 불리며 민중들과 게릴라 그룹이 주축이 되어 발생했다. 이후 폭력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로하스 피니아(Rojas Pinilla)의 재임기간인 1953년과 1955년에 이르는 시기에 폭력은 정치적인 단위에서 경제적인 단위로 전이됐다.^{118/} 이 시기에 조직된 게릴라 그룹들과 갱단들은 스스로 소비에트 공화주의자(soviet republicans)임을 자칭하면서 부유한 도시에서 농작물과 부동산, 커피 산업 등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소비에트 공화주의자들과 갱단들은 공산주의 그룹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사회화는 냉전시기의 사회권과 자유권의 치열한 경쟁과 맞물려 그 강도를 더했다.^{119/} 그리고 점차 당파적 투쟁에서 범죄적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 바뀌었으며 정치엘리트에 대한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했다.^{120/} 그리하여 냉전 시기와 맞물린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갈등과 농촌지역에서 활동한 게릴라들의 투쟁은 일반 대중의식과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121/}

10년 동안 지속된 폭력과 피니아에 대한 대중의 지지, 그리고 그의 독재 가능성을 우려한 자유당과 보수당 엘리트들은 1957년 피니

117/ Norman A. Bailey, "La Violencia in Colombia," p. 567.

118/ *Ibid.*, p. 570.

119/ Frank Safford and Palacios Marco, *Colombia: Fragmented Land, Divided Socie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345.

120/ 조성권, "콜롬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p. 62.

121/ Frank Safford and Palacios Marco, *Colombia: Fragmented Land, Divided Society*, p. 345.

야의 재선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피니아는 1957년 자신의 권력을 군사평의회에 이양했다. 그리고 양당은 1958년 시트헤스(Sitges) 협정을 통해 국민전선이라는 통합 체제를 구축했다. 1957년 군사평의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전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고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의 균등한 권력 분배와 대통령의 교대제에 합의했다.^{122/} 이것은 선거 없이 정권을 균등하게 교체하는 방식을 뜻했다.

국민전선 체제에서 네 명의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통치했고 대통령 교대제에 따라 두 명의 자유당 출신의 대통령과 두 명의 보수당 출신의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했다. 국민전선 1차 정부를 이끈 알베르토 예라스 까마르고(Alberto Lleras Camargo, 1958-1962)는 가장 먼저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지역과 도시지역에서의 반발, 그리고 쿠바혁명에 영향을 받은 무장집단과 농민운동의 출현이었다.^{12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지개혁법(1961)을 제정했으나 지주들의 반대와 시행의 지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에 봉착했다.^{124/} 보수당의 기예르모 레온 발렌시아(Guillermo León Valencia, 1962-1966) 대통령은 농촌지역에서 부상하는 반정부 게릴라 단체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실시했다. 이 시기에 출현한 단체들이 무장혁명군(FARC), 자유민중군(EPL), 해방대중군(EPC), 공산당무장반동(ML), 민족해방군(ENL) 등이다. 이 밖에도 지식인들 중심으로 결성된 M-19과 농촌학생운동인 MOEC가 출현했다. 이후, 카를로스 에라스 빠스뜨라나(Carlos Lleras Restrepo, 1966-1970) 대통령과 미사일 빠스

122/ 강석영, “콜롬비아 역사,” 『중남미연구』, 제5권 (1989), p. 61.

123/ Frank Safford and Palacios Marco, *Colombia: Fragmented Land, Divided Society*, p. 327.

124/ 강석영, “콜롬비아 역사,” p. 62.

트라나 보레로(Misael Pastrana Borrero, 1970-1974) 대통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장단체들에 대한 진압정책을 유지했고 지연된 농지개혁을 촉진하는 정책을 폈다.

국민전선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으나 사회 개혁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이 체제를 구성했던 양당은 전통적으로 콜롬비아를 통치해 온 자유당과 보수당으로서 콜롬비아 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했다.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거대 정당들의 연합이 다른 한편으로 비민주주의 체제를 생산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참여도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전선은 정치적 엘리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독점적 장치로 변질되었다. 둘째, 무장단체들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제난의 지속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중들의 불만을 촉발했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무장단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국민전선 농지개혁의 지연은 무장단체들의 출현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 단체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했다. 이 시기 갈등은 향후 콜롬비아 분쟁의 촉매제가 되어 2016년 FARC와 정부 사이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고 사회적 저발전과 인권유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콜롬비아 분쟁

콜롬비아 분쟁은 1964년부터 출현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uerza Armadas Revolucionario de Colombia: FARC) 등의 무장단체들과 정부 그리고 우익민병대 사이의 유혈갈등을 뜻한다. 이 분쟁은 2016년 평화협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일단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소요 사태들이 콜롬비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무장단체들 중에서 FARC, ENL, M-19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민족해방군(ENL)은 1960년대 초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M-19은 민족동맹(ANOPO)을 이끌고 있던 로하스 피냐야가 1970년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형성된 단체다. M-19은 학생들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인사들을 인질로 잡는 등의 게릴라 활동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FARC는 1964년에 출현하여 2016년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항한 콜롬비아 최대 무장단체다.^{125/} 1930-40년대에 있었던 토지소유권과 농업정책의 실패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반정부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왔다.^{126/} 1990년대 초반에는 약 2만 명의 무장단원들을 보유하기도 했다. 2016년 평화협정 이후부터는 단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콜롬비아 분쟁은 그 형태와 행위자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 시기의 분쟁이 정부와 무장단체와의 갈등이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이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마약 문제를 둘러싼 콜롬비아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불법 무장단체들의 갈등으로 변화했다. 대대적인 마약퇴치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지원한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이며 사실상 마약 카르텔을 후원하고 있다는 FARC 소탕작전이었다. 그러나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내 마약 생산량을 줄이거나 카르텔을 제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무력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 현재에도 콜롬비아 내 마약 퇴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재배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다.

^{125/} Michael J. LaRose and Mejía Germán R. LaRosa, *Colombia: A Concise Contemporary Hist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7), p. 96

^{126/} *Ibid.*, p. 97.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1986년에 ‘마약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남미 국가들에 관여함으로써 일방적인 마약퇴치 운동을 벌였다.^{127/} 이후 부시 행정부도 1989년부터 콜롬비아에 6,5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마약을 퇴치하고자 했다.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 면적(hectares)은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푸투마요 까께따(Putumayo-Cauetá), 오리노코(Orinoco), 센뜨랄(Central)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정글과 농촌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었다.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의 마약퇴치 정책의 공통점은 마약 생산과 밀매 단체들을 공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거한다는 것이었다.^{128/} 문제는 마약 소탕 계획을 게릴라 소탕 작전과 동일시함으로써 마약 카르텔 조직들뿐만 아니라 FARC까지 마약게릴라로 취급하여 함께 소탕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사실, FARC와 ENL과 같은 무장 혁명단체들은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코카를 지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경제 카르텔을 유지했다. 특히 탈냉전 이후 좌익세력의 약화로 인해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마약 밀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정책은 콜롬비아 분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129/}

이전의 마약퇴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급기야 ‘플랜 콜롬비아’를 계획했다. 미국은 더 이상 콜롬비아 정부가 마약 게릴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원조를 13억 달러로 확대했다. 이 시기 콜롬비아는 이미

127/ 이성형,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라틴 아메리카연구』, 제15권 4호 (2005), p. 160.

128/ 위의 글, p. 162.

129/ 위의 글.

오랜 분쟁의 여파로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안드레스 파스트라나(Andrés Pastrana)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마살플렌과 같은 종합적인 처방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75억 달러의 원조를 요청했다.^{130/} 이후 미국과 콜롬비아는 ‘마약퇴치 동맹’을 맺고 콜롬비아 민주주의와 국가보호를 필두로 하여 플렌 콜롬비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두 가지 면에서 완전한 실패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마약 생산이 줄어들지 않았다. 플렌 콜롬비아는 마약 근절을 위해 제초제를 살포했다. 일시적으로 마약 생산을 위한 코카인 농장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표 III-1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역 농민들은 콜롬비아 주변 국가들인 볼리비아나 페루 등지로 옮겨 다시 재배를 이어갔다. 또한 제초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야기되어서 주변국가와의 새로운 분쟁도 촉발했다. 더불어, 농장의 변화에 따른 강제 이주자와 난민들이 발생하고 무장투쟁과 인권유린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131/}

표 III-15 안데스 지역 코카인 재배(1995-2005)

(단위: 헥타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볼리비아	48,600	48,100	45,800	38,000	21,800	14,600	19,900	21,600	23,600	27,700	25,400
페루	115,300	94,400	68,800	51,000	38,700	43,400	46,200	46,700	44,200	50,300	48,200
콜롬비아	50,900	67,200	79,400	101,800	160,100	163,300	144,800	102,000	86,000	80,000	86,600
전체	214,800	209,700	194,000	190,800	220,600	221,300	210,900	170,300	153,800	158,000	159,600

출처: UNODC, *Coca Cultivation in the Andean Region: A Survey of Bolivia, Colombia, and Peru*, June 2006, p. 116, <https://www.unodc.org/pdf/andean/Andean_full_report.pdf> (Accessed November 14, 2023).

^{130/} 위의 글, p. 164.

^{131/} UNODC, *Coca Cultivation in the Andean Region: A Survey of Bolivia, Colombia, and Peru*, June 2006, p. 141, <https://www.unodc.org/pdf/andean/Andean_full_report.pdf> (Accessed November 14, 2023).

둘째, 기존의 무력분쟁의 횡수가 더 잦아졌다. 플랜 콜롬비아는 무장단체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농촌지역의 경제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를 받은 콜롬비아 군부는 봉기진압의 형태로 이들을 제거하여 나갔다. 2002년 등장한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대통령은 좌익반군에 대한 강경책의 일환으로 국가안보정책을 채택하고 2002년부터 2010년 동안 반군단체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게릴라 소탕작전을 실시했다. 미국의 개입과 우리베 정권의 강경책은 FARC에게 전쟁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FARC는 미국의 원조와 우리베의 강경책에 맞선 무력투쟁을 전개했다. 가령, 국가 시설물이나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일상범죄를 일삼음으로써 군부와 미국 정부에 저항했다.^{132/} 또한, 강경책을 피해 주변 국가로 피신한 반군들이 주변국에서 콜롬비아 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여 그 여파가 주변국에게 고스란히 옮겨갔다. 요컨대,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무력분쟁을 장기화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결국, 미국의 개입은 콜롬비아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게릴라 그룹의 제거를 옹호하고 촉진함으로써 분쟁의 강도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퇴치를 위한 방법 측면에서도 콜롬비아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의 환경문제 및 국경문제로 마찰을 빚게 했다.

(3) 분쟁의 심화

콜롬비아 분쟁은 우리베 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을 기점으로 최악에 달했다. 1990년 이후 분쟁은 지방의 자위권 행사에서 조직된 민병대와 우익 콜롬비아연합자위군(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132/} 이성형,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p. 166.

AUC)의 출현으로 인해 일상적이고 고질적으로 변모했다.^{133/} 반군 단체들이 일상범죄를 일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병대들과 AUC는 좌익반군 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권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 이로써 콜롬비아 사회의 안보와 인권은 매우 악화했다.

2002년 당선된 우리베 대통령은 재선하여 2010년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동안 마약퇴치와 게릴라 소탕작전을 펴는 국가안보정책을 실시했다. 게릴라 소탕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활용하여 병력을 증강했다. 여기에 더해 민병대와 AUC의 병력까지 동원했다. 우리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운용하고자 했다.^{134/}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좌파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납치와 범죄들을 줄이고 무장해제를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동원된 민병대 단체들과 AUC의 민간인 학살이 무차별한 수준에 이르고 정권과 민병대 사이의 카르텔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자 곧바로 AUC와의 공식적 관계를 단절하고 회유하여 콜롬비아 군대에 편입시켰다.^{135/}

국가안보정책은 두 가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콜롬비아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 심화다. 플랜 콜롬비아와 국가안보정책이 실시한 게릴라 소탕작전으로 인해 상당수의 반군단체들이 그들의 근거 지역에서 쫓겨나 주변 국가로 이동하여 무기와 마약을 밀매했다. 특히,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서 FARC와 AUC 사이의 무력분쟁은 해당 국가들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납치와 고문행위로 인해 외교관계가 손상되기도 했다.^{136/} 그리

133/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 13권 2호 (2009), p. 426.

134/ 위의 글, p. 431.

135/ 위의 글, p. 427.

하여 콜롬비아 분쟁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국경지역이 군사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표 III-16 주요 지역별 무력분쟁 현황(2005-2006)

주 명칭	무력충돌 발생율%			일일평균율%	
	2005	2006	변화율%	2005	2006
안띠오끼아(Antioquia)	405	437	8	1.11	1.20
메타(Meta)	135	252	87	0.37	0.69
까께타(Caquetá)	110	125	14	0.30	0.34
톨리마(Tolima)	74	121	64	0.02	0.33
까사나레(Casanare)	77	91	18	0.21	0.25
나리뇨(Nariño)	47	91	94	0.13	0.25
뿌뚜마요(Putumayo)	58	88	52	0.16	0.24
볼리바르(Bolívar)	79	87	10	0.22	0.24
노르데산탄데르(Norte Santander)	71	85	20	0.19	0.23
과히라(Guajira)	39	85	118	0.11	0.23
우일라(Huila)	27	70	159	0.07	0.19

출처: Alfredo Rangel, *Informe Especial: Criminalidad y Victimización Urbana en Colombia* (Bogotá: Fundación Seguridad y Democracia, 2006), p. 28, 재인용: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2009), p. 436.

둘째, 우익 민병대의 재무장이다. 2002년부터 출현한 우익무장조직들은 좌익단체들의 근거지를 공격하여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좌파 지식인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네 정부의 회유정책과 무장해제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이 단체들은 재무장을 하거나 신생 무장단체로 재조직되어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신생 무장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통제하고 마약거래와 범죄를 일삼았다.^{137/}

136/ 위의 글, p. 432.

137/ 위의 글, p. 441.

표 Ⅲ-17 정부군과 불법무장단체의 무력충돌 발생건수(2006-2007)

주 명칭	무력충돌발생건수			일일평균 사건발생율	
	2006	2007	변화율%	2006	2007
FARC vs. 정부군	463	340	-27	5,144	3,78
ELN vs. 정부군	85	60	-29	0,944	0,67
Autodefensa vs. 정부군	7	4	-43	0,078	0,04
기타	50	139	178	0,556	1,54
전체	605	543	-10	6,722	6,03

출처: Octavo Informe Trimestral del Secretario General al Consejo, "Permanente sobre la misión de Apoyo al Proceso de Paz en Colombia," (<http://www.mapp-oea.org>) (Accessed November 14, 2023), 재인용: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p. 439.

이 밖에도 불법무장단체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민간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콜롬비아를 떠나 주변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또한 마약 농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려진 제초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안보정책의 실효성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심했다. 우리베 정권 내내 무력분쟁으로 인한 국내문제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는 복합적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후, 무력충돌은 지속되고 급기야 2012년부터 평화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4) 산토스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1964년부터 시작된 분쟁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평화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2010년 당선된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무장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 사실 산토스 재임 전, 콜롬비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은 세 차례의 실패를 경험했다. 먼저, 베탄쿠르(Belisario Betancur) 대통령은 1984년 FARC와 '우리베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무장세력

의 게릴라 작전이 지속됨으로써 평화협정은 파기되었다. 두 번째 시도는 세사르 가비리아(Cesar Gaviria) 대통령 재임 시기 1991년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FARC, ENL, EPL 등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EPL이 정계 인물을 납치하고 구금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평화협상은 그대로 중단되었다.^{138/} 마지막으로, 파스트라나(Andés Pastrana) 대통령은 1999년 10월부터 3년 동안 FACR와의 협상을 시도했다. 특히, FARC의 근거지역인 메타(Meta)와 까께따(Caquetá)주 지역의 5개 자치구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공권력을 철수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139/} 이 협상은 부침을 반복하다 FARC의 게릴라 작전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전의 평화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산토스 대통령은 다시 2012년부터 주요 반군단체들과 평화협상을 시도했다. 이 협상은 4년여 가량 부침을 반복하다 마침내 2016년 8월 25일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체결되었다. 이 평화협정은 1964년부터 시작된 분쟁의 종식을 의미했으며, 1984년부터 시도된 평화협상의 결과이기도 했다. 평화협정안은 정부 측 움베르토 델 라 카이예와 무장혁명군 대표 이반 마르케스가 서명하고 쿠바, 베네수엘라, 칠레, 노르웨이가 중재했다. 평화협정의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무장충돌들은 협상 대화를 중지시키기도 했지만, 마침내 두 대표는 중남미 정상들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297페이지 분량의 평화합의문에 서명했다. 산토스 대통령과 FARC의 수장 로드리고 론도뇨는 이 협정안을 크게 환영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인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평화협정 인준은 10월 2일 시행된 투표 결과(찬성 49.8%, 반대 50.2%)에 따라 부결되었다. 예상치 못한 투표 결과에 당황한 정부와 FARC는 재협상에 나섰

138/ 추종연, “콜롬비아의 평화협상과 평화정착 주요과제,”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제15권 2호 (2013), p. 309.

139/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p. 426.

고 내전 피해자 보상, FARC의 마약거래 처벌, 특별평화재판소 운영 등을 추가로 담은 평화협정 개정안(Final Agreement to End the Armed Conflict and Build a Stable and Last Peace)을 11월 24일 다시 발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의 인준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5) 페트로 정부의 총체적 평화

평화협정의 인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달았다.^{140/} 설상가상으로 2018년 산토스를 밀어내고 대통령에 오른 이반 두께(Iván Duque)는 반군 게릴라 집단들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협정 문서에서 명시된 피해자들의 보상 내용도 수정했다. 두께는 우리베주의(Uribismo)를 따르는 보수 우파 대통령으로서 게릴라 집단들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세습주의, 코포라티즘 및 후견주의와 같은 비민주적 관행과 부패주의를 체계화했다^{141/}. 결국, 무장혁명군의 잔존세력과 최후 게릴라 집단인 ENL은 두께의 강경책에 저항하면서 무장투쟁과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시작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정과 인권의 후퇴 등은 바로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다.

평화협상은 2022년 5월 M-19 소속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페트로는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으로서 콜롬비아 특유의 보수적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140/ Nicolas Liendo and Jessica Maves Braithwaite, "Determinants of Colombian attitudes towards the peace proces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5, no. 6 (2018), pp. 1~15.

141/ 차경미, "콜롬비아 페트로(Gustavo Petro) 좌파정권의 등장배경." 『국제지역연구』, 제27권 2호 (2023), pp. 187~188.

정권을 장악했다. 페트로의 당선은 콜롬비아가 지난 20년간 우리베-산토스-두께로 이어진 우리베주의(Uribismo)를 종결하고 패권적 양당 헤게모니의 막을 내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142/} 최근에 나타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입장 변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 역내 국가들과의 고립적 대외관계 등이 오히려 좌파정권에 힘을 실어주었다.^{143/}

한편, 두께 정부에서 지연된 평화협정의 이행을 준수하고 다면적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페트로는 총체적 평화(Total Peace)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총체적 평화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콜롬비아 안보전략 개선을 위한 불법적 그룹들과의 대화’로서 산토스 정부의 평화협상 전략을 계승하여 2016년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게릴라 그룹들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144/} 이 정책은 대화와 회유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법 그룹들의 무장해제와 해체를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의한 피해와 인권유린 등을 중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농촌 개혁, ENL과의 평화적 대화, 무장단체들의 해체와 형량 조정, 국가적 합의 모색, 평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145/} 이 정책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정부는 6개의 단체와의 6개월 동안의 휴전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7월 2016년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FARC 반체제 잔존 세력들과 양자 간 평화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142/ 위의 글, p. 193.

143/ 위의 글, pp. 193~194.

144/ International Crisis Group, “Protecting Colombia’s Most Vulnerable on the Road to ‘Total Peace’,” *Latin America Report*, no. 98 (2023), p. 1.

145/ Sebastian Guerra and Steve Hege, “Colombia’s New Administration Raises Hopes for ‘Total Peace,’” *USIP*, July 12, 2022,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2/07/colombias-new-administration-raises-hopes-to-total-peace>> (Accessed June 18, 2023).

나. 콜롬비아 인권정책의 전개와 특징

본 절은 콜롬비아 인권정책과 이행 과정, 그리고 현재의 인권 현황을 개괄한다. 콜롬비아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6년 평화협정문에 명시된 사항과 그 이행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듯, 평화협정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이반 두케 행정부 시절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고, 폭력과 범죄가 다시 콜롬비아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화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게릴라 그룹들은 계속 범죄에 가담하여 농촌지역을 장악하고 테러활동이나 살인, 구금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사회지도자들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146/}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 사회적 저발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147/}

평화협정은 6개의 조항과 각각의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항은 농촌 개혁, 민주적 정치 참여, 분쟁 종식, 불법마약 해결, 분쟁 피해자를 위한 조치, 그리고 협정의 실행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 평화협정 세부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8 콜롬비아 평화협정의 주요내용

조	제 목	내 용
1조	새로운 콜롬비아 농촌지역을 향하여 포괄적 농촌 개혁	1장: 토지접근과 사용 2장: 국가 계획 3장: 농촌인구 식량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특별체계 4장: 지리 기반 발전 프로그램

^{146/} Adriaan Alsema, “Deadly Violence against Colombia’s Social Leaders Persists,” *Colombia Reports*, June 2, 2023, <<https://colombiareports.com/deadly-violence-against-colombias-social-leaders-persists/>> (Accessed June 10, 2023)

^{147/} UNHRC,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A/HRC/49/19 (2021).

조	제 목	내 용
2조	정치적 참여: 평화구축을 위한 민주적 기획	1장: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보장 2장: 정치활동을 위한 안보 보장 3장: 시민참여를 위한 민주적 장치 4장: 정치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 장치
3조	분쟁종식	양자의 최종적 정전 합의(CFHBD) 및 적대종식과 무장해제(DA) 1장: 개요 2장: CFHBD와 DA를 통제하는 규칙 3장: 감시체계 4장: 현장배치 5장: 안보 6장: 실행계획 7장: 무장해제 전직 무장혁명군 전투원의 지역사회 재편입 1장: 정치적 재편입 2장: 경제적, 사회적 재편입 범죄조직과의 싸움과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 1장: 안전보장 국가위원회 2장: 특별사법경찰 3장: 국가경찰 정예부대 4장: 정치를 위한 포괄적 안보시스템 5장: 커뮤니티와 기구들을 위한 포괄적 안보 및 보호 프로그램 6장: 범죄조직 예방과 감시 7장: 민간경비와 감시서비스의 영역 사찰과 감독을 위한 국 가적 체계 8장: 부패와의 전쟁 및 예방체계
4조	불법마약문제 해결	1장: 불법 농작물에 대한 해결책 2장: 불법마약사용 3장: 마약의 생산과 상업화에 대한 해결책
5조	분쟁피해자에 관한 합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 1장: 포괄적 시스템에 관하여 2장: 시스템 체계에 관하여(진실, 공존, 재발방지 위원회; 행불 자 특별위원회; 평화관할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인권증진, 존중, 보장)
6조	협정의 이행과 입증방식	1장: 이행과 감시 위원회 2장: 프레임워크 계획 3장: 국토자원에 관한 합의의 통합 대책 4장: 기타

출처: 저자 번역

(1) 평화협정 인권 조항의 내용과 특징

콜롬비아 평화협정문은 1조에서 5조까지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협정문에서 발견되는 인권정책은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그리고 발전권을 고루 다루고 있어 그 특징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ICCPR)에 대한 규약들은 주로 2조와 3조에 나타난다. ‘정치적 참여’에 관한 조항은 정치적 반대외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보장, 정치적 활동을 위한 안전 보장,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민주적인 장치, 그리고 정치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장치로 요약된다. 특히 2조 3항은 분쟁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사회운동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시민적 자유, 4항은 정치적 경합, 선거 참여와 투명성, 선거기구의 개혁, 민주적 정치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특별선거구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 제도 확산을 중심으로 자유권 규약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회복은 콜롬비아 분쟁 이전 시기였던 국민전선 체제로부터 답습된 고질적인 문제였다. 주지하듯, 이 체제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고수하고 다른 군소 정당들의 권력을 제한했으며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 제한하였다.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 국민전선의 구조적 체제가 분쟁 시기에 이르러 반정부 인사들과 그룹들을 탄압했다. 냉전시기에 극단화한 반공주의는 이념의 일원화를 낳았고 결국 시민들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평화협정문 2조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의견의 다원성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억압되었던 사회운동과 집회 및 시위를 촉진하고자 했다.

둘째, 협정문 3조는 분쟁 종식의 형태에 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무장혁명군 전투원의 재통합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

통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이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종합적으로 증진하여 지역단위 수준의 사회통합과 화해,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통합은 전투원들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며, 특히 평화 프로세스 기간에 전투원 캠프를 떠나거나 비무장을 자명한 전투원들은 특별조치와 피해자 법(Victim's Law)에 따른 이익들을 누릴 것을 명시했다. 이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리는 보장되며,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일회성 재정지원을 받거나 2년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월급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통합, 정신치료, 교육 등의 복지 혜택도 누리게 했다. 3조는 더 나아가 인권운동가, 사회운동, 또는 정치적 운동에 대한 어떠한 범죄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인권보호와 감시를 위해 특별감사반이나 안보보장위원회 등의 기구들을 설치하도록 했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ICESCR)에 관한 규약들은 1, 3, 5조에 두루 나타나 있다. 1조는 농촌개혁 및 토지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이를 위해 먼저 국가 단위의 토지펀드(Land Fund) 설립을 명시한다. 콜롬비아 토지문제는 커피산업을 둘러싼 대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대립으로서 불법무장단체들의 출현과 직결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카카오와 면직물을 담당하던 대지주들이 커피산업으로 전환하여 자본주의 기업가로 성장하면서 소작농들의 토지소유권을 강탈했다.^{148/} 소작농들은 소작쟁의 투쟁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대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의 갈등이 1920년대에 걸쳐 무력갈등으로 비화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정치적 투쟁으로

148/ 차경미,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폭력과 평화: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을 통해 고찰한 불법무장조직 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 38호 (2017), p. 7.

변화됐다.^{149/}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공산세력들은 소작농들의 농민 운동을 이끌었고 자유당의 급진적 사상을 배태했다. 국민전선 체제 하에서도 농민들의 불만과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농지 개혁이 지연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좌파적 무장투쟁단체들이 결성된 것이다. 따라서 토지분배와 사용권은 콜롬비아 분쟁의 핵심으로서 공정한 분배와 소유권을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저발전과 빈곤, 환경파괴 문제는 분쟁이 악화되면서 더 심각해졌다. 합의문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계획(National Plan)을 수립해 빈곤의 50%를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발전, 즉 보건, 교육, 주거환경, 식수개선 등의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5조는 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다. 분쟁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권리(Victims' Rights)로서 여기에는 진실을 알 권리, 형사적 처벌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사회적 공존과 화해,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피해자들은 2조에서 명시된 포괄적 안보시스템(Comprehensive Security System)의 전 과정과 가해자들의 법적 처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실, 공존, 재발방지 위원회(Truth, Coexistence and Non-Repitition Commission: CEV)', 행불자를 위한 특별조사팀, 평화특별재판관(JEP)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더 나아가 분쟁으로 인한 재산과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토지 보상, 트라우마 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149/} 위의 글.

이와 같이, 콜롬비아 평화협정문은 콜롬비아 전후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담아 분쟁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집단과 개인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로써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그리고 화해로 이행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 여기에서 인권은 이행의 핵심과제로 여겨지며 자유권과 사회권 양측면을 고르게 포함함으로써 국제 인권레짐의 수준을 비교적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평화적 공존과 사회적 발전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150/}

(2) 인권정책의 이행

UN 인권이사회(UHRC)가 발표하는 국가별 보편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 이후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51/} 2008년과 2013년에 발행한 UPR의 권고사항들이 평화협정문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으며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52/} 반면, 2021년 발표된 UNHRC는 보고서는 최근의 콜롬비아 인권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153/} 특히, 농촌지역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사회지도자들과 인권활동가, 그리고 전투원들에 대한 납치 및 폭력 사태가 증가하며, 코로나19에 의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평화협정문에서 명시된 인권정책이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하도록 한다.

그동안 콜롬비아 인권정책의 이행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가 제출

^{150/} UNHRC,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Colombia (2018).

^{151/}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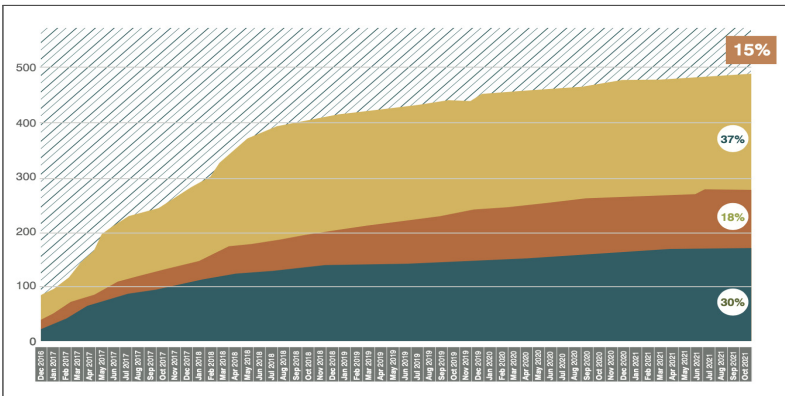
^{152/} *Ibid.*

^{153/} UNHRC,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A/HRC/49/19 (2021).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노터데임대학교 Kroc 재단과 노르웨이 PRIO 재단은 지난 7년간의 평화협정의 이행현황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Kroc 재단이 발표한 이행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화협정의 578개의 규정 중 30%(172개)만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18%(106개)는 중간 수준의 이행, 37%(211개)는 최소한의 이행, 그리고 15%(89개)는 이행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154/}

그림 III-6 평화협정문 578개 규정 이행률(2016.12.-2021.10.)

(청녹색: 완전이행, 황토색: 중간이행, 노란색: 최소이행)



출처: Peace Accords Matrix,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Five Years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olombi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Increase Implementation Levels, December 2016 – October 2021,” December 3, 2021,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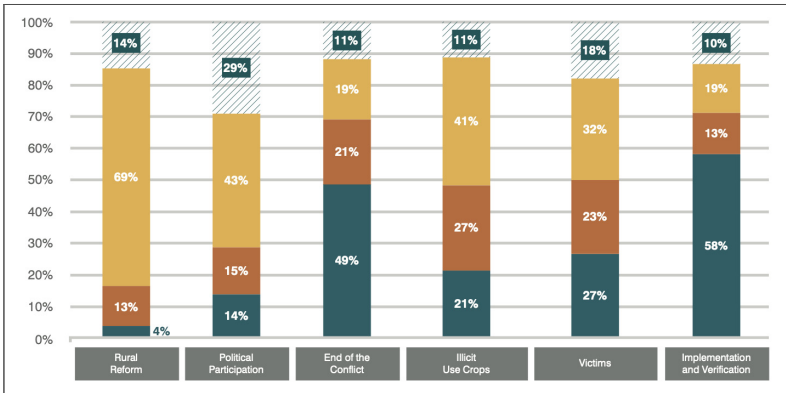
〈그림 III-6〉은 평화협정문 578개 규정에 대한 전체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이행률을 측정할 결과 완전이행, 중간이행, 최소이행, 이행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154/} Peace Accords Matrix and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Five Years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olombi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Increase Implementation Levels, December 2016 – October 2021,” December 3, 2021, <<https://curate.nd.edu/show/0c483j36025>> (Accessed November 14, 2023).

2021년 10월까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규정들만 완전이행되었으며 나머지 70% 중 18%는 중간이행, 37%는 최소이행, 그리고 15%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보아 평화협정의 이행률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더딘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부문별 이행률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 수준에도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II-7〉은 부문별 이행률을 보여준다. 이 표의 결과로 볼 때, 3조 분쟁종식과 6조 이행과 입증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은 성공적 이행을 나타내고 1조, 2조, 4조, 5조의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더딘 이행률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분쟁의 핵심인 농촌개혁 및 토지 분배를 다룬 1조는 거의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7 부문별 이행률(2016.12.-2021.10.)



출처: Peace Accords Matrix,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Five Years of Peace Agreement Implementation in Colombi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Increase Implementation Levels, December 2016 – October 2021,” December 3, 2021, p. 8

이를 보다 자세히 나열하면, 먼저 1조 포괄적 농촌 개혁은 그 이행의 수준에서 최소이행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이행의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2017년 법령 902가 제정되어 포괄적 농촌 개혁의 토대를 세

웠으며 2019년 세계은행과 미주발전은행의 지원을 받아 토지대장정책을 발표하여 토지 행정을 재정비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17년 법령 893을 제정하여 지리 기반 발전프로그램 가이드라인(PDETs)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분쟁에 영향을 받은 16개 지역의 1만 1천 공동체에 속한 20만 명의 콜롬비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동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국가 계획(National Plan)의 10개 규정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촌 개혁은 토지접근과 사용, 국가 계획, 영토기반 발전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현돼 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식량권 문제, 도농간 경제적 격차 등 이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2조 정치적 참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실행시킬 조항이지만 6개 조항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조항들이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평화협정문에서 명시한 임시평화특별선거구역(CTEPs)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CTEPs는 분쟁에서 피해를 보고 정치적 권리를 상실한 시민들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권, 환경권을 실현할 대표자들을 뽑아 그들을 국회의 의석에 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선거는 2022년 3월에 치러졌다. 또한, 2018년 제정된 1909 법을 기반으로 야당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켰다. 여기에는 군소정당과 여성들의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2.4항에 명시된 평화, 화해, 공존(CNPRC) 위원회를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해 왔다. CNPRC는 정부 인사들과 시민사회 간의 협의를 촉진하고 LGBTQ+ 정체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도 대변하고 있다.

3조에 명시된 인권정책은 전투원의 사회통합을 통해 그들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화해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통합위원회(CNR)를 세워 재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CNR과 코뮌 정당의 의원들은 안티오키아 옴도(Yondó)에 100개의 집단 생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절반 이상의 전투원들의 생계와 재활을 책임지고 있다.

5조가 명시한 인권정책은 분쟁 피해자들의 실질적 인권회복(진실·정의·배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 인권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상징적 위치에서 이해되며 포괄적 시스템이라는 사법적 프레임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는 평화특별재판관(JEP), 진실, 화해, 재발 방지 위원회(CEV), 행불자 특별위원회(UBPD)로 구체화하고 있다.

(3) 이행기 정의와 피해자 권리

콜롬비아 인권정책과 실태는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1장에서 주지하듯, 이행기 정의는 분쟁과 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진실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관의 개혁, 기억과 기록, 평화교육 등의 메커니즘으로 요약된다. 국제이행기정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는 콜롬비아 평화협정은 분쟁으로 와해된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경제적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155/} 이것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다층적인 권리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제를 수행하는 것이 인권 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며 이로써 콜롬비아의 평화와 사회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관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다시 말해, 평화협정의 본질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며 구제방안이고, 인권의 개선임을 뜻한다. 곧, 인권이 평화와 사회적 발전, 그리고 정의까지 앞당기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56/} 그도 그럴 것이 평화협정을 통해

^{155/} 국제이행기정의센터 공식홈페이지 내용 번역, <<https://www.ictj.org/location/colombia>> (검색일: 2023.9.10.).

정부와 FARC-EP는 분쟁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범위 등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며 진실, 배상, 안정, 화해, 그리고 재발방지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사회적 전환을 이루고자 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는 콜롬비아 평화협정이 보다 피해자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157/} 따라서 평화협정에 담긴 피해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권정책의 실효성과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진실,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은 네 개의 축, ① 진실, 공존, 재발방지 위원회(CEV), ② 행불자 특별위원회(UBPD), ③ 평화구축을 위한 포괄적 배상, ④ 재발방지로 구성된다.

첫째, CEV는 피해자를 위한 법 실현의 중심 매개체로 진실과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EV는 분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밝힘으로써 분쟁의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드러낸다. 둘째, CEV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주체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개인들과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셋째, CEV는 분쟁이 발생한 지역들에 평화적 해결책과 민주적 문화를 건설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평화협

156/ Fabio Andrés Díaz Pabón,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olombian Peace Process'," in Fabio Andrés Díaz Pabón ed.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Colombia: Transitioning from Violence* (New York: Routledge, 2018).

157/ Camila de Gamboa Tapias and Fabio Andrés Díaz Pabón, "The Transitional Justice Framework agreed between the Colombian Government and the FARC-EP," in Fabio Andrés Díaz Pabón ed.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Colombia: Transitioning from Violence* (New York: Routledge, 2018).

정 당사자인 정부와 FARC-EP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CEV를 통해 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와 평화, 화해에 기여할 것을 명시한다.

행불자특별위원회(UBPD)는 분쟁 피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방불명 또는 의문사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UBPD는 분쟁 기간 사라진 사람들과 사라졌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행불자 찾기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관리한다. 이 활동들은 정부의 여타 기관(법의학과 수사과학처, 진실위원회, 평화특별재판관)들과 함께 수행키로 한다.

평화구축을 위한 포괄적 배상은 분쟁의 피해에 대한 정부, FARC-EP, 그리고 여타 다른 게릴라 그룹들의 책임을 표명한다. 여기에서 배상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며 그 책임의 주체는 정부와 FARC-EP 모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재건설하는 포괄적 차원의 배상도 포함한다. FARC-EP는 평화협정 협상의 초기에 배상의 문제를 거부했다. 이들이 배상의 주체로 포함된 것은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는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뜻한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네 개의 피해자 조항들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수행되도록 합의되었다. 정의의 실현은 반드시 인권의 실현을 요청하며, 인권의 실현은 다시 평화와 사회적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 예를 들어, CEV는 그것이 명시한 여러 목적에 입각하여 3년 6개월의 기한 동안

28,604회의 개인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로 제출했다. 그러나 CEV의 짧은 권한기간과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서 많은 결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158/} 이행기 정의 자체에 대해 콜롬비아 내에 대중적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159/} CEV의 경우 이행기 정의를 구성하는 가치인 사법정의와 회복정의를 융합한 제3의 정의 모델을 추구하여 피해자 인권 회복과 사회적 변혁을 도모했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적이고 서구적 정의 관념으로 인해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에 대한 이질성이 드러나고 있다.

행불자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불자나 의문사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2023년 2월 당선된 위원장의 역할 강화가 피해자 중심의 알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평화재판관(JEP)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대한 회복적 정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의구현을 모색해왔다. 이를 통해 69명의 고위급 가해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범죄행위를 드러내고 566명의 사면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EP가 수행하는 사법적 과정에 피해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태다.

재발방지는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들의 무장해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2016년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게릴라 그룹들의 무장해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58/ Josefina Echavarría Álvarez et al, *Victims at the Center: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Final Accord from Victims' Perspectives, December 2016 to September 2022*, Executive Summary, <<https://curate.nd.edu/downloads/2v23vt1811s>> (Accessed November 15, 2023).

159/ Jamie Rebecca Rowen, "We Don't Believe in Transitional Justice: Peace and the Politics of Legal Ideas in Colombia," *Law and Social Inquiry*, vol. 42, no. 3 (2017), pp. 622~647.

다.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콜롬비아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그리고 이에 준하여 실행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인권정책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체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정책들이 본질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의 평화와 발전에의 효과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전망은 반드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실례로 평화협정 이후 콜롬비아 정부와 FARC-EP 사이의 직접적인 폭력이 줄어들어 인권과 사회발전, 평화가 동시에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내 새로운 폭력의 양상이 나타나고 전국에서 일상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제도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으로 분리하여 논의할 것이다.

표 III-19 콜롬비아 인권-평화-발전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전환점과 의미

시점	내용	의미
1964년	콜롬비아-FARC 분쟁 시작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형태 분쟁의 시작
2000년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	마약퇴치 정책과 유혈갈등의 증폭
2002-2010년	우리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	게릴라 소탕작전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 및 복합화
2012-2016년	평화협상 시작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 인권, 발전의 제도적 정착 계기 마련
2018년	이반 두케 대통령 취임	평화협정과 이행의 후퇴
2022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총체적 평화' 정책과 평화협상 재개
2022년	CEV 최종보고서와 JEP의 결의안	피해자 권리구제와 평화적 전환 계기 마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UN의 국가별 보편정례검토(UPR)의 세부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 발행된 콜롬비아 UPR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보고됐다. 2018년 보고서는

페트로 정부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신뢰성의 수준에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UPR은 콜롬비아 인권을 평화협정문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콜롬비아 분쟁 종식의 쟁점 중 하나는 인권의 회복과 증진이기 때문이다. UPR은 콜롬비아 인권을 위한 평가기준을 ① 평화구축(peacebuilding), ② 자유권(CPR), ③ 사회권(ESCR)으로 세분화하여 평화협정의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이 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는지 보고 있다.^{160/} 종합적으로, UPR은 콜롬비아 정부 차원의 인권개선에 대한 노력을 평화협정에서 명시한 제도적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따른 정부의 인권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161/}

그런가 하면, 보다 최근의 자료들은 유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UN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162/}는 2021년도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권의 측면에서 있어 주목할 점은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한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정치적 인식과 이들에 대한 정치적 선거 및 제도변화가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몇몇 대도시와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는 폭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콜롬비아 토착민들과 그들의 지도자, 소작농, 아프리카 계열 부족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대한 인권유린의 수준에 있다고 보고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

160/ 2018년 UPR이 검토한 인권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평화구축: 여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및 지뢰위험 교육, 강압적 병력충원 및 아동과 여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방지, 재통합과 재엔업, 행불자 찾기, 포괄적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강제 이주, 인권교육과 문화.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및 존엄성, 감옥제도 개선, 인신매매, 인권운동가 및 사회지도자, 단체·결사의 자유, 사법 접근성과 사법적 독립, 안보 및 무장단체 억제, 평등권과 차별금지(여성, 인종집단, 원주민 공동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청년, 노인, LGBTQ+ 등).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빈곤 철폐,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식수 및 위생, 노동권, 환경, 불법마약 근절, 인권과 비즈니스.

161/ UN UPR National Report, A/HRC/WG.6/30/COL/1 (May 7~18, 2018), pp. 2~3.

162/ UN Doc., A/HRC/49/19 (May 18, 2022).

믹은 이와 같은 폭력의 수준을 더 심화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켰다. 불평등은 식량, 교육, 건강, 직업, 노동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Kroc Institute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평화협정의 3조와 6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콜롬비아 인권은 2016년 평화협정 이후, 제도적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분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탓이라고 하겠다. 페트로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평화협정의 기대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인권정책이 어떻게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인권의 평화 효과

콜롬비아 인권정책과 이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콜롬비아 인권과 평화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평화협정과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듯이, 인권과 평화는 종종 동의어로 이해되며 평화협정 없이는 인권정책이 개선될 수 없었고,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평화협정이 추진될 수 없었다. 따라서 콜롬비아의 적극적 평화 형성과 실현은 각기 다른 인권과 평화정책에 기인하지 않고 상호연계된 복합적 효과를 누릴 때 가능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권과 평화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6년 평화협정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평화지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인권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2023년에 발표한 Global Peace Index(GPI)에서 콜롬비아 평화지

수를 국내외 갈등, 사회적 안정, 군사화로 나누어 평가했다. 콜롬비아 국내외 갈등지수는 2,099점으로 최상위 국가인 예멘(3,486)과 최하위 국가인 아이슬란드(1.0) 사이에서 비교적 상위에 속하고, 사회적 안정 지수는 3,584점으로 최상위 국가인 핀란드(1,251)와 최하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4,136) 사이에서 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군사화 지수는 1,924점으로 아이슬란드(1,015)와 이스라엘(3,783) 사이에서도 높은 측에 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콜롬비아 분쟁의 경제적 규모는 GDP의 29%에 해당하는 2,174억 달러가 소비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를 종합하면 콜롬비아의 평화지수는 2,693점으로 전 세계 161개의 평가국 중 141위이자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이다. GPI 보고서는 2022년 콜롬비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해 5월에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양분된 사회적 여론임을 꼽았고,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개선이 있었으나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표 III-20 콜롬비아 세계평화지수(2014-2023)^{163/}

	총점	국내외 분쟁	사회적 안정	군사화	경제적 손실 (백만 달러)	GDP 대비 경제적 비용
2014	2,701	2,40	3,412	1,672	50,670\$	9.7%
2018	2,729	2,195	3,428	2,229	233,898\$	34%
2020	2,646	2,10	3,366	2,122	169,517\$	23%
2023	2,693	2,099	3,584	1,924	217,440\$	29%

참조: IEP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위의 표는 콜롬비아 국제평화지수를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2016년과 2017의 경우 IEP

^{163/} 국내외 분쟁, 사회적 안정, 군사화의 점수의 경우 각 국가마다 전년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1.0과 5.0 사이로 나타내며, 1.0에 가까울수록 평화지표가 높게 측정된다.

에서 GPI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2, 3년 주기로 보고서를 분석했다. 표에서 알아 볼 수 있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콜롬비아 평화지수는 2.6-2.7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국 162~3개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점수다. 2020년 이후 평화지수가 0.05~0.1점이 낮아졌으나 오히려 사회적 안정화 부문에 있어서 지속되는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 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비용도 국내총생산 대비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평화협정 전후 콜롬비아 국제평화지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콜롬비아의 사회적 안정과 평화지수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평화협정 전후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GPI 지수와 더불어, <표 III-22>는 2020년대에 콜롬비아에서 학살과 희생자가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롬비아 옴부즈맨은 2022-2016년 이후 테러 형태로 이와 같은 살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2명, 2021년에는 145명, 그리고 2022년에는 215명의 지도자들이 희생됐다고 보고했다.^{164/}

표 III-21 콜롬비아 학살과 희생자 수(2020 이후)

	집단학살	희생자 수	인권운동가 및 사회지도자 수
2020	91	382	182
2021	96	338	145
2022	94	300	215

출처: “MASACRES EN COLOMBIA DURANTE EL 2020, 2021, 2022 Y 2023,” Indepaz, October 20, 2023, <<https://indepaz.org.co/informe-de-masacres-en-colombia-durante-el-2020-2021/>> (Accessed November 14, 2023).

^{164/} “Colombian Activist Killings Hit Record High in 2022: Ombudsman,” *Aljazeera*, January 23, 2023,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23/colombian-activist-killings-hit-record-high-in-2022-ombudsman>> (Accessed November 15, 2023).

위의 표들은 콜롬비아 평화적 상황이 평화협정 이후에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폭력과 학살이 집단적 차원과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화 프로세스 중에서 개선됐던 인권상황이 2018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콜롬비아 국제 인권단체인 OIDHAC(Oficina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Accion Colombia)^{165/}는 2018년 UPR의 권고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 이 시기 동안 인권과 평화 양 측면은 평화협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후퇴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66/}

한편,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평화협정 5조 분쟁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the Comprehensive System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Non-Repitition) 아래 진실규명위원회(CEV), 평화특별재판관(JEP), 그리고 행불자특별위원회(UBPD)를 두었으며 이 기관들은 모두 2018-2022년 동안에 임무를 수행했다. 이행기 정의에 대한 두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그 시작이 지연되었으나, 2022년 6월 발행된 CEV 최종보고서와 2022년 11월 발효된 JEP의 결의안은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몇몇 가해자들의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지기도 했

165/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2018-2022: Rep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Colombia 2023," The International Office for Human Rights Action on Colombia, June 28, 2023, <https://reliefweb.int/report/colombia/situation-human-rights-colombia-2018-2022-report-international-coordination-groups-and-organizations-universal-periodic-review-colombia-2023?gad_source=1&gclid=CjwKCAiA9dGqBhAqEiwAmRpTC7bNxpSiKEifIymuOY4VsfZNnayXWPHFTJ8JA6fteWBc0GH_Ns3RyBoCVnYQAvD_BwE> (Accessed November 15, 2023).

166/ *Ibid.*, p. 4

다. 여전히 가해자들의 불처벌(impunity) 문제가 정의와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CEV와 JEP의 활동들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행불자위원회(UBPD)의 경우 여전히 그 활동이 지연되고 보고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러는 동안 콜롬비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행불자가 된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테러적 폭력들은 이와 같은 인권제도의 지연과 관계한다.

요컨대, 인권정책은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8-2022년에 이르는 시기에 인권과 관련된 평화협정 실행률은 지극히 낮으며 이에 따라 분쟁, 사회적 안정, 그리고 군사화 부문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 인권레짐의 요체인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만이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권정책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평화적 효과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평화는 이행기 정의 중심의 인권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실행한다면 평화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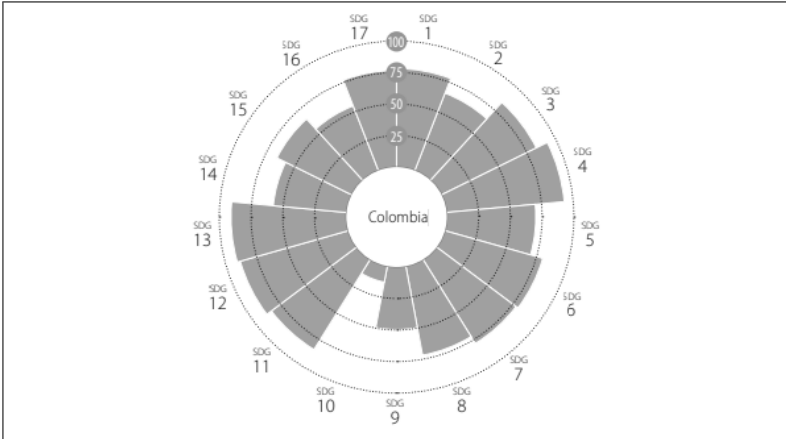
(2) 인권의 발전 효과

콜롬비아 인권의 발전 효과는 콜롬비아 내부의 사회적 발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적 발전이란 분쟁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악화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요구한다.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권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발전지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객관적 지

표를 살펴봐야 한다. 그 후, 평화협정의 인권정책이 이와 같은 발전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야 한다.

먼저, UN은 2023년 SDGs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70.1점으로 평가하고 전 세계 166개국 중 76위로 측정된 바 있다.^{167/}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부문별로는 빈곤, 교육, 식수 및 위생, 친환경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아젠다들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변국에 대한 여파(International Spillover)도 96.3점으로 높은 편으로, 연계전략을 보다 더 키움으로써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Ⅲ-8 콜롬비아 SDGs 부문별 성취도



출처: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p. 194.

^{167/}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Implementing the SDG Stimulus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2023), p. 25.

이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2018년, 2021년 3회에 걸쳐 국 가별 자발적보고서(VNR)를 UN에 제출했다. 2021년 보고서에서 정부는 UN의 평가보다 높은 72.1%에 해당하는 발전지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으며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등의 글로벌 의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행동계획에 따르고 있다고 보고했다.^{168/} 특히 2021년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저발전을 고려해, 보다 전략적 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세계의 생명력(Colombia, Potencia Mundial de la Vida)”이라는 자체적인 의제를 통해 2022-2026년 사이에 총체적 평화, 인간 안보, 사회 정의 및 행동을 실행하고자 한다.

표 III-22 콜롬비아 VNR SDGs 자체평가(2021)

아젠다	(%)	아젠다	점수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정망 강화	79.3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74.5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정보 없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85.1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55.4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95.8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86.2	13. 기후변화와 대응	68.6
5. 성평등 보장	74.4	14. 해양생태계 보전	99.5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0.5	15. 육상생태계 보전	100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66.7	16. 평화·정의·포용	75.3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71.2	17. 지구촌 협력강화	100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94.6		

출처: Voluntary National Report 2021 Colombia, pp. 26~27.

^{168/}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Reporte Nacional Voluntario 2021,” June 2021, <https://siteal.iiep.unesco.org/sites/default/files/sit_accion_files/reportes_nacional_voluntario_ods.pdf> (Accessed November 14, 2023); Voluntary National Report 2021 Colombia, <<https://hlpf.un.org/countries/colombia/voluntary-national-review-2021>> (Accessed November 15, 2023), pp. 10~27.

VNR 자체평가는 UN의 평가와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건강, 산업, 성평등, 불평등,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에 대한 평가는 특히 다르다. 그러나 VNR은 전체적으로 준수한 실행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새롭게 떠오르는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른 의제의 실행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간했다.^{169/} 이 문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틀, 행위자 설정, 정책 지침, 그리고 권고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분쟁과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콜롬비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UNDP는 2021/2022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2020년 콜롬비아의 인간발전지수를 0.756으로 평가했다.^{170/} 이 수치는 세계평균 0.732보다는 0.024 포인트 높고 라틴아메리카 평균 0.754보다는 0.002 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래의 <표 III-23>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간의 콜롬비아의 인간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콜롬비아의 상황은 1990년 이후 1999년만을 제외하고 줄곧 개선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다시 하강하는 추세다. 평화협정이 맺어진 2016년 이후로도 인간발전지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169/ "Estrategia Para La Implementacion de 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en Colombia," Consejo Nacional De Politica Economica Y Social, 2018, <https://repository.agrosavia.co/bitstream/handle/20.500.12324/35650/Ver_Documento_35650.pdf?sequence=4&isAllowed=y> (Accessed November 15, 2023).

170/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New York: UNDP, 2022).

표 III-23 콜롬비아 인간발전지수 추세(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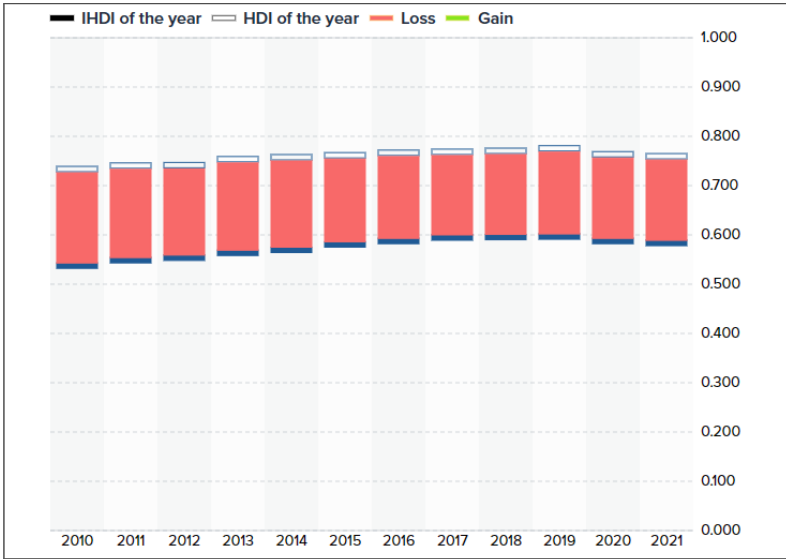
	기대수명(세)	기대교육기간 (년)	실질교육기간 (년)	1인당GNI (2017 PPP\$)	인간발전지수
1990	68.6	8.9	6.3	7,933	0.610
1994	69.6	10.4	6.5	8,941	0.640
1998	70.7	11.7	6.8	9,318	0.665
1999	70.9	11.7	6.8	8,793	0.663
2002	71.9	11.7	7.0	8,908	0.670
2006	73.5	13.0	6.8	10,323	0.698
2010	75.0	13.9	7.4	11,347	0.726
2014	76.0	14.2	8.0	3,432	0.750
2018	76.7	14.4	8.5	13,941	0.763
2019	76.8	14.5	8.6	14,241	0.768
2020	74.8	14.4	8.9	13,185	0.756

출처: 저자 작성

기존의 HDI 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지수들 중, ^{171/} 불평등-조정 인간발전지수(IHDI), 젠더 불평등 지수(GII), 그리고 다면적 빈곤 지수(MPI)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발전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콜롬비아의 IHDI는 2010년과 2021년 사이 기존 HDI 측정 분야에서 불평등 지수가 꾸준히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IHDI는 한 국가의 HDI 측정 분야의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지수는 쇠퇴(Loss)함을 보여준다. 즉, 지난 11년 동안 콜롬비아 평균 HDI는 점진적인 개선을 보였으나 사회적 균등의 측면에서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171/} UNDP는 최근 HDI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층적인 지수를 포함시켰다. 젠더 발전 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 불평등-조정 인간발전지수(Inequality-adjusted HDI; IHDI), 젠더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젠더 사회규범 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 다면적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등이 그것이다. 세분화된 지수들은 모두 기존의 HDI 측정분야에서 포착되지 않은 요소들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사회발전의 지수를 제공한다.

그림 Ⅲ-9 콜롬비아 Inequality-adjusted HDI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Colombia, (<https://hdr.undp.org/data-center/specific-country-data#/countries/COL>) (Accessed December 15, 2023).

IHDI를 젠더의 관점에서 더 세분화한 GII의 경우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석수, 여성 중등교육, 여성 강제노동 참여율 등을 분석한다. <표 Ⅲ-25>에서 나타나듯이 젠더 불평등 지수는 점차 개선되었다.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 여성의 강제노동률 감소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중등교육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2020년 의회의 여성의석수도 1990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늘었다.

표 Ⅲ-24 콜롬비아 젠더불평등지수 추세(1990-2020)

	모성사망률 (10만명당)	청소년출산율 (1,000명당)	여성의석수 (%)	여성중등교육 (%; 25세 이상)	여성강제노동 (%; 15세 이상)	젠더불평등 지수
1990	121	94.9	9.8	42.5	51.2	0.529
1994	110	93.7	9.8	40.7	53.0	0.519

	모성사망률 (10만명당)	청소년출산율 (1,000명당)	여성의석수 (%)	여성중등교육 (%; 25세 이상)	여성강제노동 (%; 15세 이상)	젠더불평등 지수
2000	94	94.7	12.2	38.0	53.2	0.497
2008	84	81	9.7	43.5	49.9	0.491
2012	85	77.6	13.6	47.0	57.7	0.462
2016	84	68.1	20.9	53.1	57.9	0.427
2020	83	59	19.6	58.9	52.2	0.424

출처: *Ibid.*

마지막으로 다면적 빈곤 지수(MPI)는 한 국가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객관화한 수치를 보여준다. MPI의 경우 열 가지 분야의 빈곤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영양, 영유아 사망률, 기대교육기간, 학교참여율, 요리연료, 위생, 식수, 전기, 주거, 자산의 10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옥스포드 빈곤·인간발전지수는 다면적 빈곤을 5개의 측면과 15개의 지표로 더 세분화해서 인간발전지수의 1인당 GNI가 보여주지 못한 실질적 빈곤지수를 보여준다. 2022년 콜롬비아는 역대 최저인 12.9%를 기록함으로써 빈곤퇴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72/}

이와 같은 다양한 지수들은 현재 콜롬비아의 발전상황을 개괄하여 보여준다. 요컨대, 1990년 이후로 전반적인 사회적 발전은 점진적인 향상을 보여주었고 성평등의 측면에서도 미미하지만 일정 부분의 효과를 거두었다. 다면적 빈곤지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부터 다시 악화된 인간발전세계평화지수는 바로 이러한 콜롬비아의 양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팬데믹으로

^{172/} UNDP and OPHI,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2023 Unstacking Global Poverty: Data for High Impact Action," 2022,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p-document/2022mpireportenpdf.pdf>> (Accessed November 15, 2023).

인한 실질적 발전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더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콜롬비아 인권정책이 발전의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발전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권과 사업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최근에 나타나는 산발적인 폭행들은 오일, 가스, 석탄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국의 인권옹호가들에 대한 폭력이었으나 콜롬비아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폭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었다.^{173/}

둘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화협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수, 식량, 주거권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식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콜롬비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수의 부족은 식수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 채굴이나 기업식 농업 등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74/} 또한, 영양이나 식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5세 미만의 아이 중 10%는 저성장, 24% 이상의 취약아동들과 56%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과체중 현상을 보인다.^{175/} 콜롬비아 전반에 퍼져있는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두께 정부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빈곤문제를 부인한 바 있다. 현 페트로 정부는 SDGs를 현실

173/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2018–2022: Rep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Colombia 2023," The International Office for Human Rights Action on Colombia, p. 13.

174/ *Ibid.*, p. 14.

175/ *Ibid.*, p. 15.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빈곤 문제에 해당하는 영양, 식수, 식량 등의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 평화와 사회발전에 가장 핵심인 토지문제는 평화협정의 1조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며 지금까지 평화협정의 지연과 향후 평화구축의 성패와 직결되고 있다. 토지문제는 사실상 콜롬비아 분쟁의 핵심 요소이자 경제적인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분쟁이 농촌지역 토지 소유권 문제와 직결되면서 소작농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이 삶의 안정성을 강탈당했다. 이에 평화협정은 토지와 관련하여 불법적 토지소유에 대한 반환, 소작농에 대한 토지 분배 및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콜롬비아 1%의 인구가 8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51.7%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이 사실상 비공식적 토지소유 상태이다.^{176/} 그리고 36.3%만이 여성 지주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했다. 소작농들에 대한 어떠한 국가정책이나 평화협정에 명시된 농지관할권(Agrarian Jurisdiction)도 실행되지 못했다.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토지보상의 경우도 그 결과가 상당히 미미하다.^{177/}

마지막으로 젠더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평화협정의 122개의 아젠다는 여성 인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 26%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78/} 최근 3년 동안 콜롬비아 전역에서 445건의 페미사이드(femicide)가 발생했다. 특히, 마약이나 채굴을 산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 심했다. 흑인이나 원주민,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는 보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정치적 참여 문제나 토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불평등이 유지되

^{176/} *Ibid.*

^{177/} *Ibid.*

^{178/} *Ibid.*, p. 25.

고 있다. 두케 정부는 CONPES 4040를 승인하여 평화구축과 안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등에서 전반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¹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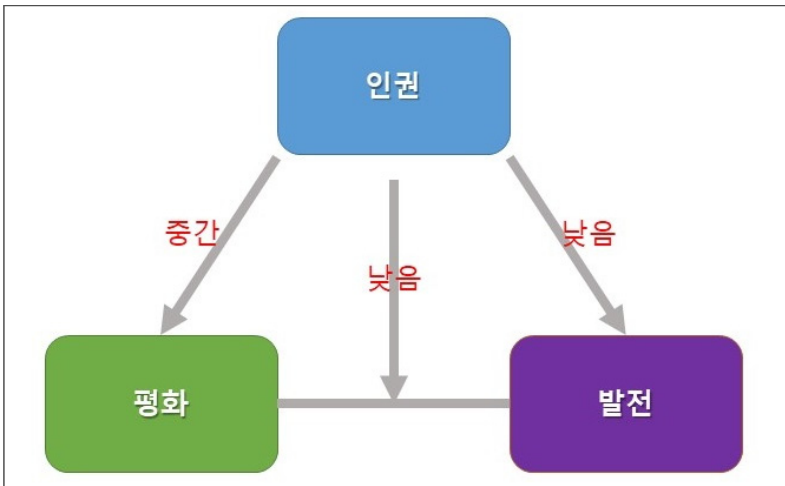
요컨대, 인권의 발전 효과는 각각의 구체적인 아젠다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평등은 인권의 대부분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대상으로는 아동, 여성, 소수인종, 소작농 등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권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발전의 연계는 다소 미진했으며, 현 페트로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수반할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 토지개혁과 성평등 분야에서 인권-발전의 연계가 긴급히 요구된다.

(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마지막으로 인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효과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개념이 콜롬비아 사례에서 어떤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요청한다. 2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모든 인권정책이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968년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은 평화, 인권, 발전의 상호연관성에 있으며, 특히 인권의 경우 평화와 발전과의 공진화 없는 자체적인 진보에는 한계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증진이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권의 악화가 평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콜롬비아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잠정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¹⁷⁹⁾ *Ibid.*

그림 III-10 콜롬비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출처: 저자 작성

먼저, 인권과 평화와의 상관관계는 발전과의 관계보다 직접적이다. 평화협정의 핵심이 평화구축과 보편적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 두 가치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발전권도 평화협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인권과 평화의 파생효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평화의 관계보다는 시급성 면에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콜롬비아 사례에서 발견된 인권의 평화 효과는 중간(moderate)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6년 평화협정의 지연과 이후 뒤따라오는 인권유린 현상은 실상 평화적 안정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인권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보여준바, 콜롬비아 사회는 현재 매우 불안정하며 평화협정 전과 후 상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낮은 평화의 수준이 인권의 악화를 가져오며, 인권의 악화가 다시 평화 실현을 더디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평화 증진에 기여한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법을 중심으로 하는 CEV와 JEP는 분쟁에 대한 진실과 가/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배·보상 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공표했다. 이행기 정의는 피해자들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정의실현에 대한 필요를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인권-평화의 선순환은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UBPD 보고서를 통과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 발전에 대한 효과는 다소 낮으며 오히려 발전적인 측면을 강화할 때, 인권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발전권은 평화협정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 2, 3, 4조). 특히, 평화협정의 1조에 해당하는 토지개혁은 발전권의 핵심에 위치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성평등, 빈곤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인권과 발전의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정부의 평가와 실질적 평가는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콜롬비아 정부가 제출한 UPR은 2030년까지의 행동계획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UNDP의 HDI도 점차적인 개선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HDI를 세분화한 IHDI, GII, MPI 등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평등 문제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시기에 OIDHAC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작농, 어린이, 소수인종,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콜롬비아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토지개혁의 경우도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권정책이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저조하다. 오히려 발전권이 인권의 개선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더 기대된다.

이와 같이 콜롬비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소 미미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식의 선순환은 향후 페트로 정부의 ‘총체적 평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 중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시적 폭력을 중지하고 인권과 평화, 발전의 측면을 고루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학술적 담론은 콜롬비아의 PHD(평화-인권-발전) 선순환을 보다 로컬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콜롬비아 사례는 기존의 국가 주도의 분쟁해결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주도의 평화구축이 그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인 것이다.^{180/} 오히려 PHD의 선순환은 20세기 내내 콜롬비아 국민들을 지배해온 불평등의 구조, 폭력의 문화, 지배엘리트 계급들 사이의 카르텔 등이 해체되어 일반 국민들의 양분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181/}은 곧 로컬 중심의 PHD를 지칭하고 있다. 실로 분쟁은 도시와 농촌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로컬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의 문제는 일상의 불평등과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개인들과 집단들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로컬 차원의 인권 논의는 효과적인 평화·발전의 효과,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PHD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180/ Manuela Nilsson and González Marín Lucía, “Violence Peace: Local Perceptions of Treat and Insecurity in Post-Conflict Colombia,”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27, no. 2 (2020), pp. 238~262; Pamina Firchow, *Reclaiming Everyday Peace: Local Voices in Measurement and Evaluation after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81/ Helen Berent, “An Embodied Everyday Peace in the Midst of Violence,”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pp. 1~14.

라. 요약과 합의

(1) 요약

콜롬비아 분쟁과 평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정부와 게릴라 조직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을 시민들이 반대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게릴라 조직들을 대화 상대자로서 받아들이고 이들과 꾸준히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물론,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평화협상과 이행의 수준은 달랐으나 현재 페트로 정부의 ‘총체적 평화’ 정책은 여전히 대화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평화협정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게릴라 그룹들의 끊임없는 정치적 관여는 이 분쟁의 사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겠다. 콜롬비아 인권의 평화·발전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평화와 인권은 통합적으로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듯 콜롬비아 평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성취되지 못했으며 평화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평화협정은 평화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평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2016년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평화를 염원하는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전통적인 평화구축의 필수조건인 평화협정이 시민들로부터 반대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안 두케 대통령의 강경책이 다시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갔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평화의 불씨가 올랐다는 것은 평화가 정치적인 기조에 따라 얼마나 가변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상황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UPR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이, 콜롬비아 인권에 있어 가장 주목할 것은 인권제도의 개선이 평화협정에 기인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인권은 평화의 종속변수로 치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화=인권⇒평화협정의 도식에서 인권은 평화와 가까우면서도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분쟁의 상황이 필연적으로 인권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되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단위와 제도를 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 분쟁사회에서 시민들의 인권은 개선되기 힘들다.

둘째, 분쟁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인권이 제도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은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유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부재하다는 것과 같다. 2020년 이후 증폭하는 인권운동가와 사회지도자들에 대한 살인과 테러는 콜롬비아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보여준다. 평화협정의 이행에 따라 정부와 FARC 사이의 직접적 폭력은 줄었으나 게릴라 잔여 세력들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개인들에 대한 살인은 그것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말해 게릴라 그룹들이 얼마나 정치적 인정을 원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룹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과 대화는 인권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는 평화의 우선적인 조건이다. 콜롬비아 인권의 특징은 분쟁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이나 화해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진실, 정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

으며, 이는 분쟁의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인권과 평화 양 측면의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보편적 관심은 콜롬비아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분쟁 해결의 '로컬화'는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 분쟁과 인권의 후퇴는 국내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적 변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미국의 개입은 콜롬비아 분쟁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냉전의 전선에서 보호개입주의를 표방한 자유주의적 처사였다. 주지하듯, 플랜 콜롬비아는 결국 분쟁을 악화시키고 장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볼 때,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반드시 분쟁의 로컬 행위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입장 및 역량을 충분히 고려할 때 그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

다섯째, 인권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콜롬비아 인권정책은 사실상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콜롬비아 사례를 들여다보면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테러적 폭력이 만연해 있어 사회적 안보는 불안하다. 페트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잔여 게릴라 집단들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압력과 협력을 요청한다.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콜롬비아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한반도에 주는 함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콜롬비아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

을 수반한다. 산토스 정부의 성공적인 평화협정은 이전 정부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세 차례 실패의 경험이 산토스 정부 평화협정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협정의 이행이 부침을 겪기도 하지만 페트로 정부의 새로운 노력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단기적인 노력이나 특정 정부에서의 일회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평화협정 자체가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행의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논의는 결코 한시적 정부의 단기적 정책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협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확보되어야 순조로운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정치적 노력과 시민적 공감대의 확산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평화협정과 그 체제 실현이 가능할 것임을 말해준다.

둘째, 평화와 인권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콜롬비아 평화협정에서 명시한 인권의 문제는 평화적 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평화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인권이 반드시 평화에 종속된다거나 평화가 인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콜롬비아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인권정책과 이행은 자연스럽게 후퇴하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해졌다. 만일 평화와 인권을 하나의 아젠다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인권은 평화의 성패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인권의 문제도 평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 인권을 위시하여 전쟁 피해자, 납북피해자

등 국내 인권의 문제도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비평화 상태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평화 프로세스가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자 인권에 대한 관심도 후퇴하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인권-평화의 관계도 콜롬비아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인권이 평화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지만 평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은 그와는 상호보완적이되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의 후퇴가 분단을 더 고착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인권이 평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으로 아젠다 설정과 공론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이행기 정의는 인권유린과 침해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다루어 가는 국제적 패러다임이다. 콜롬비아 인권이 부분적으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분쟁 속에서도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행기 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적 수준의 인권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분쟁사회에서 인권이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물론,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 인권침해의 범위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며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의 이념적 논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다양한 진실위원회가 설립되어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나 사법적 책임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성은 보편적 차원의 이행

기 정의를 실천하기에 현실적인 장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한다. 여기에서 보편적이라 함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 논의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남북한의 통합적 이행기 정의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데, 인권의 실천 담론으로서 이행기 정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속돼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분쟁은 이미 콜롬비아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 문제가 되었으며, 평화적 해결은 주변국과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분쟁으로 인한 생태적 파괴, 난민, 국경 문제 등은 한 국가의 분쟁이 얼마나 큰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한반도의 분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작게는 동북아시아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군비경쟁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이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반드시 국제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은 다양한 국제 행위자들이 함께 관여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인권, 평화, 발전의 문제를 보편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수도 없다. 그것은 콜롬비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의 해결은 로컬 행위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역사성을 간과하고는 올바르게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적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의 로컬 전략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분쟁 속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

3. 베트남

가.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배경

베트남(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RV,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20세기 중반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1975년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 발전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인권, 평화,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1)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후 1976년 7월 2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 남과 북이 하나의 정부 아래 통일이 되었다. 베트남 공산당(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을 주축으로 설립된 공화국 정부는 중앙계획, 농업의 집단화, 산업의 국유화 등 소련과 중국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베트남 공산당은 토지개혁과 농업 및 산업의 집단화를 포함한 남부지역에 대한 사회주의 전환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182/}

통일 후 초기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식량부족,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경제 금수 조치와 장기간의 전쟁 후 재건 비용으로 인하여 베트남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183/} 1980년대 중반이 되자

^{182/}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 (2009), pp. 65~96, p. 89.

^{183/} Tuong Vu, *Vietnam's Communist Revolution: The Power and Limits of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 212.

베트남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이 머이(Đổi Mới, 혁신)’ 정책을 시작하면서 경제 및 사회적 개혁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민간 소유와 기업가 정신이 허용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장려되었으며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이 개혁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베트남은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성장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 경제 구조 차원에서도 이 개혁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베트남의 경제는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강조로 전환하면서 다각화되었다. 베트남은 2007년에 150번째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고 다양한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통합되었다.^{184/} 동시에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빈곤 감소, 교육 성취도, 건강 지표에서 진전을 이루며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권, 거버넌스, 부패와 같은 분야에는 여전히 개혁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정권의 체제 정당성에 도전 요소로 작용하였다. 베트남 공산당은 일부 정치 개혁 조치들을 도입했지만,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는 일당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185/}

^{184/} David W. P. Elliott,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10.

^{185/} Regina M. Abrami, Edmund J. Malesky, and Yu Zheng, "Vietnam Through Chinese Eyes: Divergent Accountability in Single-Party Regimes,"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 Martin K. Dimitro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237~275.

(2) 베트남의 체제 정당성의 위기

도이 머이 개혁 정책의 출범 이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제 처리에 대한 불만과 도전에 직면하였다.^{186/} 급성장하는 제조업과 수출 부문에 종사하는 공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187/} 근로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높은 생활비에 시달리면서 파업과 노동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글로벌 경제 구조에 편입되어 노동 불안이 증가하면서 정부 당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의 증대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사회는 베트남 공산당의 정책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되었다. 토지 몰수 및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하여 토지 분쟁은 쟁점화 되었다. 이는 농민 및 마을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관료 조직과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 인지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부패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농촌지역 사회에서 베트남 당국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188/}

도시 시민들도 베트남 공산당에 대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펼쳤다. 도시지역 시민들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촉발했고, 시민들은 중국의 침략적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189/}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

^{186/} Benedict J. Tria Kerkvliet, *Speaking Out in Vietnam: Public Political Criticism in a Communist Party-ruled N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pp. 2~3.

^{187/} *Ibid.*, p. 12.

^{188/} *Ibid.*, p. 33.

^{189/} *Ibid.*, p. 69.

고 국내 압력에 대응하는 베트남 정부의 섬세한 균형 정책은 불만과 저항의 이유가 되었다.

베트남 공산당 내외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일당 체제에 비판적이며 더 큰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해왔다. 반체제 인사들과 활동가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아왔으며, 이는 베트남 공산당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190/}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에 대한 다각적인 도전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일당체제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베트남 공산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의 궤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당체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은 대중의 비판에 어느 정도 대응적인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이는 베트남에서 세계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인권문제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이 반대 의견에 대한 무작위적 탄압보다 거버넌스에 대한 미묘한 개혁적 방식을 적용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191/}

(3) 베트남 정부의 대응전략과 통치 정당성

통치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개혁 정책은 책임성의 제도들(institutions of accountability)을 증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국익과 교차하거나 당국의 광범위한 발전 또는 개혁 목표와 일치할 때 대중의 정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

^{190/} *Ibid.*, p. 87.

^{191/} Martin K. Dimitrov, "Understanding Communist Collapse and Resilience,"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 Martin K. Dimitro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32.

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 파업에 대응하여 노동법 및 작업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행동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분쟁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보여 왔다. 베트남 공산당은 특히 사회 복지,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이슈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관용을 보이며, 이러한 활동이 국가 발전 의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탄원과 비판을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정부가 여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을 광범위한 민주화로의 변화 추세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다. 베트남 정부는 정치적 반대, 특히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통치의 정당성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정치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활동가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당국의 감시와 괴롭힘에서 구금과 투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에 노출되어 있다.^{192/}

본질적으로 베트남 공산당 일당 체제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유연한 제도적 적응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이러한 미묘한 접근방식은 정치적 통제 유지와 사회경제적 변화 및 대중의 정서에 반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이는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192/} Carlyle A Thayer, "Political Legitimacy of Vietnam's One Party State: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 28, no. 4 (2009), pp. 47~70.

베트남 공산당은 현대 정치의 복잡성 속에서 성공적인 통치 정당성 확보 전략들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전략 중 신호 효과(signal effect)와 성과적 정당성 추구 전략(performance legitimation)이 특징적이다.^{193/} 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어느 정도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인 준-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신호 효과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에서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한된 수의 비당원에게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적 포용성과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쟁의 인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헌법 개정안과 같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 또한 이러한 신호 효과의 다른 예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도로 통제되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의식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대중 정서에 대한 안전판을 제공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성과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는 베트남 당국이 경제 지표와 사회 발전 지표 등 국가 발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공 지표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도이 머이 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 중심 경제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상당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달성했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은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공산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진행된 베트남 당국의 통치 정당성 확보 노력은 베트남의 정치 환경의 상대적 안정 추구에 크게 기여했다.

^{193/} Le Hong Hiep, "Performance-based Legitimacy: The Cas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Doi Moi","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4, no. 2 (2012), pp. 145~172.

나.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전개와 특징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선언문에서 당시 호치민(Hồ Chí Minh) 주석은 “세계의 모든 민족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equal from birth), 모든 국민은 살 권리(right to live), 행복하고 자유로운 권리(right to be happy and free)가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국민의 권리의 연관성을 강조했다.^{194/} 이후에도 베트남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왔는데, 인권에 관한 다양한 UN 협약에 참여하고 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켰다.^{195/}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도이 머이 정책 이후 대내적 모멘텀의 변화와 대외적 모멘텀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모멘텀들을 개관하고 인권정책의 특징들과 이행기 정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내적 모멘텀: 개혁 정책과 헌법 개정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개혁 정책은 경제 변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인권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방적이고 시

^{194/} Mach Quang Thang,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its immortal values,” *Political Theory*,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November 24, 2020, <<http://lyluanchinhtri.vn/home/en/index.php/figure-and-events/item/742-declaration-of-independence-and-its-immortal-values.html>> (Accessed September 16, 2023).

^{195/} 1세대 인권이라고 언급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도 1982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과 함께 승인하였다. 그 외에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등에 참여하였다.

장 지향적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노동권과 재산권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자유와 같은 영역도 제한적으로 개선되었다. 1994년 노동법은 근로 조건, 단체 교섭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노동권에 대한 법적 틀을 도입했다. 1992년과 2013년의 헌법 개정은 비록 사회주의 합법성(socialistic legality)의 맥락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였다. 또한 경제 개혁 과정의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와 법치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특히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은 대내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관점을 더욱 명확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92년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확립한 반면, 2013년 헌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베트남의 의무를 반영하여 포괄적인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이 포함된다.^{196/} 2013년 헌법에는 헌법의 장 제목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삽입하며 관련 조항을 강조했고, 본문에서도 인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197/} 기존의 1992년 헌법에 없던 사회 보장, 건강한 환경,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었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의 과정은 베트남 인권정책의 진화를 의미하며, 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 Thiem H. Bui, “Deconstruct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in Vietnam: The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Vietnam’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vol. 36, no. 1 (2014), pp. 77~100, p. 94.

197/ 이한우, “2013년 베트남 헌법 개정의 정치,” 『원광법학』, 제35권 4호 (2019), pp. 161~178.

그러나 베트남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Universal Human Rights Norms)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가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통치와 충돌할 때, 이러한 권리들의 인정과 이행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계속해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 법률 시스템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권의 해석과 적용은 종종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언어로 포장되어 국가의 사회주의 원칙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기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2년도 헌법 개정의 내용에서도 베트남 공산당 이론가들은 사회주의적 합법성과 법률에 기반한 국가의 혼합주의 이론을 내세워 법치와 당에 의한 통치(rule of the party)를 연결하여 법해석권에 있어서 베트남 공산당 통치의 우위를 확립하고 있다.

1992년의 헌법 개정에서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은 「인권과 당의 관점, 정책에 관한 지시 제12호」를 발표하며 “국가는 인권을 위해 국제관계에서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고, 동시에 인권을 악용하려는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198/} 베트남 정부의 인권 백서도 “어떤 국가도 인권을 수단이나 구실로 삼아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립과 정치적 압력을 조성하며, 심지어 다른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199/} 당 이론가들이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담론 형태

198/ Thiem H. Bui, “Deconstruct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in Vietnam: The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Vietnam’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p. 87.

199/ David Kinley and Hai Nguyen, “Viet Nam, Human Rights and Trade:

의 문화 상대주의적 접근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정치 담론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개혁 정책과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정책 변화의 대내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의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200/}

(2) 대외적 모멘텀: 대외관계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통합

대외적인 모멘텀의 변화가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201/} 이 시기 이전까지 베트남은 이념적 차이와 미국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으로 인해 인권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베-미 관계 정상화(1995)는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진전을 요구했고, 이는 상당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재판에 회부된 개인의 무죄 추정 및 피해자의 보상 권리에 관한 1985년 형법 및 1988년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노동법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혁에 착수했다. 1992년 헌법은 보다 광범위한 인권 보호를 명시하여 사회주의 합법성의 틀 안에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권 표준으로의 전환 과정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회주의 전통의 인권에 대한 이해에서 진일보한 인식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202/}

Implications of Viet Nam's Accession to the WTO," Friedrich Ebert Stiftung, Occasional Paper Series, *Dialogue on Globalization Working Paper*, vol. 39 (2008), pp. 3~43.

^{200/} Thiem H. Bui, "Deconstruct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in Vietnam: The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Vietnam'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p. 87.

^{201/} 서보혁,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과정, 그 요인과 함의," 채수홍 역음, 『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 213~234.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2007)은 인권정책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203/} 1992년 수정헌법 16조에서 인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며 “세계 시장과의 교류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입을 앞두고 베트남은 인권 관련 기준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 및 정책 개혁을 도입했다. 주요 개혁에는 ① 민간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인정, ② 노동권리와 조건에 대한 추가 발전, ③ 사법 및 행정 공공성 향상을 위한 법률 체계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경제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경제적 자유와 공정한 노동 관행을 촉진함으로써 인권정책의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권정책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되었다. 베트남은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고 2008년부터 UN의 보편정례검토(UPR) 절차에 참여하는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헌법에 포함된 포괄적인 인권 보호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법률 개혁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베트남의 의무는 종종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대비되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인권정책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인권정책 발전과 일당 통치체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

202/ Thiem H. Bui, “Deconstruct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in Vietnam: The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Vietnam’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p. 89.

203/ David Kinley and Hai Nguyen, “Viet Nam, Human Rights and Trade: Implications of Viet Nam’s Accession to the WTO,” pp. 3~43.

(3) 특징 1: 베트남의 인권정책과 국제 인권규범 간의 갈등

베트남 공산당과 시민사회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자유권으로 알려진,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표에서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베트남의 인권정책에 대한 최신 평가는 냉정한 시각을 제공한다. 두 기관 모두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 우려와 권고안들을 제시해왔다.^{204/} 베트남의 인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특히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에 반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억압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베트남 당국은 정보기관과 경찰 등을 통해 대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전통적인 법 집행의 역할을 초과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보고된다.^{205/}

베트남의 정치적 자유는 제약을 받는다. 제13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공안부(Bộ Công an,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관련 인사들의 두드러진 약진은 이를 반영한다. 이는 베트남의 정치 기구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제15대 총선(2021)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204/}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3: Vietnam,” <<https://freedomhouse.org/country/vietnam/freedom-world/2023>> (Accessed June 6, 2023);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21,” <<https://www.hrw.org/world-report/2022/country-chapters/vietnam>> (Accessed June 6, 2023).

^{205/} Benedict J. Tria Kerkvliet, “Governance, Development, and the Responsive-Repressive State in Vietnam,”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vol. 37, no. 1 (2010), p. 20, pp. 33~59.

공간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 되었다. 개혁을 주창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절차상의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체포되어 정치범 명단에 추가되는 사례도 발생하였기 때문이다.^{206/}

인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종교의 자유 역시 베트남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종교 단체와 그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종교 단체를 잠재적인 저항운동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당국은 종교 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행하며, 이 등록 제도는 절차상의 불편과 종교 문제에 대한 당의 간섭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가 공공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당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등록 제도를 비판해왔다.^{207/}

베트남의 인권정책과 국제 인권규범 간의 갈등은 당국의 정책과 이행에 일정 수준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갈등은 베트남이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자유권의 핵심요소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제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특징 2: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권, 협력과 제약의 조율

사회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베트남은 평등과 관련된 권리, 교육, 의료, 적절한 생활 조건과 같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수반하는 사회

^{206/}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3: Vietnam”;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21.”

^{207/}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21.”

권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행의 틀을 형성해왔다. 베트남 국영방송(The Vietnam News Agency: VNA)의 인권과 관련된 보도의 주된 내용은 2020년 말까지 가계 빈곤율을 3% 미만으로 낮추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인상적인 성과의 성취를 강조하며 빈곤 퇴치, 인간 발전의 진전, 생활수준의 향상을 강조한다. UN 발전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베트남 상주대표인 케이틀린 위센(Caitlin Wiesen)은 베트남 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과 계획에 있어서 국민과 평등에 초점을 맞춘 발전 경로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권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평가하였다.^{208/}

특히, 사회권은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크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조율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광범위한 국제 발전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 내에서 자국의 인권정책을 엮어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사회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들 간의 연계성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권 실현에 대한 성과를 측정, 추적,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데이터 및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09/} 이러한 접근은 사회주의 일당 체제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구하고 PHD 트라이앵글의 메커니즘에 대한 복합적인 함의들을 제공한다.

^{208/} “Vietnam’s Human Rights Achievements Undeniable,” *Vietnam News Agency*, May 1, 2021, <<https://en.vietnamplus.vn/vietnams-human-rights-achievements-undeniable/200779.vnp>> (Accessed June 6, 2023).

^{209/} “Our W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Viet Nam,” UN Vietnam, <<https://vietnam.un.org/en/sdgs>> (Accessed June 6, 2023).

한편, 사회권에 대한 강조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의무가 베트남 시민사회의 확장과 성숙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베트남의 시민사회의 확장과 발전이라는 논의도 당국이 설정한 통제 내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시민사회 운동이 공산당의 통치 원칙과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도전하는지에 따라 용인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 당국의 감독 아래 시민사회 조직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가운데, 이러한 하부 활동이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와 인식에서 서서히 변화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210/} 시민사회 운동이 베트남 공산당의 의제와 일치하거나 당의 통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허용된다. 그러나 완전한 다당제의 실시 또는 정당과 국가의 분리와 같은 기존의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주장하는 운동은 강화된 통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211/} 이러한 특징은 베트남 공산당의 협력과 조율 자체가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환기해 준다.

210/ 정동준, “도이머이 개혁 이후 베트남의 시민사회: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0권 1호 (2018), pp. 265~297.

211/ 하노이 인민 법원은 ‘민주주의 추구 단체’의 설립 및 인권 교육 활동,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응우옌 반 다이 변호사를 포함한 6명에게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및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레 티 투 항 (Lê Thị Thu Hằng)은 “베트남 내에서 양심수라는 것은 없으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해서 체포된 사람은 없고 인권 증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민영규, “베트남 “다당제 주장은 국가 전복 행위”...인권변호사 등에 중형,” 『연합뉴스』, 2018.4.6.,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6077600084>> (검색일: 2023.9.16.).

(5) 특징 3: 베트남식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과 거버넌스의 접점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1998년 베트남 공산당이 공표한 정책 프레임워크인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원칙에 의해 뚜렷하게 특징지어진다.^{212/} 이는 1997년 타이 빈(Thái Bình) 지역과 동 나이(Đông Nai) 지역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농민 주도의 소요사건에 대하여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1998년 「지시(Directive) 30/CT」를 통하여 지역수준의 공동체나 기관, 국유기업의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 속에 나타났다.^{213/} 개혁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채택하는 대신,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내재적 접근방식을 채택했다.^{214/} 이러한 접근은 베트남이 현대적 거버넌스 기준과 베트남 사회 구조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 수준에서 정치적 권한 부여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관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에 자신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버넌스 모델에 전통적인 정치문화를 도입하고자 하였다.^{215/} 베트남 당국은 전통적인 마을 구성단위인 마을의 장(Lý dịch,

212/ Hai Hong Nguyen, “Resili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s Authoritarian Regime since Doi Moi,”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 35, no. 2 (2016), pp. 31~55.

213/ 허만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5단계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제14권 2호 (2011), pp. 137~168.

214/ Hai Hong Nguyen, *Political Dynamics of Grassroots Democracy in Vietnam* (New York: Springer, 2016), pp. 34~35.

215/ *Ibid.*, p. 19.

village chief), 저명인사 협의회(Hội đồng kỳ mục, the council of nobbles), 주민 회의(Cuộc họp dân làng, greater villagers meeting) 형식을 마을 단위의 코뮌 민주주의(commune-level localities)로 편입하는 개혁을 실행하였다.^{216/}

베트남 공산당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베트남의 전통문화와 사회적 뉘앙스를 거버넌스에 반영함은 물론 기존의 국가-농민 관계 및 당원-농민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공산당의 지역 통제와 관리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이를 활용하였다.^{217/} 베트남 공산당은 지역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일당 체제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권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베트남 공산당의 주요 이론가들은 거버넌스 개혁의 내재적 접근방식에 대하여 당과 정부 당국, 그리고 인민대중과 사회가 각각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형태를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권력 균형은 사실상 당-국가 중심의 비대칭적 구조로 평가받고 있으며,^{218/} 이는 인권정책의 영역에서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6) 특징 4: 이행기 정의 문제와 인권정책

베트남의 이행기 정의 및 인권정책에 대한 연구는 복잡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특히 독립과 통일의 역사는 이행기 정의 프레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216/ *Ibid.*, p. 18.

217/ *Ibid.*, p. 7.

218/ *Ibid.*, p. 38.

제공한다. 베트남의 이행기 정의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필요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통일 이후 공산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억압 아래 많은 시민이 피해를 겪었다. 베트남 정부는 1961년 6월 20일 이후, 행정 구금소로서 재교육 캠프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결의안 49-NQTVQH」에서는 최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추가적으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구금 기간을 허용하였다. 그러한 재교육 센터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반혁명 성분들의 재교육적 개혁을 위해 설계되었다.^{219/} 1975년 남부 해방(통일) 이후 베트남 공산 정부는 구 베트남 공화국 시민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전체 국토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통일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남부 베트남 주민들(특히 공무원과 군인들)은 노동 개조장(Trại cải tạo lao động, 再開導勞動)에 감금되었다.^{220/} 이러한 정책은 남부 베트남 주민들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생활 방식을 사회주의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남부 베트남의 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신경제지구(Xây dựng các vùng kinh tế mới) 구축은 국토를 사회주의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221/} 그

219/ Viet V. Le, "Vietnamese Re-education Camps: Do They Violate both Traditional and Modern Vietnamese Criminal Law,"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1, no. 1 (1994), pp. 145~180.

220/ 공산화 통일 직후 (1975-1981) 약 34만 3천여 명의 정치범들이 베트남의 중부 산악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 산재해 있던 노동개조장과 형무소에서 처참한 수감생활을 하였다. 허만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국제정치연구』, 제23권 1호 (2020), pp. 1~42.

221/ 1975년과 1980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북부 주민들이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 75만에서 100만 명 이상의 남부 주민들이 산악 삼림 지대로 강제 이주했고 재산은 몰수, 집단화되어 재분배되었다. Jacqueline Desbarats,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3, no. 1 (1987), pp. 43~76.

리고 비사회주의적인 불순 요소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다양하고 잔인한 행위와 영양 부족, 과로에 의한 사망 등 많은 피해자들을 초래하였다.^{222/} 1989년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재교육 캠프에 수용된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223/} 또한 남부 지역에서 재교육 또는 수감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약 1/3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볼 때, 남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물리적 제약과 인권침해를 받았음을 명확히 시사한다.^{224/}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의 이행기 정의는 국가 통합과 화해 정책을 중심으로 집단적 통합에 주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국가들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나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와 같은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반면, 베트남의 이행기 정의 노력은 개인의 책임과 배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화해와 국가 재건을 강조하는, 보다 집단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몇몇 연구가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체제 전환의 급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통일 이전 남부 지배층의 대부분이 탈출하거나 재교육을 통해서 체제에 통합되었다는 사

222/ Tuan Hoang, "From Reeducation Camps to Little Saigons: Historicizing Vietnamese Diasporic Anticommunism,"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11, no. 2 (2016), pp. 43~95, pp. 70~71.

223/ 연구자에 따라 이 수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1976년 호치민시 행정부 부의장(The Vice-Chairman of the Ho Chi Minh City administration)의 발언과 전직 임시혁명정부의 공식 법무부 장관(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of the Provisional Revolutionary Government)인 Trương Như Tảng의 언급을 통해 구금되어 재교육 캠프로 수용된 수가 적어도 20~30만 명으로 추산된다. Gareth Porter and James Roberts, "Creating a Bloodbath by Statistical Manipulation [Review of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Political Executions in Vietnam: 1975-1983, by Jacqueline Desbarats and Karl D. Jackson]," *Pacific Affairs*, vol. 61, no. 2 (1988), pp. 303~310.

224/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p. 77.

실에 주목한다. 통일 이후 북부의 지도층들은 보복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체제 전환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225/}

1986년 도이 머이 정책 채택 이후 대부분의 정치범은 석방되었고, 노동 개조장들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범들은 일반법 범법자로 감옥에 계속 수감되거나 가택 연금을 받았고, 구역 경찰 제도를 두어 강제 노동형을 재판 없이 명할 수 있는 형태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분배와 운영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초기 베트남 정부의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공식적인 서술은 국가의 단결과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국가 재건과 화해 중심의 접근은 공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정의를 미완의 문제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였는데 ①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했고, ② 국제적(다자적) 개입이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는 실현했으나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지는 못했으며, ③ 이행기 정의에 대한 정부 관여가 없었고, ④ 이행기 이후의 구조적인 개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226/}이라 평가할 수 있다.

225/ 예를 들어, 통일 이후 남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이던 전문가들, 특히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회에 재투입하기 위해 특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전 남부 베트남의 고위 관료 중 약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1977년 후반부터 1978년 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교육의 주요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사회주의 원칙, 공산당의 방향성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Ibid.*, p. 77.

226/ 허만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 변동과 전환기 정의,” p. 25.

베트남 정부의 이행기 정의에 대한 집단적 통합의 접근과 유산은 오늘날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 당국은 반정부 그룹, 종교계, 소수민족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촉발했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PHD 트라이앵글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통합과 국가 발전에의 장애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종교 및 신념에 관한 조례 및 개정된 시행령(Decree 92)」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조례와 법령은 모두 시민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의 평화, 독립, 통일을 훼손하기 위해 신앙이나 종교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가의 문화적 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교 활동은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27/} 당국의 자의적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한 많은 연구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228/}

오늘날의 베트남 정부의 이행기 정의에 대한 인식은 국제규범으로의 보편성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국가 통합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0년, UN 안보리에서 이행기 정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을 때, UN 주재 베트남 대사 겸 상

22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Vietnam,” July 28, 2014, <<https://www.refworld.org/docid/53d906ee5f.html>> (Accessed September 16, 2023).

228/ Human Rights Watch, “UPR Submission Vietnam November 2008,”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lib-docs/HRBodies/UPR/Documents/Session5/VN/HRW_VNM_UPR_S5_2009_HumanRightsWatch.pdf> (Accessed September 16, 2023).

임대표 당 딘 꾸이(Đặng Đình Quý)는 이행기 정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 화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 과정이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제사회는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9/} 이 발언은 베트남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행기 정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이행기 동안의 베트남 통합의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1) 인권의 평화 효과

(가) 베트남의 보편정례검토: 권고와 수용

2009년 첫 번째 정례검토에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172개의 인권의 기록과 증진에 관한 권고를 받았다. 베트남 당국은 이 중 119개(69%)를 수용했으며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다.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법령을 개정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요구들도 제기되었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국

^{229/} Pham Huan, "Vietnam Expresses Willingness to Help Countries in Post-conflict Transitional Period," *The Voice of Vietnam*, February 14, 2020, <<https://vovworld.vn/en-US/spotlight/vietnam-expresses-willingness-to-help-countries-in-postconflict-transitional-period-826755.vov>> (Accessed September 16,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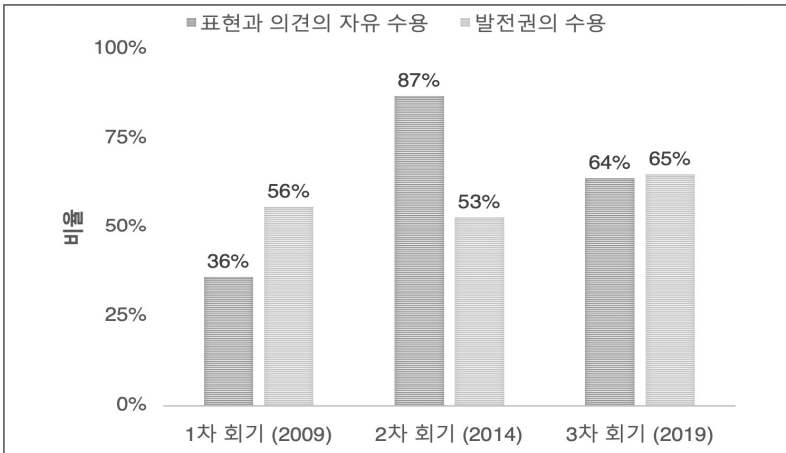
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할 예비적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2014년 두 번째 주기에서는 베트남 당국은 총 256개의 권고를 받았으며, 그중 195개(76%)를 수용하였다. 권고 건수의 증가는 베트남의 인권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사형 제도를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같은 다른 문제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높은 수용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 인권규범에 참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가장 최근 주기인 2019년 검토에서 베트남 정부는 291개의 권고들 중 220개(76%)를 수용하였다. 이 검토에서는 다루어진 이슈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로 환경권, 성 소수자의 권리, 디지털 이용과 관련된 권리 등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보편정례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빈곤 감소, 양성평등, 교육 접근성 등 발전과 연관된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정부의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의 인권 인식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표현과 의견의 자유에 대한 지지와 발전권에 대한 지지의 격차는 베트남의 인권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발전권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다. 2009년의 첫 번째 정례검토부터 2019년의 세 번째 주기까지 발전권에 대한 수용은 지속적으로 권고의 절반 이상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는 65%의 수용률로 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일관된 지지는 베트남 당국이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으며, 발전에 대한 권리 그 자체가 포괄적인 인권 증진 전략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III-11> 참조).

그림 III-11 베트남의 보편정례검토에서 표현과 의견의 자유와 발전 권리의 수용 비율



출처: UPR Info의 자료를 재구성^{230/}

이와는 반대로, 시민정치적 권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의 수용률은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수용률은 첫 번째 정례 검토 주기에서 두 번째 주기로 넘어가면서 36%에서 8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당국이 국제 인권 규범과 프레임워크,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규범을 수용하는 데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 번째 주기에서는 표현과 의견의 자유 수용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베트남 공산당 당국의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 기준의 수용과 베트남 사회의 내부 통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포괄적인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제 인권규범 프레임의 참여와 초국가적 네트

^{230/} UPR Info, "About the Database," <<https://upr-info-database.uwazi.io/en/page/bdcsi0m0n8f>> (Accessed June 5, 2023).

워크의 압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환기한다.^{231/}

세 차례의 보편정례검토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이 받은 권고의 수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려는 의무가 모두 가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이 국제 인권 규범과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안 수용이 항상 효과적인 이행이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232/} 인권의 평화 효과는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권의 증진은 평화의 조성·구축과 연결되고 이는 실증적인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베트남의 세계 평화지수

세계 평화지수는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에서 발전한 지표로, 국가와 지역의 평화 수준을 상대적인 위치에서 측정하는 종합적인 지수이다. 이 지수는 163개 독립 국가 및 영토의 평화 수준을 기준으로 순위화하였다. 반영되는 종합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진행중인 국내 및 국제 분쟁의 정도, 둘째, 사회 안전 및 안보 수준, 셋째, 군사화 정도로 구성된다.^{233/}

^{231/} Thomas Risse,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The Persistent Power of Human Rights: From Commitment to Compliance*, eds. Thomas Risse,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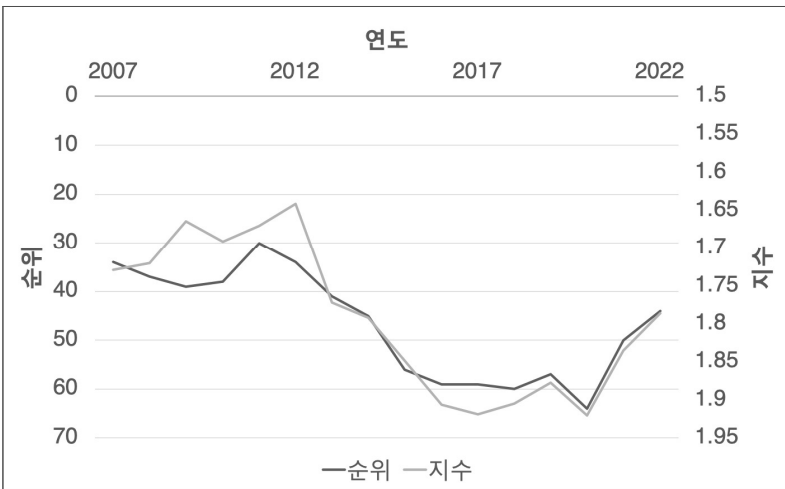
^{232/}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의무가 이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1) 전술적 용인(tactical concessions), 2) 처방에 따르는 상태(prescriptive status), 3)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rule-consistent behaviour)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Ibid.*, p. 10.

^{233/}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3: Measuring Peace in a Complex World*, (Sydney: IEP, June 2023), <<https://www.economicsandpeace.org/wp-content/uploads/2023/06/GPI-2023-Web.pdf>>

2007년 이후 베트남의 세계 평화지수 순위는 가시적인 변동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베트남의 주제영역별 지수가 상승하여 세계 평화 지수가 개선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평화로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다가 2022년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까지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가 증가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거버넌스, 투명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고, 당국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더 많은 공개 토론과 논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234/} 그 결과 사회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세계평화지수가 상승하였다(〈그림 III-12〉 참조).

그림 III-12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



출처: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자료를 재구성^{235/}

(Accessed June 6, 2023), p. 75.

^{234/} UNDP Vietnam, “The Viet Nam 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https://www.undp.org/vietnam/projects/papi-viet-nam-provincial-governance-and-public-administration-performance-index>> (Accessed June 6, 2023).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20년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 비판자들이 체포, 투옥되는 등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236/} 또한 토지 분쟁으로 인해 당국과 국민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237/}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어,^{238/} 세계평화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인권의 평화 효과를 분석할 때, 인권과 관련된 요소 이외에도 국내외적 분쟁과 군사화 정도가 반영된 종합적인 지수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2022년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가 다시 반등한 것은 정부가 취한 다양한 조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캠페인의 강화,^{239/}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등 이전에 하락의 원인이 된 주요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기 때문이다.^{240/} 또한 베트남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235/ 연차별 GPI 보고서의 베트남 지수를 토대로 그림 <III-12>를 작성하였다.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PE's Peace Research, Presentations and Resources," <<https://www.visionofhumanity.org/resources/?type=research>> (Accessed June 6, 2023).

236/ 예를 들어, 베트남 인권 활동가(블로거)들은 정기적으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2019년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정보, 자료 및 제품을 제작, 저장, 유포 또는 선전"한 혐의로 최소 14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다.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19," <<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vietnam>> (Accessed June 6, 2023).

237/ Rina Chandran, "Deadly Land Dispute in Vietnam Sparks Crackdown on 'Critical' Social Media," *Reuters*, January 16,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vietnam-landrights-socialmedia-idUSKBN1ZF0YR>> (Accessed June 6, 2023).

238/ International Crisis Group, "Vietnam Tacks Between Cooperation and Struggle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crisisgroup.org/asia/north-east-asia/china/318-vietnam-tacks-between-cooperation-and-struggle-south-china-sea>> (Accessed June 6, 2023).

239/ UN Vietnam, "Our W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Viet Nam," *Ibid*.

240/ International Crisis Group, "Vietnam Tacks Between Cooperation and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높은 인지도를 얻은 사실도,^{241/} 베트남의 세계 평화지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평화지수는 베트남의 평화의 상태에 대한 귀중한 합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세계평화지수가 세부 항목들로 구성된 종합지수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변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이 수반될 때, 세계평화지수는 인권의 증진, 사회의 평화, 발전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베트남의 인권과 평화: 선순환적 메커니즘과 한계

UN의 정례검토에 나타난 베트남 인권정책의 변화와 세계평화지수에서 포착된 평화 상태의 변화 사이의 관계는 선순환적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례검토는 베트남이 국제 인권 기준에 동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평화로운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투영해왔다.

이러한 의무의 존재 자체는 세계평화지수의 세부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정례검토의 권고사항 이행에서 비롯된 이니셔티브가 사회적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평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인권을 우선할 때, 시민들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안전의 영역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 더 포괄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성은 사회적 긴장과 불만, 그리고 잠재적인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정례검토 과정에서 입증된 베트남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가 외교관계를 증진하여 세계평화지수가 측정하는 대외적 평화와 안정의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truggle in the South China Sea," *Ibid.*

^{241/} Edmund Malesky, "Vietnam Makes a Model Recovery from COVID-19," *East Asia Forum*, December 24, 2022, <<https://www.eastasiaforum.org/2022/12/24/vietnam-makes-a-model-recovery-from-covid-19/>> (Accessed June 6, 2023).

베트남의 보편정례검토 과정에서 평화와 관련된 권고 사항은 지속적으로 다뤄졌다. 여러 국가들이 베트남에 집회와 평화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를 제시하였다. 특히 호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세이셸,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베트남 당국이 국내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권고하였다.^{242/}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였고 이는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들은, 베트남 당국이 국내 및 국제적인 맥락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요소로 평화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편정례검토를 통해 베트남의 인권규범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는 선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인권과 평화의 다차원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평화지수가 다른 요소들을 종합한 총체적인 성격이 있기에 인권에 대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혼란, 사회적 분쟁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세계평화지수는 국내적·국제적 분쟁과 군사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국내적 갈등은 ① 폭력 범죄 수준, ② 내부 갈등의 강도, ③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며, 국제적 분쟁은 ① 주변 국가와의 관계, ② 군사비 지출, ③ 군 병력, ④ 해외 분쟁 개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 국가의 인권 부문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인권의 평화 효과는 선순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메커니

^{242/} UPR Info, "About the Database," *Ibid.*

증이 가지는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례검토에서 권고의 수용과 이행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43/}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규범에 대한 수용은 국가가 권고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은 수락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가 정례 검토의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완전히 이행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세 차례의 정례검토 과정을 통하여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와 포괄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방증한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권고에 대한 수용과 이행 사이의 격차가 클 수도 있는데,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기 공산사회의 경우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 부문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평화효과와 관련하여 수용과 이행의 격차에 대한 사례는 인권 증진과 평화로운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벌이는 반부패 캠페인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이중적 접근을 들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반부패 캠페인은 여러 층위가 존재한다. 한 축은 정부 차원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을 의미하고, 또 다른 축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반부패와 정부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는 베트남 공산당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장려하는 한편,^{244/} 후자는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형법 117조(article 117 of the penal

243/ Thomas Risse,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32.

244/ Philip J. Heijmans, "How Vietnam's Anti-Corruption Fight Keeps Expanding,"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1,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how-vietnams-anti-corruption-fight-keeps-expanding/2023/01/10/1606e0c6-90df-11ed-90f8-53661ac5d9b9_story.html> (Accessed September 17, 2023).

code)」에 의거하여 국가에 반하는 선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당국이 그 행위의 해석을 광범위하게 남용하여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한다.^{245/}

둘째, 베트남의 특정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합법성과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강조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관되어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의 적극적인 이행을 제한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246/}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감소는 인권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인권의 전체 범위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면 세계평화지수와 정례 검토 절차에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국내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긴장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베트남이 국제 인권규범과 프레임워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나타난 인권의 평화효과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동참하기 시작한 1차 정례 검토에서 표현과 의견의 자유와 발전권이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 순위는 상승하는 구간을 나타냈으며 이는 당국의 인권,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증진과 발전권에 대한 강조가 직간접적으로 평화 조성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표 III-25〉 참고).

245/ Human Rights Watch, “Vietnam: Free Anti-Corruption Campaigner Dang Dang Phuoc, a Music Teacher, Prosecuted for Blogging on Rights Issues,” June 6, 2023, <<https://www.hrw.org/news/2023/06/05/vietnam-free-anti-corruption-campaigner>> (Accessed September 17, 2023).

246/ Caitlin Wiesen, “Q&A on Viet Nam’s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ecember 9, 2021, <<https://www.undp.org/vietnam/news/qa-viet-nams-implementation-human-rights>> (Accessed June 6, 2023).

표 III-25 베트남 인권의 평화 효과 요약

인권정책 변화	국제 인권 메커니즘 참여		세계평화지수 변화 ^{247/}
헌법 개정 (1992) 베-미국교정상화 (1995) WTO 가입 (2007)	1차 회기 정례 검토 (2009)	표현과 의견의 자유 인식 (36% 수용률)	지수 상승기 (1.68 / 36위)
헌법 개정 (2013)	2차 회기 정례 검토 (2014)	표현과 의견의 자유 수용 증대 (87% 수용률)	지수 하락기 (1.87 / 56위)
	3차 회기 정례 검토 (2019)	표현과 의견의 자유 수용 감소 (64% 수용률),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인식 (환경권, 성 소수자의 권리, 디지털 이용과 관련된 권리 등)	지수 재반등기 (18.5 / 54위)

출처: 저자 작성

그러나,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변화는 선형적 발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차 정례 검토기 동안에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권고의 수용이 증대했지만, 세계평화지수와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권고에 대한 수용 자체가 실제로 이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할 수 있다. 3차 정례 검토기 동안에는 평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인권 중 하나인 표현과 의견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정부 당국은 발전권에 대한 수용을 증진하였는데, 이 기간에 특기할 점은 세계평화지수가 미약하지만 재반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수의 종합 요소적 성격

^{247/} 세계평화지수의 변화는 다음 회차 정례검토까지의 평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차 정례검토 기간 세계평화지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이 보여준 사회안정적 요소가 크게 반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베트남 당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인권의 종합적인 증진이 수행되었을 때, 평화에 대한 가시적인 증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사례는 세계평화지수의 종합지수적 성격과 COVID-19 팬데믹,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인권의 증진과 평화의 효과가 선순환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인권의 발전 효과

인권과 발전 사이의 상호작용은 통합의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3세대 인권으로 주목받는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발전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이를 계승 발전시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강조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다.

인권은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평화의 문제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모든 발전의 문제도 인권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의 존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UN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하여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베이징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 1995), 그리고 사회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발전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발전

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베트남 정부 당국은 인권과 발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서는 인권의 발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발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베트남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이행되었는지 검토하고자 베트남의 정례 검토에서 나타난 발전권에 대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베트남의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와 인간발전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권의 발전 효과를 평가한다.

(가)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

베트남의 2023년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을 살펴보면, 166개국 중 55위를 차지하여 당국이 상당한 노력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평균(67.2)에 비해 높은 국가 점수(73.3)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베트남 당국의 전략적 참여의 성과를 잘 나타내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당국은 빈곤 퇴치(SDG1) 영역에서 2023년까지 빈곤 비율을 0.4%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농촌 인구의 5.7%가 일반적인 농촌 교통수단에 의해 1년 내 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기아 퇴치(SDG2) 영역에서 베트남 당국은 식량안보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는데 2018년 영양실조 유병률이 3%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유병률은 2022년 36.6%로 감소하였다. 양질의 교육(SDG4) 부문에서 베트남은 2019년 기준 15~24세 연령층의 높은 문해율 수준

을 나타내었다(98.6%). 또한 2021년 초등 순 등록률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97.7%) 베트남 당국이 기초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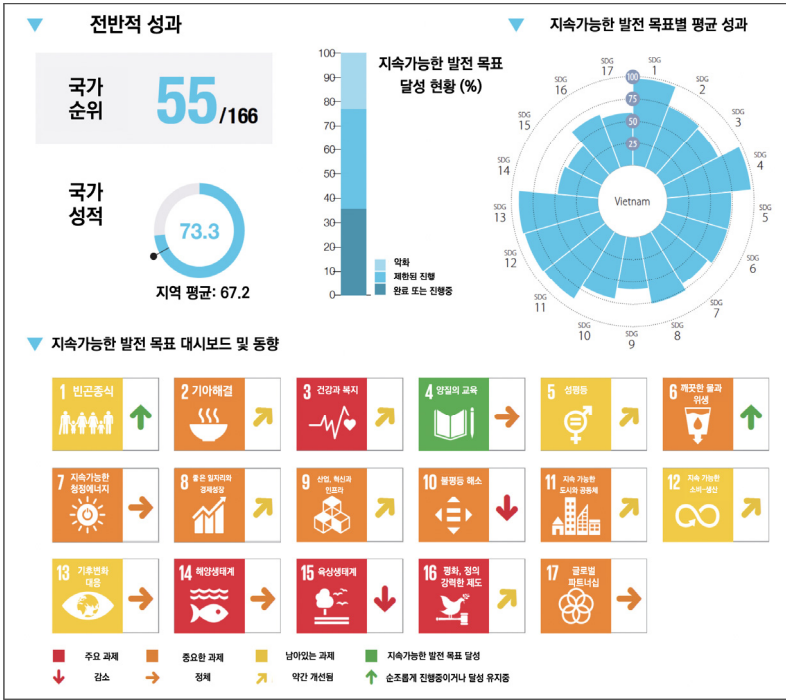
양성평등(SDG5) 부문에서 베트남 당국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데 진전을 보여 왔다. 2021년까지 여성 국회 의석의 비율은 30.3%를 나타냈으며 2022년 여성 대 남성 노동력 참여율은 88.6%에 달해 직장 내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당국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깨끗한 물과 위생(SDG6) 영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20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96%가 기본적인 식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78.2%가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었다(〈그림 II-13〉 참고).

베트남의 지역 및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증진해 왔는데,^{248/}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249/}

248/ Nguyen Trong Binh, “Good Local Governance in Vietnam—Based on the Vietnam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in Recent Years,” *Вопрос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vol. 5 (2021), pp. 73~88, p. 81.

249/ Nguyen Thi Luyen and Ngo Thanh Son, “Th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o Sustainable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in Rural Areas: A Case Study of Sustainable Livelihoods and Forest Management in Xuan Nha Nature Reserve in Northwestern Vietnam,” *Vietnam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vol. 5, no. 1 (2022), pp. 1345~1358.

그림 III-13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2023)



출처: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250/}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진전은 당국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잘 나타내는 증거이다. 베트남은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베트남이 목표 연도까지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계획, 그리고 국제협력력이 필수적이다.

250/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p. 500.

(나) 베트남의 보편정례검토에서 나타난 발전권

발전권은 모든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련된다. 베트남은 발전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전략과 정책에 반영해 왔다.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세 차례의 정례 검토의 연속적인 참여는 발전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베트남은 이러한 발전권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2023-2025년 임기의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통해 발전권을 실현하는 노력에 대해 강조해 왔다.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발전권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트남 당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발전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수용의 내용을 분석하면 회기가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변화·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회기(2009)에서 발전권과 관련된 주요 권고의 내용들은 법의 지배, 사회경제적 발전 및 새천년 발전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다.^{251/} 이는 해당 시기에 새천년 발전 목표의 달성이 주요 국제적인 이슈였던 것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남-남(South-South) 협력 강화와 지역 발전,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도 포함

^{251/} 이러한 내용은 UPR Info의 데이터에 잘 나타나는데, 카테고리 분류가 '발전권'으로 되어있는 세부 권고 사항들을 의미한다.

되었다. 2차 회기(2014)에서는 도농 간의 격차 및 불평등 문제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당국이 다양한 국제기구나 국가들로부터의 받은 피드백의 내용에 반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차 회기(2019)에서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빈곤 감소에 대하여 더 많은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252/}

발전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베트남 정부를 향한 주요 권고를 종합하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도 높은 개선,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교육과 건강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언급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와 그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이 국제 인권 규범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화 과정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지역 전체로 평가할 때,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도농 간,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 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 건강과 관련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확대하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즉, 베트남에서 인권의 영역에 발전의 개념을 포함한 발전권의 증진은 국가 전체의 발전에 대한 인식의 확장 측면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규정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적 성장과 인프라 발전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는 이러한 지속적인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베트남의 자발적 국가보고서와 인간발전지수의 변화

자발적 국가보고서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이다. 이 보고서는 각 회원

^{252/} UPR Info, "About the Database," *Ibid.*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그들의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진전, 그리고 도전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UN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에서 주요 토론의 기반이 되며, 국가 간의 경험과 지식 공유, 그리고 상호 학습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자발적 국가보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트남의 2023년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과 도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18년 첫 자발적 국가보고서 발표 이후, 베트남 당국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 식품 및 연료 가격의 상승, 금융의 불안정, 그리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 의제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 행동 계획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모든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과 정책에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 6, 9, 10, 16 및 17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253/}

그러나 여전히 소수민족 아동들의 영양실조와 같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는 미래에 대한 방향도 연

^{253/}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Voluntary National Reviews - 2023 Main Messages Vietnam,” <<https://hlpf.un.org/countries/vietnam/voluntary-national-reviews-2023>> (Accessed September 10, 2023).

급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인간 자본(human capital),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무 자원의 동원 및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한편, 인간발전지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교육, 건강, 소득 등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인간발전지수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인권 이행 정도, 그리고 국제 발전 협력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베트남의 인간발전지수는 베트남 당국의 발전 부문에 있어서 국제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와 그 발전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UN 발전계획이 발표한 2022년 인간발전지수에서 베트남의 순위는 191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 상황과 도전을 고려할 때 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UN 발전계획의 『글로벌 2021/22 인간발전 보고서(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삶: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에서 2021년 베트남의 인간발전지수는 0.703으로 2019년의 0.704보다 소폭 하락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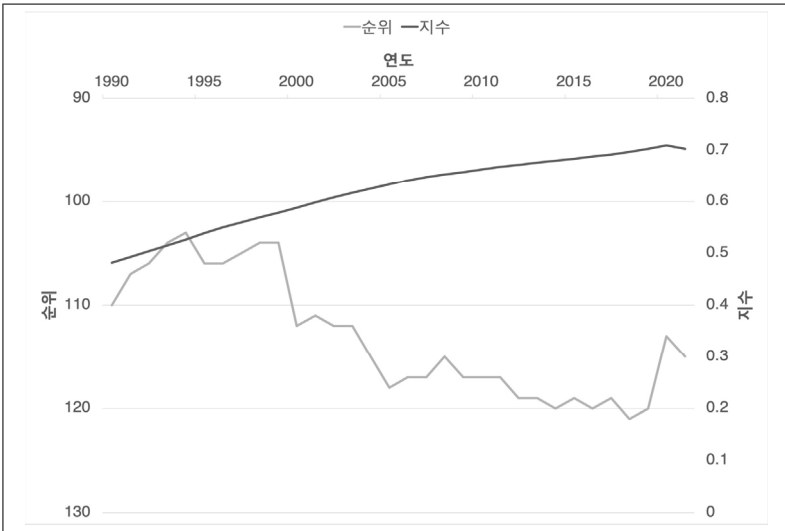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발전지수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베트남의 인간발전지수의 순위는 2019년 117위(189개국 중)에서 115위로 2순위 상승하였다.^{255/} 이는 팬데믹의 가

254/ UNDP,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1-22>> (Accessed September 10, 2023).

255/ "Vietnam Climbs Two Places in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Report," *VNA*, September 8, 2022, <<https://en.vietnamplus.vn/vietnam>>

장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국제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다(〈그림 III-14〉 참고).

그림 III-14 베트남의 인간발전지수와 순위



출처: 저자 재구성

베트남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 유지되었고 일부 취약계층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베트남은 인간 발전의 주요한 퇴보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로 지속가능발전에서도 강조하는 여성 발전권의 신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여성의 발전권 향상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다양한 국제 발전 협력 주체들과의 노력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여성

-climbs-two-places-in-human-development-index-undp-report/240068.vnp?utm_source=link.gov.vn#source=link.gov.vn (Accessed September 10, 2023).

들이 사회·경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들었다.^{256/} 또한, 여성 창업가들과 농업,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데 기여하였다.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2021년의 베트남의 기록은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다. 베트남은 0.296의 성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며 170개국 중 71위를 차지하였다. 성 불평등 지수가 생식 건강, 권한 부여, 노동력 참여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볼 때, 광의의 의미로 발전권을 반영하는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257/}

하지만, 인권의 발전 효과와 베트남 당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과제도 존재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기후 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 중 하나로, 다양한 지형들로 인하여 태풍, 산사태, 홍수, 가뭄 등의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잦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그 피해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58/}

256/ Huu Nguyen Duc, "Social Policy in Gender Equality, Empowerment and Opportunities for Women and Girls in Vietnam," *Revista de Investigaciones Universidad del Quindío*, vol. 35, no. 1 (2023), pp. 275~284.

257/ Kim Anh, "Viet Nam Jumps Two Spots in 2022 UN Human Development Index,"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Government News*, September 9, 2022, <<https://en.baochinhphu.vn/viet-nam-jumps-two-spots-in-2022-un-human-development-index-111220909165909259.htm>> (Accessed September 10, 2023).

258/ Michael Tatarski, "New Climate Change Report Highlights Grave Dangers for Vietnam," *Mongabay*, October 30, 2018, <<https://news.mongabay.com/2018/10/new-climate-change-report-highlights-grave>>

또한 베트남의 경제 궤적은 글로벌 성장 추세와 연동되어 전쟁, 가격 변동, 글로벌 무역 패턴의 혼란과 같은 국제적 사건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UN 발전계획은 인프라, 교육, 훈련,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사회 보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도 시민들이 경제 및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고 취약한 기간에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 지적하고 있다.^{259/}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 당국도 발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투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260/}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권고들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발전지수 순위에서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는 국가의 인권 정책 수용과 이행이 그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발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권과 발전은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베트남 당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참여와 그 결과물의 성격으로 나타난 인간발전지수 순위 상승은 국제 발전 연구에서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3세대 인권으로 언급되는 발전에

-dangers-for-vietnam/ (Accessed September 17, 2023).

259/ Nguyen Viet Lan, "Viet Nam is Well Placed to Regain Human Development Momentum: UNDP," *UNDP Viet Nam*, September 9, 2022, <<https://www.undp.org/vietnam/press-releases/viet-nam-well-placed-regain-human-development-momentum-undp>> (Accessed September 10, 2023).

260/ Kim Anh, "Viet Nam Jumps Two Spots in 2022 UN Human Development Index," *Ibid*.

대한 권리를 인권의 확장으로 볼 때,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261/}

(라) 베트남의 인권과 발전: 선순환적 메커니즘과 한계

인권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진화와 함께 확장되어 왔으며, 인권의 개념은 인류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베트남의 사례는 인권에 대한 증진이 발전을 도모하고, 발전권에 대한 강조 자체가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강화하는 선순환적인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인구의 발전효과는 대체적으로 선순환을 보여주지만, 경제적 불평등, 지역적 불균형 및 특정 제한적 정책과 같은 도전과제로 인하여 그 한계도 존재한다.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베트남의 경제적 성장이 주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발전과 관련된 과제가 남아있다.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해요인으로, 더 나아가 환경권이라는 인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의 이면인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도 발생하였다. 경제적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축소하였지만, 이러한 접근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사회적 보호망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발전권에 포함되기에 이러한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극복해야 할 도전들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사례는 인권과 발전 효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

^{261/}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53.

다. 인권의 세대별 발전을 바라보면, 자유권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사회권의 사회, 경제적 권리는 국가의 중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262/}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특히 인권의 세대별 구분에서 자유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회권,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후기 공산사회에서 어떻게 3세대 인권으로 평가받는 발전권이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 발전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도화되어 가는지를 명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나타난 인권의 발전효과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인권 증진을 수행하면서 인간발전지수의 변화는 체계적으로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인간발전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때 완만한 선형적 상승을 나타냈다는 점은 베트남 당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을 나타낸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 효과와 비교하여 인권의 발전 효과는 지속성의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26〉 참고). 이는 베트남 인권정책의 특징인 평화 조성 과 구축에 근간이 되는 표현과 의견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강조보다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의 근간이 되는 성과형 통치 정당성 추구 전략의 관점에서 사회권과 발전권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62/} Philip Alston, "Peace as Human Right,"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pp. 319~330.

표 III-26 베트남 인권의 발전효과 요약

인권정책 변화	국제 인권 메커니즘 참여		인간발전지수 변화 ^{263/}
헌법 개정 (1992) 베-미국교정상화 (1995) WTO 가입 (2007)	1차 회기 정례 검토 (2009)	발전권 인식 (56% 수용률)	지수 상승기 (0.67 / 118위)
헌법 개정 (2013)	2차 회기 정례 검토 (2014)	발전권 수용 유지 (53% 수용률)	지수 상승기 (0.69 / 120위)
	3차 회기 정례 검토 (2019)	발전권 수용 확대 (65% 수용률)	지수 상승기 (0.71 / 116위)

출처: 저자 작성

(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본 소절에서는 인권의 평화·발전 복합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먼저 베트남의 인권정책이 평화·발전 복합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복합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로 인권의 증진과 복합효과, 인권 후퇴와 복합효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복합효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분석은 PHD 트라이앵글의 메커니즘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론과 사례들 간의 간차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국가의 평화와 발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국가의 안정성과 국민의 복지의 향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

^{263/} 인간발전지수의 변화는 다음 회차 정례검토까지의 평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차 정례검토 기간 인간발전지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전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의 평화 효과와 발전 효과에 있어서 선순환적 상호작용의 한계들도 포착되었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국가 안정성, 국민 복지,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충돌하거나 희생되어 왔다. PHD 트라이앵글의 조합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공하는데, 인권은 침해되었으나 소극적 평화나 발전의 영역에서의 향상을 달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개인의 인권을 축소하고 국내 정치적 안정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상황에서의 조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인권의 증진과 평화·발전 효과

베트남 당국의 인권에 대한 강조는 평화를 조성하고 발전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에 반영된 인권에 대한 강조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의 증진을 통한 평화·발전의 복합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국제 인권규범의 증진을 조건으로 진행된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의 증진 요소는 경제적 발전과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소에 반영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국의 사회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95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며(1995), EU와 포괄적 파트너십과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EU-Vietnam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체결(2012)을 통해 다자화 외교 정책을 완성하였다. 특히 EU와의 협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인권에 대한 명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인권규범 도입의 진행에 있어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받는다.^{264/}

PHD 트라이앵글의 관점에서 EU-베트남의 협정은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 조성 and 구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안정성은 정치적 안정으로 연결되며 이는 평화 조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65/} 두 주체 간의 정치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양측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일치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평화와 안정 자체를 증진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을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통해 베트남의 인권 상황 개선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266/} 또한, 양측 간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연합은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안정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267/}

264/ Matthias Maass, "The European Union, Vietnam, and Human Rights as Law: The Case of the 1995 EU-Vietnam Framework Agreement and its Human Rights Clause," *Asia Europe Journal*, vol. 10 (2012), pp. 215~231.

265/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첫 9개월 동안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159억 달러에 달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이를 COVID-19 팬데믹 사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 침체의 상황을 극복하는 점진적인 징후로 평가하고 있다. General Statistics Office, "Report o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Third Quarter and Nine Months of 2023," September 29, 2023, <<https://www.gso.gov.vn/bai-top/2023/09/bao-cao-tinh-hinh-kinh-te-xa-hoi-quy-iii-va-9-thang-nam-2023/>> (Accessed October 2, 2023).

266/ EU의 경우, 베트남의 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이후, 양자 간 무역 협정에 근거하여 교역 제한 등 경제재제 조치를 검토하는데, 이는 자유 무역 협정이 인권 보장 등 정치적 약속과 연계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무역 협정상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베트남 인권 침해에 필요시 경제재제 검토 방침," 2021.1.8.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805881>> (검색일: 2023.9.16.).

PHD 트라이앵글의 상호 간 긍정적 영향력, 즉 인권에 대한 증진이 평화를 조성 및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인간 발전은 이론적으로 세 축 간의 상호 강화작용을 촉발한다는 점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는 독특한 정치 사회적 유산과 개별 국가의 인권정책에 따라 PHD 트라이앵글의 상호 간 강화작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에 대한 향유와 요구도 증대되고 있지만,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체제 유지적 권위주의의 일당 통치체제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PHD 트라이앵글 모델을 적용할 때,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적 맥락이다. 즉, 인권의 평화·발전 복합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경우의 조합을 상정할 수 있기에 PHD 트라이앵글의 복잡성 속에서 선순환적 상호작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268/}

(나) 인권의 후퇴와 평화·발전 효과

인권과 평화·발전의 관계는 국경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권의 후퇴와

267/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베트남의 노동권과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기준, 즉 독립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및 아동 노동 금지와 지속가능한발전과 연관된 UN 협약들,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이행 약속이 협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 Martin Russel, "Brief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rogress,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48/EPRS_BRI\(2018\)628248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48/EPRS_BRI(2018)628248_EN.pdf)>, (Accessed September 16, 2023).

268/ 유형론적 도식으로 이러한 조합의 유형은 1) '인권증진/평화증진/발전증진' 뿐만 아니라 2) '인권증진/평화증진/발전후퇴', 3) '인권증진/평화후퇴/발전증진', 4) '인권증진/평화후퇴/발전후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형에 적절한 예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 후퇴와의 복합 효과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평화와 발전의 복합효과에 대한 분석은 PHD 트라이앵글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 본 소절에서는 인권이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발전의 복합효과가 일정 수준 나타난 사례로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함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래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이 사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을 국제사회는 주목했다. 베트남 당국은 신속한 격리 조치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 부처 간 소통 조율을 원활히 수행하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공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통제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비용 대량 검사 전략을 선택한 반면, 베트남은 고위험군 의심 사례에 집중하여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35만 건의 검사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한 명당 약 1천명이 검사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 받았다.^{269/} 이러한 성공적인 조치는 세계평화지수의 구성요소 중 정치적 불안정, 정치적 테러, 폭력적 집회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안전 및 안보 수준 영역과 내부적 갈등의 강화 지표로 나타나는 전쟁 중인 국내 및 국제 분쟁의 정도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취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계평화지수에서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70/}

^{269/} Era Dabla-Norris, Anne-Marie Gulde-Wolf, and Francois Painchaud, "Vietnam's Success in Containing COVID-19 Offers Roadmap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IMF*, June 29, 20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6/29/na062920-vietnams-success-in-containing-covid19-offers-roadmap-for-other-developing-countries>> (Accessed September 16, 2023).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인권침해의 증가는 주요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베트남 당국은 대응과정에서 일부 성공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으나,^{271/}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다양한 권리침해의 증가라는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차별적인 강제 검역이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감염환자의 개인정보나 확진자 동선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들에게 과도한 벌금이나 구류 처벌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사회 서비스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이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72/}

베트남의 인권침해는 국가의 안정성과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는 베트남의 평화와 발전에 복합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와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국가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단일 정당인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21년 5월 국회 선거

270/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COVID-19 and Peac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Briefing Series*, no. 1 (Sydney: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June 2020), <<https://www.economicsandpeace.org/wp-content/uploads/2020/08/COVID19-and-Peaceweb.pdf>> (Accessed September 16, 2023), p. 4.

271/ Nguyen Khanh, "The Key to Viet Nam's Successful COVID-19 Response: A UN Resident Coordinator blog," *UN News*, August 29, 2020, <<https://news.un.org/en/story/2020/08/1070852>> (Accessed September 11, 2023).

272/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20," <<https://www.hrw.org/world-report/2021/country-chapters/vietnam>> (Accessed September 11, 2023).

는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고되며, 베트남 공산당이 검증한 후보들 사이에서 제한된 경쟁만 존재하였다. 베트남 공안부는 내부 안보를 담당하며, 국가 경찰, 특별 안보 수사 기관 및 기타 내부 안보 부대를 관리한다. 공안부원들에 의해 많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 또는 임의적인 살인, 정부 요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대우, 임의적인 체포 및 구금, 정치적 수감,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개인 정보 침해, 표현 및 미디어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포함된다.^{273/}

베트남에서 인권침해의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복지에 대한 제한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복합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큼, 부정적인 복합효과도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침해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2020년도에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 이동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독립노조나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조직이나 그룹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여러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부나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제기하는 소셜 미디어 및 통신 회사에 압력을 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274/}

그러나, 특기할 점은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2020년

^{273/} U.S. Department of State,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Vietnam," <<https://www.state.gov/reports/2022-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vietnam/>> (Accessed September 11, 2023).

^{274/} Human Rights Watch, "Vietnam Events of 2020," *Ibid*.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는 19.92(64위, 전년도에 비해 5위 하락)를 나타내었고 2021년 동일지수는 1.835(50위, 전년도에 비해 19위 상승)를 나타내었으며,^{275/} 가장 최근 2023년 발표된 지수의 베트남의 성적을 보면, 1.745점에 41위로 이전 조사보다 4등위가 상승하였다는 사실이다.^{276/} 이는 PHD 트라이앵글의 세 축 간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지수의 변화로 측정되는 평화와 발전 복합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은 독립과 통일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1986년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빈곤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정한 발전의 성과를 성취하였다. 1995년 이후 베트남은 미국의 외교적 인정,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가입, 세계무역기구 가입, 그리고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등을 통해 국제적 정당성도 확보해 왔다.^{277/} 지금까지 산발적인 인권침해와 국제 인권규범 위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 당국의 능숙한 대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실현으로 표현되는 성취형 통치 정당성 주장 전략은 베트남에서 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의 선순환적 운영이 제약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분석하였듯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평화와 발전의 추구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평화의 개념과 발전의 영역 가운데 이미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규범의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275/ 이전 연도에서 상승 순위와 실제 순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복으로 등위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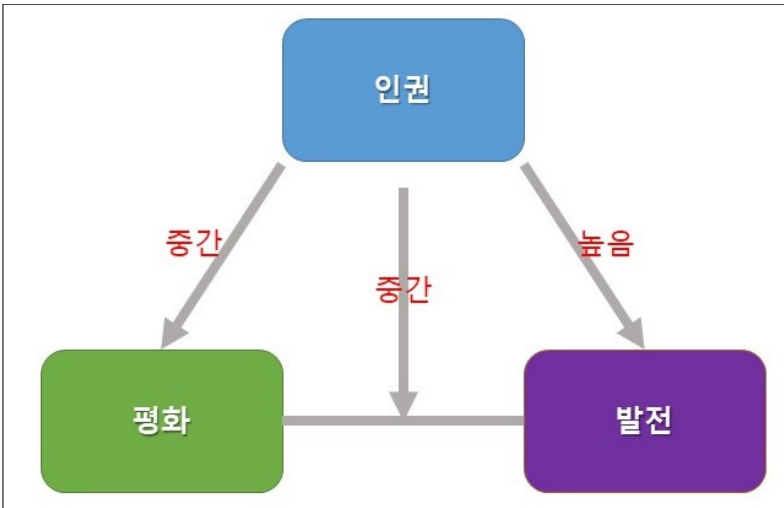
276/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3," June 2023, <<https://www.economicsandpeace.org/wp-content/uploads/2023/06/GPI-2023-Web.pdf>> (Accessed September 16, 2023), p. 8.

277/ Carlyle A Thayer, "Political Legitimacy in Vietnam: Challenge and Response," *Politics & Policy*, vol. 38, no. 3 (2010), pp. 423~444.

형태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평화와 발전에 대한 증진은 더 큰 인권에 대한 보장과 향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베트남의 경우 다당제로의 전환 등 시민정치적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인 갈등이 이를 대변한다.

베트남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의 인권 정책의 증진은 평화와 발전의 구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I-15>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권 관련 정책은 평화와 발전의 이중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림 III-15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출처: 저자 작성

특히 인권의 평화 효과는 ‘중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특징 속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당국의 인권 증진이 평화의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

다. 코로나19 팬데믹, 남중국해의 영토적 분쟁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증진과 평화의 상호 연관성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의 발전에 대한 효과는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 인권 체계와의 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은 인간 발전 지표의 지속적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인권의 평화 발전 복합효과를 ‘중간’으로 평가하는 배경에는 다수의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로, 평화와 발전 간의 복합적인 관계는 인권 증진이라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 동향,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와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외부적 쟁점들이 해당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인권의 효과가 단독으로 그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발휘되기 때문이다(<그림 III-15> 참조).

마. 요약과 함의

(1) 요약

본 장에서는 베트남의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함의를 탐구하였다. 베트남의 후기 공산사회에서 인권-평화-발전(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은 북한의 사례와 비교하여 깊이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인권정책의 전개는 국가의 특성과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인권의 평화 효과와 발전 효과, 그리고 인권의 평화·발전 복합효과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안정은 인권정책의 특징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과 내부적 도전 사이에서 균

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베-미 국교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의 국제적 변인은 인권과 관련된 국내 법제 개편과 인권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국제적 규범과 국가의 특수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국가의 안정성과 국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베트남의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국가의 안정성, 국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작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합법성 하에서도 인권의 증진과 보장은 국가의 평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연구 결과는 후기 공산주의 일당 통치체제에서 PHD 트라이앵글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통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PHD 트라이앵글 모델의 활용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평화-발전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한반도에 주는 함의

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형성된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국제 인권 규범과 현지의 고려 사항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와 균형을 보여준다.^{278/}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변화는 베트남의 국내적 요구와 외부

영향에 대한 대응을 반영한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요 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북한의 잠재적 궤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도이 머이 정책 개혁 과정,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전략적 참여, 거버넌스 모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합한 베트남의 궤적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변화는 베트남의 국내적 요구와 외부 영향에 대한 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의 인권정책은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한계와 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한반도,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 경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다양한 국제적 요구와 압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보여 왔으며, 이는 베트남이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 통합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베트남 공산당의 접근 방식은 일당 통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채택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반영한다.

278/ 2013년의 헌법의 내용은 “사회주의로의 전환기에 국가건설을 위한 플랫폼 및 베트남공산당(CPV)의 기타 문서에서 표현된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국가의 “정보 배포 및 선전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이 (CPV로부터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르도록 해야 하며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이 헌법 제작 과정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Giao Cong Vu and Kien Tran, “Constitutional Debate and Development on Human Rights in Vietnam,”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1, no. 2 (2016), p. 262.

국제 인권단체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인권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왔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참여형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플뿌리 민주주의 법령을 도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 공산당이 정치활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범들에 대한 적절한 조응을 한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은 다양한 국제 인권 협약의 비준을 통해 국제기구 및 인권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추구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정례 검토에서 나타난 의무가 수반되어 베트남이 외부의 감시를 받고 인권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은 인권 규범의 특정 측면을 수용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당 통치를 고수하는 데에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제한, 언론에 대한 제약,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요구에 대한 베트남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방식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경로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는 실용주의와 협상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북한의 인권 지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대체로 일관적인 무시와 묵살로 요약된다. 북한은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거부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정권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종종 인권 보고서를 탈북자나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적대 세력이 전파하는 잘못된 정보나 선전으로 일축해 왔다. 이러한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접근방식은 북한과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에도 적용되는데, 북한은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접근을 거부하고 2014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는 등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의 메커니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279/}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접근방식에 부분적인 변화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정례 검토와 같은 일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했으며, 여러 권고를 수용했다. 북한은 2019년의 정례 검토에서 262개의 권고를 받았으며 42차 인권 이사회에서 정례 검토 결과를 채택할 때 132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수용률의 변화는 이전 주기와 대비하여 16% 증가를 보여준다. 북한 당국이 수용한 권고들로는 법적 및 일반적 이행 체계, 보편적 및 범세계적 이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여성의 권리, 기타 취약 집단 및 개인의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280/} 그러나 북한의 정례 검토에서의 수용된 권고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당국은 특정 인권에 대한 의무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는 시민정치적 자유 보다는 베트남과 같이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렇듯 최소한의 참여에 대한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북한

279/ 장일훈 국제연합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대사는 2014년 2월에 국제연합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와 북한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주장하였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mbassador Jang Il Hu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ctober 22,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iBKXTDmhFGA>> (Accessed June 6, 2023).

28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hr-bodies/upr/kp/index>> (Accessed June 6, 2023).

의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은 베트남의 전략적 참여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키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베트남과 북한의 국제 인권 규범의 개입에 대한 반응과 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베트남 정부는 특정 인권, 특히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국가 발전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도이 머이 개혁에 따라 베트남 당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내부 안정과 평화를 조성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적인) 시민사회의 강화에도 기여했으며, 여전히 베트남 공산당 통제 하에 있지만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넓히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조치들의 예처럼, 이는 일당 체제의 제약 속에서도 평화와 발전 요소들 간에 일종의 복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PHD 트라이앵글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인권, 평화, 발전보다 체제 생존을 우선시하며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발전 모델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우선시하거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개혁에 상대적으로 후발 참여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281/} 국제 인권 조약에 대한 명목상의 의무는 일부 이행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현실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주민에 대한 억압적 통제

^{281/}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지표 (SDG Index)의 결손 데이터가 32%로 나타나 있어 국가 순위와 평균 수행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p. 300.

를 볼 때, 정례 검토에서 나타난 권고의 수용과 이행 상태, 그리고 인권정책의 실재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여 빈곤, 정치적 불안정,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과 북한의 대조적인 사례는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작용이 한 국가의 궤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베트남의 접근방식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합법성의 특징 하에 일정 수준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해왔다. 반면 북한의 사례에 대하여 PHD 트라이앵글을 예비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인권-평화-발전 세 축 간의 상호간 강화작용이 발생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사례는 PHD 트라이앵글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각 축 간의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PHD 트라이앵글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론적으로 베트남의 선례처럼, 북한도 경제 개혁과 발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내부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개혁을 채택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국제적인 경제제재로 성과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 개혁과 개방을 향한 초기 감정은 통치기의 북한의 변화는 베트남의 도이 머이 개혁 과정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282/}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와 동북아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신 안보 재편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북한 당국의

282/ 이상근, “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과 북한 적용 가능성,”(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018-10), <<http://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22.pdf>> (검색일: 2023.9.18.), p. 8.

공고한 체제유지를 통한 개혁 개방 정책 시도의 전망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정책 측면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과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통치의 핵심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이 추진했던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국제 인권 규범 참여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려면 지금까지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북한의 현재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집단주의와 복지를 강조하는 주체 인권)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두 나라는 지정학적 맥락, 내부 정치 구조, 경제 발전 수준 등 주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은 국제 인권 규범 시스템에 참여하는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흥미로운 적응형 모델을 제공하지만, 이를 북한 상황에 대한 온전한 준거(準據)로 삼는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사례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제 인권 규범의 참여의 가능성이다.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국제 인권 규범 참여와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권리의 강조와 시민 사회의 활성화이다. 베트남의 접근 방식은 시민사회 활동의 한계를 정하되, 그 안에서 활성화하여 국가 발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PHD 트라이앵글의 균형 잡힌 접근이다. 인권의 평화, 발전의 상호작용을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IV. 비교 평가 및 시사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비교 평가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를 시도하고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토의하고자 한다. 세 사례에 대한 비교 평가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요인 분석이라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효과 평가는 총평, 전반적 인권상황, 인권의 평화 효과, 인권의 발전 효과, 그리고 세 가치들 간 순환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요인 분석은 독립변인, 매개변인, 초기조건 등을 검토하여 효과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앞 장의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바이다.

1. 비교 평가

가.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평가

폴란드 사례는 세계사적 변화와 체제전환이라는 두 거시적 변화 속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의 성립과 종식 등 3단계에 걸쳐 폴란드 시민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회복의 파노라마는, 인권 신장 그 자체와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으로 대비할 필요성

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독일의 전쟁범죄가 전승 연합국들에 의해 단죄되었지만, 또 다른 전승국으로서 소련의 전쟁포로 학살 및 납치, 그리고 공산정권의 장기간 인권침해는 인권 신장이 평화의 필수 요건이자 발전의 출발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하나 추가할 점은 교회와 공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해 온 폴란드는 공산 치하에서도 인권개선을 위해 권력과의 갈등과 타협을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오늘날 북한의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의 결합으로 인해 체제전환 국면에서 폴란드의 인권상황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 수준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는 이행기 정의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설립된 국가추념원(IPN)은 기념 및 교육 활동, 전국적인 조직망, 특히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이행기 정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성향과 의회 구성에 따라 체제전환 과정은 타협에 의한 산물이었다고 그래서 체제청산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폴란드는 체제전환을 이룬 동구권 국가들 중 시민정치적 권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평화와 발전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정당정치의 다양성과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사회주의 집권 노동당의 일당 지배체제는 중단되고, 다당제를 통해 다원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군경의 폭력적 진압이 사라지고, 비폭력 시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문화로 바뀌어 갔다. 1997년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인권 개념이 확장되었다. 여기에 평화를 위협하는 변수를 꼽는다면, 대내적 변수로 폴란드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 문제이다. 대외 변수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러시아, EU와의 안보 및 난민정책 갈등이다.

폴란드는 체제전환을 급속하고 일관되게 시장경제 도입과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편입을 통해 추진하였다. 급속한 경제개혁으로 실업과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 체질의 개선을 가져왔다. 체제전환 직후인 1991년 급속한 경제개혁에 따른 침체기를 제외한다면 폴란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고, 2000년대 들어서는 급성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시장의 활성화 위에 민간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가져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수는 100점 기준에 총 81.8점을 기록하여 세계 166개국 중 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폴란드의 SDGs 이행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체제전환 뒤부터 나타난 폴란드의 인간발전지수(HDI)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30위권을 기록하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21년에 나타난 HDI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지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뒤 이행기 정의 작업을 통해 과거청산 작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는 인권문제의 공론화와 투명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는 정당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개방화와 국제화 노력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늘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폴란드의 인권과 평화, 발전은 개별적으로 운용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동시성과 상호성을 보인다.

폴란드의 인권과 평화, 발전 문제에서 숙제가 존재한다. 인권문제에서는 사회윤리 문제를 놓고 교회와 정당 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문제는 UN, EU와 폴란드 정부 사이에서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평화 문제에서도 과제가 존재한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정당정치에서 의견의 충돌이 집회·시위를 넘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 국내적 요소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폴란드의 평화 문제에서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발전 문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 정당에 따라 속도 차이가 존재하기에 국제 기준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

콜롬비아는 고질적 장기분쟁 국가로서, 2023년 현재까지 내전 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는 수많은 국내외의 정치적 계기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는데, 정권 변화에 따라 분쟁 관련 주요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평화-발전 회로 속의 악순환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광범위한 평화협정이 제3조(분쟁종식)와 제6조(협정의 이행과 입증방식)를 제외하면 모두 인권과 관련 있지만, 살인과 폭력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반군세력과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정의 이행이 부진한 상태이다. 2021년 10월 현재, 평화협정은 30%의 규정만 '완전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무장투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갈등해 온 정치세력들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정치 경쟁의 장에 들어서야 인권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평화협정 이행에 적극적인 페트로 정부 들어 일부 평화협정이 이행되면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콜롬비아 사례는 고질적 장기분쟁의 경우 평화 정착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콜롬비아 사례에서는 평화협정이 폭넓은 인권 조항을 담고 있어 평화와 인권을 동시에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바이다.

평화협정 이행 과정을 통해 콜롬비아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보면, 토지개혁, 정치참여, 전투원의 사회통합 상황은 열악하고, 분쟁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서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콜롬비아 정부가 제출한 보편정례검토(UPR) 보고서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문연구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피해자 권리회복은 이행기 정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책임 규명의 문제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2018~2022년에 이르는 시기에도 인권과 관련된 평화협정 실행률은 지극히 낮고, 그에 따라 분쟁, 사회적 안정, 그리고 탈군사화 부문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인권레짐의 요체인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만이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인권 정책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평화 효과를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평화는 이행기 정의 중심의 인권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실행한다면 평화적 효과를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다.

인권의 발전 효과는 각각의 구체적인 아젠다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평등은 대부분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아동, 여성, 소수 인종, 소작농 등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권 증진을 폭넓게 제약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발전의 연계는 미진했고, 현 페트로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도출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토지개혁과 성평등 분야에서 인권과 발전의 연계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콜롬비아 사례에서는 인권과 평화와의 상관관계가 인권과 발전의 관계보다 직접적이다. 평화협정의 핵심이 평화구축과 보편적 인권

실현이라는 점에서 두 가치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콜롬비아 사례에서 발견된 인권의 평화 효과는 중간(moderate)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6년 평화협정의 지연과 이후 뒤따라오는 인권유린 현상은 실상 평화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인권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인권의 발전에 대한 효과는 낮으며, 오히려 발전의 측면을 강화할 때 인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발전권은 평화협정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제1~4조). 특히, 평화협정 제1조에 해당하는 토지개혁은 콜롬비아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전권의 중심을 차지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도 지속가능발전, 성평등, 빈곤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인권과 발전은 전반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와 실질적 평가는 다소 괴리를 보인다.

콜롬비아에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식의 선순환은 향후 페트로 정부의 ‘총체적 평화(Total Peace)’의 성공 여부에 따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분쟁 중인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리적 폭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인권과 평화, 발전의 측면을 고루 개선하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콜롬비아의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로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사례는 기존의 국가 주도 분쟁해결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평화구축이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베트남의 인권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도이 머이’로 불린 개혁 정책과 헌법 개정 등의 대내적 모멘텀과, 대외관계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통합과 같은 대외적 모멘텀이 결합해 나타났다. 실제 베트남의 인권 정책은 국제 인권규범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는 베트남의 인권관이 국제 인권규범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전제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권과 친화성이 있는 반면, 자유권은 거부하는 입장이다. 가령, 시민사회 운동이 베트남 공산당의 의제와 일치하거나 당의 통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허용되지만, 완전한 다당제 실시와 같이 공산당의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정치적 변화를 추진하는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1998년 공산당이 천명한 정책 프레임워크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원칙의 특성도 가진다.

발전에 관심이 많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가진 베트남이 사회권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자유권에 취하는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19년 베트남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UPR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수용률이 2차 UPR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제 인권 규범의 수용과 베트남 사회 내부의 통제 유지 사이의 균형이 반영된 것이다.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의 이행기 정의는 국가 통합과 화해 정책을 중심으로 집단적 통합에 주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책임규명과 처벌보다는 화해와 국가 재건을 강조하는, 보다 집단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이행기 정의에 대한 인식은 국제규범의 보편성과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2007년 이후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 순위는 가시적인 변동을 보여 왔다. 2022년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가 다시 반등한 것은 정부가 취한 다양한 조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반부패 캠페인의 강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등 이전의 하락 원인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인권의 평화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당국이 시민정치적 권리 개선 노력을 전개하였을 때 평화에 대한 가시적인 증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의 사례는 세계평화지수의 종합적 성격과 코로나19 팬데믹,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인권의 증진과 평화의 효과가 선순환적으로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베트남의 인권정책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23년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을 살펴보면, 166개국 중 55위를 차지하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전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평균(67.2)에 비해 높은 국가 점수(73.3)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전략적 참여의 성과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빈곤 감소, 보건, 교육,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인간발전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은 베트남 정부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 효과와 비교하여 인권의 발전 효과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사례는 독특한 정치사회적 유산과 개별 국가의 인권 정책에 따라 PHD 트라이앵글 내 상호강화 작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자유권 신장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베트남 공산당 체제가 권위주의적 정책 성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인권과 평화·발전 사이에 선순환 현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대 들어 베트남의 세계평화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권 분야에서 꾸준한 침해 보고와 성장 위주의 발전정책이 대립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이 인권과 평화·발전의 대립은 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실제 정책이 담론과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래 <표 IV-1>은 이상 세 사례에서의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1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구분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인권상황	중상	낮음	중간
인권의 평화 효과	높음	중간	중간
인권의 발전 효과	중간	낮음	높음
유형	체제 전환	장기 분쟁	체제 개혁

출처: 저자 작성

나. 요인 분석

위 세 사례를 두고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비교 평가해 보면, 폴란드를 긍정 평가하는 반면, 콜롬비아는 부정 평가에 해당하고, 베트남은 그 중간에 위치할 수 있다.

폴란드 사례는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양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세 가치들 사이의 선순환이 발생하였다. 물론 그 양상이 단선적이지는 않는데, 사회적 윤리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양(+)의 방향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콜롬비아 사례는 고질적 장기 분쟁이 인권-평화-발전을 모두 훼손하는 악순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

만, 201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분쟁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추진하고 협정에 불참한 반군세력과의 협상이 진행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콜롬비아는 여전히 폭력과 살인이 중단되지 않고 평화협정에 담긴 광범위한 인권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 반군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페트로의 집권 이후 평화협정 이행과 정치세력들 간의 합법적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콜롬비아 사례는 인권-평화-발전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쟁 종식 및 평화 정착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이 필수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베트남 사례도 크게 보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양의 방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그 한계가 뚜렷하다. 사회주의 체제 내 개혁이 정치적 안정 아래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베트남의 특유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온전한 시민정치적 권리 향유가 공산당 일당 통치의 현실 아래에서 제약받고 있는 점과 지정학적 요인,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제한적임을 말해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베트남은 국내 제도와 국제규범의 상호작용, 지방 차원의 대중 참여 등을 통해 인권정책이 발전 중이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이 각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만든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 요인은 크게 보면 폴란드는 체제의 전환을 이루었고, 콜롬비아는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며, 베트남은 체제 내 개혁을 선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세 사례별로 상이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가져온 요인을 독립변인, 매개변인, 초기조건 등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바로 위에서 밝힌 거시적 요인은 독립

변인이자 일차적 요인이라 하겠다.

폴란드의 경우, 1989년 체제전환 이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공산당 일당독재와 계획경제를 대체하였다. 이 체제전환은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대내적으로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정당정치를 확립하여 헌법을 개정하고(1997), 대외적으로는 WTO(1995), NATO(1999)·EU(2004) 등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해 갔다. 기소권까지 보유한 국가추념원(IPN)을 설립해 이행기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도 급진적 체제전환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급속하게 전개된 점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양의 방향으로 끌고 간 일차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 작용하는 초기조건이 부정적이었다면 양의 효과는 실제 결과만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란드 사례분석에서 자세히 다룬 바와 같이, 폴란드가 보여준 대내적 자발성과 대외적 개방성은 폴란드 시민사회, 특히 교회와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빼고 논의할 수 없다. 폴란드 시민사회는 체제전환 이전에 이미 인권의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저항하거나 경쟁하며 자율적 공간을 만들어 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여느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먼저 반체제 인권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체제전환은 급격하되 평화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내용이 인권 신장 및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또 다른 측면인 매개변수로, 정책적 일관성을 꼽을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확립과 대외개방 확대 기조가 유지된 것이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 그에 기반한 인권의 발달을 추동할 수 있었다. 물론 매개변인들 중에는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변인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낙태, 동성애와 같은 사회윤리적 이슈

들을 둘러싸고 국내적 갈등과 EU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인권 발전은 물론 정치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폴란드의 가톨릭문화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숙의(熟議)할 문제이다. 지정학도 폴란드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폴란드는 중부유럽에 속해 있으면서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폴란드의 안보 및 난민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문제들은 향후에도 폴란드 인권 상황과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인권-평화-발전이 악순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차적 원인, 즉 독립변인은 장기 내전에 있다. 2016년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내전이 종식되지 않고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도 일차적으로 고질적 장기 분쟁에 있다. 콜롬비아 내전은 7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이념·이익·정체성 등 복합적 요인, 반군 점령지역과 일반 민간인 지역의 분리, 식민통치 및 해외자본의 경제적 착취 등을 배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성과 장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중 긴 세월이라는 요인과 복합적 요인은 콜롬비아 내전의 성격을 말해주는 요소로서 오늘날까지 콜롬비아의 인권이 열악한 이유와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부정적인 이유를 말해준다. 그리고 지역적 분리와 식민통치 경험 및 저발전은 그러한 상태를 가져다준 초기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식민통치 경험은 해외자본에 의한 부의 유출 및 해외자본에의 의존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반군세력 및 부패한 정치세력이 관여해온 마약산업은 분쟁의 장기화와 대중의 열악한 삶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초기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종식되었거나, 혹은 법치와 투명한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인권침해가 줄어들었을 것이

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변수가 콜롬비아 인권상황과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평화협정 채택 이전에는 콜롬비아 정부의 반군 정책, 반군세력의 내전 종식 의지, 그리고 협정 채택 이후에는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또 채택된 평화협정을 여론이 반대해 협정 이행이 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여론도 매개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평화협정이 채택되었고, 결국 모든 반군세력이 평화협정 이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 이행에 적극적인 정부가 등장한 것이 콜롬비아 사례의 방향을 전환할 요소들로 작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종식 없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은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인권 증진 방안을 담고 있는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곧 인권 증진임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 사례 중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긍정(폴란드)도 부정(콜롬비아)도 아닌 중간으로 평가받는데, 그 독립변인이 사회주의 체제이다.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 체제는 이념형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를 말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반제독립노선을 견지하면서도 호치민의 지도사상에 입각해 집단지도체제, 실용주의적 발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일반의 보편성과 베트남의 특수성이 결합한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는 자체의 개성을 견지하면서도 도이 머이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자주, 대외개방에 기반한 발전정책, 우호친선 관계를 추구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 지도 원칙과 국제규범과의 긴장을 인지하고 둘

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외부의 선진 경제, 문물, 규범을 수용하면서 인권을 개선해 나갔다.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비롯해 인권 관련 법제도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국교 수립, WTO 가입, 국제 인권레짐에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협력 속에서 인권을 개선해 나갔다. 이러한 모든 진전은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물론 시민정치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에 도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정치적 권리는 크게 제약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에서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중적인 베트남의 인권상황을 가져온 매개변인은 전통과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한 지방 차원의 민주주의와 사회권·발전권 중심의 인권관이다. 지방 차원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해 인권 증진과 공산당 통치노선의 합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사회권·발전권 중심의 인권관은 사회주의 인권관과 발전을 추구하는 베트남의 경제정책이 결합된 것으로서, 베트남 정부의 인권정책 중 국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두 매개변인은 베트남의 일관된 개혁개방정책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인권 증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권 위주의 베트남 인권정책을 초래한 초기조건은 오랜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인한 저 발전을 극복하려는 실용주의적 사회주의 노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호치민의 지도노선은 반제독립과 함께 실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자주성과 대중의 복리를 추구한 것이다. <표 IV-2>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2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요인

구분	폴란드	콜롬비아	베트남
독립변인	급격한 체제전환	고질적 장기분쟁	베트남식 사회주의 체제
매개변인	정책 일관성 지정학	정권교체 반군세력의 분열 평화협정 부진	대외개방 정책 풀뿌리 대중 참여
초기조건	기독교 문화	저발전과 부패	저발전과 실용주의

출처: 저자 작성

이제, 본 5개년 연구 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요 사례 둘을 이 연구주제와 관련지어 함께 생각해 보고 그 함의를 토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 연구 사례로 선정했던 캄보디아와 북아일랜드의 경우를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차원에서 평가한다.^{283/}

캄보디아의 경우, 내전 후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한 ‘해외 투자 기업을 위한 토지 무상임대’ 정책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 문제와 맞물리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악화된 대내적 안보 문제는 다시 국가의 억압적 통치구조를 가중하고 다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각 지역 단위의 새로운 리더십 발생을 억제하여 발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본다면 캄보디아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본 연구에서 다룬 세 사례들 중 콜롬비아와 가깝다. 인권의 평화 및 발전 효과가 모두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맥락은 콜롬비아의 장기 분쟁과 달리 권위주의 통치집단의 반인권적 정책 행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83/} 이하 논의는 이성용,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사례별 분석 및 평가: 캄보디아 사례,” 서면자문 (2023.7.27.).

캄보디아 사례가 갖는 연구 및 정책상 함의는 한 변수가 다른 두 변수에 미친 영향 못지않게,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작용이 사회 변동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미치는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높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사례는 장기 분쟁이나 국가폭력과 같은 대규모 사태 이후에는 사회발전이 매우 빠르고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떠나 세 영역의 순환관계 자체에 주목해 사태의 복잡성과 동시성에 상응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는 폴란드, 콜롬비아 사례연구에서도 확인한 바이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어 5년차 정책 대안 논의에 반영해야 할 바이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장기 분쟁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284/} 1998년 ‘성(聖) 금요일 평화협정’ 채택을 분수령으로 북아일랜드에서는 시민사회와 풀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인권개선과 공동체 화해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이행기 정의 중심의 인권단체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이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며 평화 프로세스를 확립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신구교 공동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화해 중심 활동이 효율적이었던 반면, 이행기 정의 중심 인권 활동은 공동체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데 유용하였다. 그럼에도 이행기 정의 실행을 위한 정책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은 영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발전이 미진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북아일랜드 인권운동은 평화 프로세스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나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북아일랜드 인권, 평화, 발전 프로그램은 대부분 EU의 자금과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다는 한계가 있다. 브

284/ 이하 논의는 허지영,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사례별 분석 및 평가: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서면자문 (2023.8.22.).

렉시트 이후에도 EU의 북아일랜드 지원 프로그램은 이어지고 있다. 북아일랜드 사례에서도 캄보디아 사례처럼 인권-평화-발전의 순환이 나타나지만, 다만 그 방향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 다룬 세 사례는 각각 한반도 미래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아래에서 사례별로도 살펴보겠지만, 그에 앞서 세 사례를 연속선상에 놓고 각 사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시적 논의도 유의미하다. 콜롬비아는 장기 분쟁을 종식한 의의와 평화협정에 인권을 포함하는 특징, 폴란드 사례는 체제전환을 통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베트남 사례는 체제개혁을 통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대표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북한체제와 한반도 미래를 비핵·평화체제 구축→북한의 점진적 변화→북한의 급진적 변화→통일의 순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 중 특정 사례를 취사선택하기보다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각 단계에 알맞은 사례를 조응시켜 시사점을 풍부하게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세 단계의 한반도 전망은 각각 콜롬비아, 베트남, 폴란드 사례에서 시사점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폴란드의 체제전환 사례는 북한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크다. 스탈린 사후 폴란드 공산체제는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 노력하였고, 데탕트의 시기에도 서방과 협력을 진행하였다. 물론 북한도 냉전 해체 시기 미국, 일본과 수교 노력을 벌인 경우가 있지만 실현 여부에서는 폴란드와 차이가 뚜렷하다. 폴란드는 19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1973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가입하였다. 특히 1970년에는 서독과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이후 헬싱키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유럽의 긴장 완화 노력에 동참하였다. 즉,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전에 비록 냉전체제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개방성을 보이며 국제화에 참여한 것이다.

폴란드의 체제전환 원동력에는 자발성이 작용하였다. 노동계와 학계, 종교계가 함께 사회저항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쳤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출은 종교계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다. 폴란드의 교회는 ‘내적 이주(inner emigr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운동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하늘나라로 이주한 영혼을 따라 육체 역시 하늘나라 이주민으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듯이, 자유세계로 사상적으로 이주한 인민들은 그 현실 역시 세속 권력에 저항하며 자유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인권운동을 독려하는 요소가 되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개방성을 통한 국제화, 자발성을 통한 사회 저항운동의 경험을 지녔다. 따라서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 발전에서 중요한 예비 요소가 있다면, 북한의 국제화와 자유에 대한 자발적 열망이다. 또한 폴란드가 서독과 수교한 것을 계기로 서방에 대한 개방성을 보인 것처럼 북한 또한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적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한반도에서 역사의 객관적 서술을 남북한이 함께 진행하고,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체제전환 수준의 변화 이후 역사의 객관화는 이행기 정의에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민주정치의 다양성은 사회적 대타협과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발전은 개인의 안녕과 사회 복지를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폴란드 사례는 현 북한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이는 북한이 폴란드와

같은 체제전환이 요원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성질을 말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폴란드 사례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과 조직화에 의해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통찰을 선사한다. 즉, 폴란드의 사례는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에 노출시키는 한편, 주민들과의 접촉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연계하느냐의 여부는 보다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한편,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역시 북한 사회와의 연속성과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북한의 역사를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다. 북한 역사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인식은 통일 뒤 한반도 역사의 연속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 동질성을 통한 통일 열망이 사그라들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가치 철학으로서 인류 공동체성을 정립하고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 보편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발전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콜롬비아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산토스 정부의 성공적인 평화협정은 이전 정부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세 차례 실패의 경험이 산토스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협정의 이행이 부침을 겪기도 하지만 페트로 정부의 새로운 노력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특정 정부에서의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화협정 자체가 집단적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은 평화의 이행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 논의는 결

코 한시적 정부의 단기 정책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평화협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 순조로운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평화협정 체결 및 그 이행이 가능하려면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콜롬비아 사례로부터 얻는 또 하나의 시사점이다.

둘째, 평화와 인권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콜롬비아 평화협정에서 명시한 인권의 문제는 평화적 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평화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인권이 반드시 평화에 종속된다거나 평화가 인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콜롬비아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인권 정책은 후퇴하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해질 수 있다. 만일 평화와 인권을 하나의 아젠다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인권은 평화의 성패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인권의 문제도 평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인권을 무시하여 전쟁 피해자, 납북 피해자 등과 같은 인권 문제도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비평화 상태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평화 프로세스가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자 인권에 대한 관심도 후퇴하는 모양새다.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콜롬비아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인권이 평화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지만 평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인권은 그와는 상호보완적이되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이 후퇴할 수 있고 나아가 분단이 더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인권을 평화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론을 넓혀가야 한다. 이행기 정의는 인권유린 및 침해를 국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다루어 가는 국제적 패러다임이다. 콜롬비아 인권이 부분적으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분쟁 속에서도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행기 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보편적 수준의 인권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분쟁사회에서 인권을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증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장치이다. 물론,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 인권침해의 범위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의 이념적 갈등도 간단하지 않다. 국내에는 다양한 진실위원회가 설립되어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권 회복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나 사법적 책임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성은 보편적 차원의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기에 현실적인 장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편적이라 함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 문제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향후 남북한 통합적 이행기 정의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만하다. 요컨대, 인권의 실천담론으로서 이행기 정의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지속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분

쟁은 이미 콜롬비아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문제가 되었으며, 평화적 해결은 주변국과 미국,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분쟁으로 인한 생태 파괴, 난민, 국경 문제 등은 한 국가의 분쟁이 얼마나 큰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 준다. 한반도의 분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동북아시아,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군비경쟁에서 발생하는 핵확산과 생태 파괴 등은 한반도의 분단과 같듯이 발생시키고 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반드시 국제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은 다양한 국제 행위자들이 함께 조화롭게 관여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형성된 베트남의 인권 정책은 국제 인권 규범과 현지의 고려 사항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와 균형을 보여 준다. 2013년의 헌법 개정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국가건설을 위한 플랫폼 및 베트남 공산당(CPV)의 기타 문서에서 표현된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국가의 “정보 배포 및 선전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이 (베트남 공산당으로부터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르도록 해야 하며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이 헌법 제정 과정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285/}

베트남의 인권 정책 변화는 국내적 요구와 외부 영향에 대한 대응을 반영한다. 베트남의 인권정책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풀뿌리 민주

^{285/} Giao Cong Vu and Kien Tran, “Constitutional Debate and Development on Human Rights in Vietnam,”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1, no. 2 (2016), p. 262.

주의를 주요 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북한의 잠재적 궤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도이 머이’ 정책 개혁의 추진 과정,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전략적 참여, 거버넌스 모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합한 베트남의 궤적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인권정책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한계와 제약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평화와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시민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대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주의 인권관은 베트남과 북한의 공통점이다. 대신 국제 인권규범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비록 사회권 중심이지만 외부의 비판 및 압력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의 수용성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의 이러한 높은 탄력성은 실용주의적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따른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노선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은 법제도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사회권과 발전권에 있어서 국제협력 및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286/}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다양한 국제적 요구와 압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베트남이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베트남 공산당의 접근방식은 일당 통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채택할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준다. 국제 인권단체의 비

286/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은 일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를 임무로 하는 기관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다.

판에 직면하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인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참여형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법령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 공산당이 정치활동과 시민사회운동에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범들에 적절하게 조응한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은 다양한 국제 인권 협약의 비준을 통해 국제기구 및 인권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추구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보편정례검토에서 나타난 의무가 수반되어 베트남이 외부의 감시를 받고 인권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은 인권 규범의 특정 측면을 수용하고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당 통치를 고수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제한, 언론에 대한 제약,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요구에 대한 베트남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방식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실용주의와 협상의 잠재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국제사회의 인권상황 비판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대체로 일관된 무시와 묵살로 요약된다. 북한은 국제 인권규범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외부의 비판은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의 발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접근방식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천년 들어 북한은 보편정례검토와 같은 일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했으며, 여러 권고를

수용했다. 북한은 UN 인권이사회에 보편정례검토 보고서를 세 차례 제출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수용하는 범위를 넓혀왔다. 현상적으로 북한 당국이 수용한 권고들로는 인권 법제와 취약집단의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나아가 시민정치적 권리까지 망라되어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해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를 ‘공약’한 것이지만, 이동의 자유, 고문 방지 등 핵심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수용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제적 감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287/}

^{287/} 서보혁,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2020.11.26., 롯데호텔 서울).

V. 결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인권의 발전·평화 효과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미래 설계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실시한 5개년 연구의 일환이다. 연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인권이 평화와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인권의 평화 효과, ② 인권의 발전 효과, ③ 인권의 평화 및 발전 효과이다. 이러한 세 방향으로 세 사례를 연구하되 인권과 평화·발전 사이의 선순환만이 아니라 악순환 관계도 다루어 사례들로부터 현실성 있고 풍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틀을 수립하였다. 연구주제에 관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다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 효과를 긍·부정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제III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분석하고, 제IV장에서 비교 평가와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가능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3개국이다. 연구 목적과 범위를 고려해 인권-평화-발전의 순환 관계와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다양하

게 검토하기 위해 성공, 실패, 중간을 대표하는 사례를 각각 선정하였다. 선정한 세 사례 중 둘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베트남, 폴란드)이고, 콜롬비아는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의 도상에 있다. 세 사례는 한반도의 오늘(분단·정전체제)을 지양하고 바람직한 내일(통일·평화체제)을 설계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다.

인권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인권은 주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유권은 평화의 영역 속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평화의 실현과 함께 달성될 수 있다. 즉 인권의 신장 없이는 평화의 달성이 요원하다. 결국 인권과 평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하게 된다.

또 인권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인류사회에서 인권의 실현 과정이 불평등, 빈곤, 차별,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집단적 권리와 그 이행에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인권과 발전의 개념이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인권의 실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사회권의 신장을 통해 발전권이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결국 인권-발전-평화의 문제는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인권의 증진이 평화 형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서로 선순환 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상의 논의는 이상적인 차원의 논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 가치들 사이에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그런 사례들 중에는 분쟁의 맥락에 놓여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 분쟁과 폭압통치의 경우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이 이행기 정의와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과제로 부상한다. 따라서 체제전환 및 그 후의 사회안정은 이행기 정의가 인권증진에 미친 영향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를 던져준다. 인권탄압이 발생한 시간과 이행기 정의의 조치들이 이행되는 시간의 격차, 그리고 정치체제 등에 따라 사건해결을 위한 요구와 문제해결의 효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체제 전환 혹은 개혁과 분쟁의 맥락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의 사례를 비교 평가해 보자. 폴란드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효과는 인권과 평화, 발전의 선순환이다. 이행기 정의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강화는 인권의 신장과 성숙을 가져왔다. 정당정치의 다원화와 사회적 타협의 문화 정착은 평화의 구축과 증진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과 그 실현 과정은 환경 분야를 포함한 발전의 제 분야에서 인간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게 했다. 결국 인권의 신장과 성숙은 평화의 구축 및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발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폴란드의 인권-평화-발전의 순환은 상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성을 가진다. 인권의 투명성 요소, 평화의 다양성 요소, 발전의 지속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생한다. 그 예로서 체제전환과 이행기 정의 실현, 경제개혁과 헌법 개정이 초기 사회적 토대를 만들었고, WTO와 OECD, EU 가입과 같은 국제화의 심화는 체제전환 뒤 폴란드 사회의 중반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과 에너지 전략 수립은 성숙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며 발전의 지속과 평화의 다양성, 인권의 투명성 제고에 힘을 더하여 주었다.

한편, 투명성과 다양성, 지속성에 대한 도전 역시 존재한다. 사회운

리의 다원화는 인권의 범위 설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주민의 대량 유입과 역내 전쟁은 평화에 대한 도전 요소가 된다. 더욱이 이러한 도전 요소와 맞물려 세계적 자원 안보의 위협 역시 환경문제와 식량문제와 결부되어 발전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폴란드의 투명성과 다양성, 지속성의 원칙은 국가적 아젠다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한반도의 미래에도 시사점을 준다. 체제 전환 이전에도 폴란드는 국제화를 통한 개방성을 시도하였고, 폴란드 인민은 사회저항 운동을 통한 자발성을 보였다. 북한 체제의 국제화와 인민의 자발성은 외부적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국제화와 자발성 촉진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상충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 기술, 민주정치의 다양성 존중, 환경과 인간 복지를 생각하는 발전은 인권과 평화,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고, 이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통 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민족성을 넘어 인류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상생번영의 가치를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확립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콜롬비아의 분쟁과 평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게릴라 조직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을 시민들이 반대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게릴라 조직들을 대화 상대자로서 받아들이고 이들과 꾸준히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물론, 대통령의 정책 성향에 따라 평화협상과 이행의 수준은 달랐으나, 현 페트로 정부의 '총체적 평화' 정책은 여전히 대화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평화협정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게릴라 그룹들의 끊임

임없는 정치적 관여는 이 분쟁의 사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콜롬비아에서 나타난 인권의 평화·발전의 효과에 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평화와 인권은 통합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개별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하듯 콜롬비아 평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으며 평화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평화협정은 평화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평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2016년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평화를 염원하는 콜롬비아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전통적인 평화구축의 필수조건인 평화협정이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안 두케 대통령의 강경책이 콜롬비아를 다시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갔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평화의 불씨가 올랐다는 것은 평화가 정치적인 기조에 따라 얼마나 가변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상황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UN 보편정례보고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 인권에 있어 가장 주목할 것은 인권제도의 개선이 평화협정에 기인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인권은 평화의 종속변수로 치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분쟁 상황이 필연적으로 인권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되,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단위와 제도를 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 분쟁사회에서 시민들의 인권은 개선되기 어렵다.

둘째, 분쟁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한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인권이 제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유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증폭하는 인권운동가와 사회지

도사들에 대한 살인과 테러는 콜롬비아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폭력에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평화협정의 이행에 따라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사이의 직접적 폭력은 줄었으나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게릴라 세력들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개인들에 대한 살인은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세력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게릴라 집단이 얼마나 정치적 인정을 원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룹들에 대한 인정과 지속적인 대화는 인권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는 평화의 우선적인 조건이다. 콜롬비아 인권의 특징은 분쟁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이나 화해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진실, 정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분쟁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인권과 평화 양 측면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분쟁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콜롬비아와 국제사회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다.

넷째, 인권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콜롬비아 인권 정책은 사실상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콜롬비아 사례를 측정하면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테러와 폭력이 만연해 있어 사회적 안보는 불안하다. 페트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잔여 게릴라 집단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직 일반 시민들의 삶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압력과 협력을 절실히 요청한다.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콜롬비아 인

권-평화-발전의 선순환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베트남 같은 후기 공산사회에서 인권-평화-발전의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은 북한의 사례와 비교하여 깊이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인권 정책은 국가의 특성과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안정은 인권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과 내부적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인권 정책은 국제적 규범과 국가의 특수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과 북한의 국제 인권 규범의 개입에 대한 반응과 PHD 트라이앵글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베트남 정부는 특정 인권, 특히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국가 발전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도이 머이’ 정책에 따라 베트남 당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내부 안정과 평화를 조성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민사회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해진 조치들처럼, 이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제약 속에서도 평화와 발전 요소 간에 일종의 복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대응은 베트남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북한 당국은 인권, 평화, 발전보다 체제 생존을 우선시하며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발전 모델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발전, 혹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개혁에 대한 후발 참여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288/} 북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지표(SDG Index)상의 결손 데

이티가 크게 불충분해 국가 순위와 평균 수행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명목상의 의무는 일부 이행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주민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볼 때, 보편정례검토에서 나타난 권고의 수용과 이행 상태, 그리고 인권정책의 실체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해준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인권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여, 빈곤, 정치적 불안정, 인권 침해의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과 북한의 대조적인 사례는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작용이 한 국가의 궤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베트남의 접근방식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적 합법성 하에 일정 수준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해 왔다. 반면, 북한의 사례에 대하여 PHD 트라이앵글을 예비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인권-평화-발전 세 축 간의 상호 강화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PHD 트라이앵글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각 축 간의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도 이론적으로는 베트남의 선례처럼 PHD 트라이앵글의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개혁과 발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내부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개혁을 채택하는 것 사이에서의 미묘한 균형 유지가 전제된다. 국제적인 경제체제로 성과가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의 개혁·개방을 향한 초기

288/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p. 300.

김정은 통치기 북한의 변화는 베트남의 도이 머이 개혁과정을 벤치 마킹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289/}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동북아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신 안보 재편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북한이 공고한 체제유지하에서도 개혁개방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인권정책 측면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과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이 추진했던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의 국제 인권규범 참여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려면 지금까지 인권침해 사례들을 노골적으로 부인해 온 기존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베트남의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작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주의적 합법성 하에서도 인권의 증진과 보장은 국가의 평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는 후기 공산주의 일당 통치체제에서 PHD 트라이앵글의 특징과 한계를 보여준다. 결국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나라는 지정학적 맥락, 내부 정치 구조, 경제발전 수준 등 주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PHD 트라이앵글은 국제 인권 규범 시스템에 참여하는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흥미로운 적응형 모델을 제공하지만, 이를 북한 상황에 대한 온전한 증거(準據)로 삼는 태도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89/ 이상근, “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과 북한 적용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018-10), <<http://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22.pdf>> (검색일: 2023.9.18.), p. 8.

2.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합의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총론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총론 차원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네 가지인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대북정책에 대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민주 국가와 분쟁 지역의 체제변화는 인권, 평화, 발전 등 보편가치들의 통합적 증진을 절실히 요청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세 사례에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는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다. 분쟁 및 비민주적 상황에 놓인 북한을 놓고 볼 때 이들 세 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장기적인 관점 하의 대북정책 청사진은 일련의 변화 전망과 해당 단계의 목표 설정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평화정착→북한의 체제개혁→북한의 체제전환→통일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전망하며, 앞의 세 단계는 각각 콜롬비아, 베트남, 폴란드 사례에서 풍부한 정책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크게 보아 콜롬비아의 평화정착과 인권 증진의 병행, 베트남의 체제개혁, 폴란드의 체제전환 방식을 종합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안보,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관계 발전, 그리고 인권 등 각기 분야별로 나눈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 문제의 복잡성과 장기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통합적 문제해결 경향, 글로벌 복합위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도 통합적 접근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인권 중심으로 편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인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제안한다. 다양한 대북정책 영역과 주요 사안들이 있지만,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 그와 함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안보와 발전, 인도주의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도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based Approach)이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증진도 그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인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① 북한주민의 존엄한 삶의 증진을 목표로, ② 권리 보유자로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의무 보유자로서 정부의 인권정책 능력 함양을 추구하고, ③ 그 과정을 국제 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전개하며, ④ 다른 대북정책을 인권 증진과 조화시키며 추진함을 말한다. 이렇게 인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할 때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판과 지원 등에 대해 균형적이고 유연한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인권의 증진은 타 정책영역과의 건설적인 연계와 함께, 인권정책 수단을 골고루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채택할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비판과 지원, 일방적·양자적·다자적 접근을 유연하고 조화롭게 전개할 필요가 높다.

넷째, 인권-평화-발전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본 사례연구에서 장기 분쟁을 겪은 콜롬비아는 물론, 체제 전환 및 개혁을 겪은 폴란드와 베트남의 경우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경우를 촉발한 국내외적 요인들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는 일도 앞의 세 방향성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이는 통합적인 북한 인권정책 인프라 구축 및 실행과 관련한 내용이다.

첫째, 북한인권 통합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통합적 북한 인권정책을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북한인권 통합 정책네트워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한시적이었다. 정부는 북한인권 통합 정책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 인권만이 아니라, 인도주의, 인적 교류, 안보, 경제, 발전, 그 외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모든 북한 이슈의 당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책 협력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효율성 면에서, 정책네트워크를 국내외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는 북한과 개발 협력을 진행해 온 UN 전략 프레임워크 팀과 소속 전문가들,^{290/} 그리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들 국가와 기구들이 북한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대안 수립에 가장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네트워크 구축에는 현재 대립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와 대북 지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북한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추세를 반영해 전문가집단에서는 대북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방안을 궁리해 왔다.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이라는 틀에서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거기에 인권 중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조건이다. 그렇게 함으

290/ 북한 정부와 관계해 온 UN전략프레임워크(UNS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UNDP, UN ESCAP, FAO, WHO, UNEP, UNIDO, WFP, UNESCO, UNFPA, UNICEF, UNDRR 등 11개이다.

로써 정책 수립의 기반 확대는 물론 집행의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고 동법의 전면적인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오랜 시간에 걸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제정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대북정책 성향에 따른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분 시행에 머물러 있다. 동법은 통합적 북한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한 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나,^{291/} 세 가지 대북정책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개정하거나 그와 별도로 동법에 북한 인권정책이 평화와 발전 등 타 보편가치들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제6조(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인권의 평화·발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시행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인권의 평화 효과 제고를 위해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 인권 협약에 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 해당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자보호협약,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장갈등연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협약은 북한의 탈군사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권 개선과 인권의 평화 효과를 제고하는 데 유용하다.

다섯째, 인권의 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관련 학계에 정책 연구를 제안한다. 1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SDGs 가용도는 세계 평균을 밑돌고, 2021년 기준 ‘자료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129개 (55.8%)에 이른다.^{292/} 북한은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291/ 북한인권법 제2조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 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292/ 최규빈, 최원근, 김형렬, 문경연, 윤인주,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p. 84~85.

권리 증진을 추구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듯이 협력의 조건이 크게 미흡하다. 북한 인권과 발전을 병행시킬 정책연구는 북한 관련 정보의 추가 확보는 물론 국제 사례들에 대한 정책평가에도 유용하다.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에 관한 논의는 인권 증진은 물론 보편가치들의 동반 실현을 추구한다. 관련 국제규범과 사례를 파악하고 통합적 정책 마인드를 가진다면 북한인권 개선은 물론 한반도에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를 주제로 한 본 비교사례 연구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인권에 기반한 통합적 통일 정책 입안, 일관성을 갖되 유연한 정책 집행, 이 셋을 교훈으로 꼽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신규 외.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 서울: 인문과 교양, 2022.
- 김철민 외.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한국에 주는 의미』. 서울: 한국외대지식출판원, 2014.
- 백범석.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 인도협력연구실 편.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서보혁.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과정, 그 요인과 함의.” 채수홍 엮음. 『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서보혁 외. 『평화통일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오시진.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인도협력연구실 편.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개념과 역사, 분석과 적용』. 서울: 사회평론, 2014.
- 정병권. 『폴란드사』. 서울: 대한교과서, 1997.
- 정홍모. 『동유럽국가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크리스 하먼·마이클 헤인즈 저, 이원영 역.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서울: 갈무리, 1995.
- 최규빈·최원근·김형렬·문경연·윤인주.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홍석훈 외.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Abrami, Regina M., Edmund J. Malesky, and Yu Zheng. "Vietnam Through Chinese Eyes: Divergent Accountability in Single-Party Regimes."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ited by Martin K. Dimitro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Álvarez, Josefina Echavarría et al. *Victims at the Center: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Final Accord from Victims' Perspectives*. Notre Dame; Bogotá: Peace Accords Matrix/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Keough School of Global Affairs, 2022.
- Andrés Díaz Pabón, Fabio, ed.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Colombia: Transitioning from Violence*. New York: Routledge, 2018.
- Dimitrov, Martin K. "Understanding Communist Collapse and Resilience."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ited by Martin K. Dimitrov.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Elliott, David W. P.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Goscha, Christopher. *The Penguin History of Modern Vietnam*. London: Penguin Books, 2017.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2023: Measuring Peace in a Complex World*. Sydney: IEP, 2023.
- International Crisis Group. *Protecting Colombia's Most Vulnerable on the Road to "Total Peace."* Brussels: ICG, 2023.

- Kerkvliet, Benedict J. Tria. *Speaking Out in Vietnam: Public Political Criticism in a Communist Party-ruled N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9.
- LaRose, Michael J. LaRosa, and Mejía Germán R. *Colombia: A Concise Contemporary Hist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7.
- Nguyen, Hai Hong. *Political Dynamics of Grassroots Democracy in Vietnam*. New York: Springer, 2016.
- Sachs, Jeffrey D.,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Eamon Drumm. *Implementing the SDG Stimulu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2023.
- Safford, Frank and Palacios Marco. *Colombia: Fragmented Land, Divided Socie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The International Office for Human Rights Action on Colombia.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2018–2022*. Report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Colombia 2023. Brussels: ODHACO, 2023.
- Risse, Thomas,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The Persistent Power of Human Rights: From Commitment to Compliance*, edited by Thomas Risse,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 .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United Nations.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Colombia*. New York: UNHRC, 2018.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New York: UNDP, 2022.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49/19. Geneva: OHCHR, 2022.
-
- _____.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lombi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52/25. Geneva: OHCHR, 2023.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Coca Cultivation in the Andean Region: A Survey of Bolivia, Colombia, and Peru*. Vienna: United Nations, 2006.
- Vu, Tuong. *Vietnam's Communist Revolution: The Power and Limits of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Bieńczyk–Missala, Agnieszka. *Prawa człowieka w polskiej polityki zagranicznej po 1989 roku*. Warszawa: PISM, 2006.
- Consejo Nacional De Política Económica Y Social. *Estrategia Para La Implementación de 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en Colombia*. Bogotá D.C., 2018.

- Głowacki, Albin. *Sowieci wobec Polaków na ziemiach wschodnich II Rzeczypospolitej: 1939–1941*. Łódź: WUŁ, 1998.
- Kura, Antoni. *Zbrodnie Przeszłość*. Warszawa: IPN, 2012.
- Materski, Wojciech. *Memorandum on the Head of the USSR NKVD*. Warszawa: IPN, 1992.
- Materski, Wojciech and Tomasz Szarota. *Straty osobowe i ofiary represji pod dwiema okupacjami*. Warszawa: IPN, 2009.
- Pietrow, Nikita. *Psy Stalina*. Warszawa: Demart, 2012.
- Rakowski, Mieczysław. *Jak to się stało*. Warszawa: BGW, 1991.
- Skorzyński, Jan. *Uгода i Rewolucja: Władza i Opozycja 1985–1989*. Warszawa: Rzeczpospolita, 1995.
- Tabako, Tomasz. *Strajk 88*. Warszawa: Niezależna Oficyna Wydawnicza Nowa, 1992.
- Wrona, Janusz. *System Partyjny w Polsce 1944–1950*. Lublin: WUMC, 1997.

2. 논문

- 강석영. “콜롬비아 역사.” 『중남미연구』. 제5권, 1989.
- 김달관. “19세기 콜롬비아의 정당체제와 정치문화.” 『중남미연구』. 제30권 2호, 2011.
- 김현준. “전환기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6집 1호, 2017.
- 서보혁.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2012.
- 이병재.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3호, 2015.
- 이성형.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5권 4호, 2005.
-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2017.
- _____. “자선을 넘어 지구적 정의의 추구-국제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배경과 의의.” 『국제발전협력연구』. 제5권 2호, 2013.
- 이한우. “2013년 베트남 헌법 개정의 정치.” 『원광법학』. 제35권 4호, 2019.
- _____.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 2009.
-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1호, 2011.
- 정동준. “도이머이 개혁 이후 베트남의 시민사회: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0권 1호, 2018.
- 정진성. “평화권 논의의 구조와 전망.” 『인권연구』. 제1권 1호, 2018.
- 조성권. “콜로비아에서 정치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양당주의, 후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14권, 1995.
- 차경미. “콜롬비아 우리베 정권의 국가안보정책의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 2009.
- _____.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폭력과 평화: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을 통해 고찰한 불법무장조직 등장 of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38호, 2017.
- 추종연. “콜롬비아의 평화협상과 평화정착 주요과제.”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제15권 2호, 2013.
- 허만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국제정치연구』. 제23권 1호, 2020.
- _____.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나선형

- 5단계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제14권 2호, 2011.
- Alston, Philip. “Peace as Human Right.”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 Bailey, Norman A. “La Violencia in Colombi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vol. 9, no. 4, 1967.
- Berent, Helen. “An Embodied Everyday Peace in the Midst of Violence.”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 Bui, Thiem H. “Deconstruct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in Vietnam: The Changing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Vietnam’s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vol. 36, no. 1, 2014.
- Butcher, Charity and Hallward Maia Carter.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Rights and Peace: An Analysis of NGOs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8, no. 1, 2017.
- Desbarats, Jacqueline.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3, no. 1, 1987.
- Donnelly, Jack.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21, no. 3, 1999.
- Hamm, Brigitte I. “A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23, no. 4, 2001.
- Hoang, Tuan, “From Reeducation Camps to Little Saigons: Historicizing Vietnamese Diasporic Anticommunism.”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11, no. 2, 2016.
- Hoole, Rajan. “Sri Lanka: Ethnic Strife, Fratricide, and the

- Peace vs. Human Rights Dilemma.”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1, no. 1, March 2009.
- Howe, Paul. “The Triple Nexus: A Potential Approach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Development*, vol. 124, 2019.
- Ibhawoh, Bonny.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olitics and Polemics of Power and Resistance.” *Human Rights Quarterly*, vol. 33, no. 1, 2011.
-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Strasbourg. “Conference on Peace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and Peace.” *Bulletine of Peace Proposals*, vol. 10, no. 2, 1979.
- Kerkvliet, Benedict J. Tria. “Governance, Development, and the Responsive-Repressive State in Vietnam.”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vol. 37, no. 1, 2010.
- Kinley, David and Hai Nguyen. “Vietnam, Human Rights and Trade: Implications of Vietnam’s Accession to the WTO.” Friedrich Ebert Stiftung, Occasional Paper Series. *Dialogue on Globalization Working Paper*, vol. 39, 2008.
- Le Hong, Hiep. “Performance-based Legitimacy: The Cas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and ‘Doi Moi’.”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4, no. 2, 2012.
- Le, Viet V. “Vietnamese Re-education Camps: Do They Violate both Traditional and Modern Vietnamese Criminal Law?”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1, no. 1, 1994.
- Liendo, Nicolas and Jessica Maves Braithwait. “Determinants of Colombian Attitudes towards the Peace Process.” *Conflict*

-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5, no. 6, 2018.
- Maass, Matthias. “The European Union, Vietnam, and Human Rights as Law: the Case of the 1995 EU–Vietnam Framework Agreement and its Human Rights Clause.” *Asia Europe Journal*, vol. 10, 2012.
- Marks, Stephen. P.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Some Reflections on the Study of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Peace.” *Bulletin of Peace Proposals*, vol. 8, no. 3, 1977.
- _____. “The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Dialectic.” *Security Dialogue*, vol. 11, no. 4, 1980.
- Nguyen, Hai Hong. “Resili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s Authoritarian Regime since Doi Moi.”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 35, no. 2, 2016.
- Nilsson, Manuela and González Marín Lucía. “Violence Peace: Local Perceptions of Treat and Insecurity in Post–Conflict Colombia.”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27, no. 2, 2020.
- Oskar, N. T. Thoms, James Ron and Roland Paris. “State–Level Effects of Transitional Justice: What Do We Kno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3, 2010.
- Porter, Gareth and James Roberts. “Creating a Bloodbath by Statistical Manipulation [Review of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Political Executions in Vietnam: 1975–1983, by Jacqueline Desbarats and Karl D. Jackson].” *Pacific Affairs*, vol. 61, no. 2, 1988.
- Rowen, Jamie Rebecca. “We Don’t Believe in Transitional Justice: Peace and the Politics of Legal Ideas in Colombia.” *Law and Social Inquiry*, vol. 42, no. 3, 2017.

- Suh, Bo-hyuk. "Resolving the Korean Conflict through a Combin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1, 2016.
- Teitel, Ruti G.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6, 2003.
- Thayer, Carlyle A. "Political Legitimacy in Vietnam: Challenge and Response." *Politics & Policy*, vol. 38, no. 3, 2010.
- _____. "Political Legitimacy of Vietnam's One Party State: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 28, no. 4, 2009.
- Tria Kerkvliet, B. J. "Governance, Development, and the Responsive-Repressive State in Vietnam."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vol. 37, no. 1, 2010.
- Vu, Giao Cong and Kien Tran. "Constitutional Debate and Development on Human Rights in Vietnam."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1, no. 2, 2016.
- Waldmann, Peter. "Is There a Culture of Violence in Colombia?"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9, no. 4, 2007.

3.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폴란드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pl>>.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서보혁. "UPR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국제협력의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 2020.11.26, 롯데호텔 서울.
- 이상근. “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과 북한 적용 가능성.”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전략보고, 2018-10. <<http://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22.pdf>> (검색일: 2023.9.18.).
- 통일연구원. “국가기억원 전문가 간담회.” 해외(폴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통일연구원, 서울: 2023.4.26.
- Aljazeera.com <<https://www.aljazeera.com>>.
- Coca Cultivation in Andean Region <https://www.unodc.org/pdf/andean/Andean_report_Part1.pdf>.
- Colombia Coca Survey for 2005 <<https://www.scribd.com/document/341539/01576-Colombia-coca-survey-2005-eng>>.
- Colombia Reports <<https://colombiareports.com>>.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
- Countryeconomy.com <<https://countryeconomy.com>>.
- Crisisgroup.org <<https://www.crisisgroup.org>>.
- East Asia Forum <<https://www.eastasiaforum.org>>.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www.europarl.europa.eu/at-your-service/en/stay-informed/research-and-analysis>>.
-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
-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ttps://www.un.org>>.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s://www.gso.gov.vn>>.
- Government of Republic of Poland <<https://www.gov.pl/>>.
- Government Portal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ttps://en.baohinhphu.vn>>.
- Human Rights Watch <<https://www.hrw.org>>.
-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https://www.ictj.org>>.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https://www.economicsandpeace.org>>.
- Instituto de Estudios para el Desarrollo y la Paz <<https://indepaz.org.co>>.
- Industry News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0>>.
- International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 Mongabay <<https://news.mongabay.com>>.
- OECD <<https://www.oecd.org>>.
- Peace Accords Matrix and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https://curate.nd.edu>>.
- Political Theory,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http://lyluanchinhtri.vn/home/en/index.php/home.html>>.
- Reddit <<https://www.reddit.com>>.
- Reuters <<https://www.reuters.com>>.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 Statistics Poland <<https://sdg.gov.pl/en/>>.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oland>>.
-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
-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https://www.economicandpeace.org>>.
- The Voice of Vietnam <<https://vovworld.vn>>.
- UN General Assembly <<https://www.un.org/en/ga/>>.
- UN OHCHR <https://www.ohchr.org/en/ohchr_homepage>.
- UNDP <<https://www.undp.org>>.
-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s://hdr.undp.org/>>.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Vietnam <<https://www.undp.org/vietnam/>>.
-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hlpf.un.org/countries/vietnam/>>.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
- United Nations News <<https://news.un.org/en/story/2020/08/1070852>>.
- United Nations Vietnam <<https://vietnam.un.org/en/>>.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UPR Info <<https://upr-info-database.uwazi.io/>>.
- USIP* <www.usip.org/>.
- Vietnam News Agency* <<https://en.vietnamplus.vn/>>.
-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
-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Reporte Nacional Voluntario 2021.” June 2021. <https://siteal.iiiep.unesco.org/sites/default/files/sit_accion_files/reporte_nacional_voluntario_ods.pdf>.
- UNDP and OPHI,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2022: Unstacking Global Poverty: Data for High Impact Action.”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p-document/2022mpireportenpdf.pdf>>.
- Wiesen, Caitlin. 2021. “Q&A on Viet Nam’s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s://www.undp.org/vietnam/news/qa-viet-nams-implementation-human-rights>>.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재해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 · 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교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 · 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은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on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 · 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 · 권재범
2022-11 체제전한국 국가 · 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 · 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 · 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욱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 · 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 · 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재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근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방안	현수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값 13000 원
93340



9 791165 891435
ISBN 979-11-6589-143-5